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년 제2호



2022. 12.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년 제2호

2022.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 차

## 제1부

### OECD의 조세정책개혁 2022 (Tax Policy Reforms 2022)

#### I 거시 경제 동향 / 5

1. 세계 경제성장률, 고용, 소비 및 투자 ..... 5
2. 공공부채 및 재정수지 ..... 7
3. 소득불평등 ..... 8

#### II 세수 동향 / 9

#### III 최근 조세 정책의 변화 / 15

1.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15
2. 법인세 및 기타 법인세 ..... 24
3.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 31
4. 환경세 ..... 38
5. 재산세 ..... 41

#### IV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조세 정책 / 44

1. 소개 ..... 44
2. 정부 지원책 ..... 44
3. 정책 논평 ..... 47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 51

- 1. 미국 ..... 51
  - 가.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논의 ..... 51
  - 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서명 ..... 52
  - 다.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 혜택 설명 ..... 54
  - 라. 국세청, 2023년도 인플레이션 조정안 발표 ..... 55
  - 마. 재무부,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 발표 ..... 57
  - 바. 의회예산국, 대규모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금 인상 논의 ..... 58
- 2. 캐나다 ..... 60
  - 가. 사치세 도입 ..... 60
  - 나.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 2배 제안 ..... 61
  - 다. 국세청,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지침을 공시 ..... 62
  - 라. 재무장관, 경제 활성화 조치 발표 ..... 63

II 유럽 / 66

- 1. 영국 ..... 66
  - 가. 트러스 영국 정부, '감세'에 초점 맞춘 새 예산안 발표 ..... 66
  - 나. 2022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 발표 ..... 68
- 2. 독일 ..... 70
  - 가. DAC7 시행 및 「조세통칙법」 개정 법안 발표 ..... 70

# 목 차

나. 독일 - 가스 사용 부담금 부과 및 가스 부가가치세율 인하	71
다. 고물가 대응 제3차 납세자 구호 패키지 발표	72
라. 일회용 플라스틱 부담금 부과 법안 승인	73
마.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 결정	74
바.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세 도입	75
3. 프랑스	76
가.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 점진적 폐지	76
나. 2023년도 예산안 발표	77
4. 이탈리아	79
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 긴급조치 법률 전환	79
5. 스페인	80
가. 에너지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관련 법안 초안 제출	80
나. 에너지 관련 조세 지원 연장 및 확대	81
다. 초과이익세 법안 초안 수정	82
라. 비거주자의 특정 거액자산에 대한 임시 부담금 과세	83
마. 「스타트업법」 국회 승인	85
6. 아일랜드	86
가. 2023년도 예산안 발표	86
나.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부과 승인	89
7. 스위스	90
가. 글로벌 최저한세수 사용계획 발표	90
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하는 국가연금 개정안 승인	90
8. 포르투갈	91
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계획 발표	91
나. 2023년 예산법안 의회 제출	92
9. 벨기에	96
가. 조세 개혁 청사진 제안	96

## CONTENTS

나. 인하된 부가가치세율 적용 연장 및 초과이익세 도입 발표 .....	97
다. 2023/2024년도 예산안 발표 .....	98
라. 세법개정안 발표 .....	99
10. 룩셈부르크 .....	102
가. 에너지 세액공제 법안 시행 .....	102
나. 2023년도 예산안 발표 .....	103
11. 그리스 .....	105
가. 연구비에 대한 세제 혜택 관련 법률 발표 .....	105
나. 부동산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추가 유예 .....	106
12. 네덜란드 .....	106
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발표 .....	106
나. 2023년 예산안 발표 .....	107
다. 2023년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의제주거소득 최종 수치 발표 .....	109
13. 덴마크 .....	111
가. 2023년 통근비용 소득공제 및 자차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인상안 최종수치발표 .....	111
14. 핀란드 .....	112
가. 2023년 예산안 발표 .....	112
나. 2023년 예산안 세부사항 발표 .....	113
다. 이자비용 공제 규정 개정안 비준 .....	114
15. 오스트리아 .....	115
가. 2023년 연방 예산 승인 .....	115
나.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이익부과금 도입 발표 .....	116
16. 노르웨이 .....	117
가. 2023년 예산안 발표 .....	117

# 목 차

## Ⅲ

### 아시아/오세아니아 / 120

1. 일본 .....	120
가. 2023년 도입 예정 탄소세 도입 연기 .....	120
2. 중국 .....	121
가. 새로운 인지세법 시행 규칙 발표 .....	121
나.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차량구치세 면제 연장 .....	122
다.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유예 정책 연장 .....	123
라.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매수 시 소득세 환급 .....	124
마. 개인양로금 소득세 정책 발표 .....	124
3. 인도 .....	126
가.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특별 추가 소비세 과세 .....	126
나. 디젤, 제트 연료 수출에 대한 횡재세 인상 .....	127
다. 석유 관련 횡재세 및 디젤 등 연료 부담금 조정 .....	127
4. 인도네시아 .....	128
가. 탄소세 시행 연기 .....	128
나. 코로나19 관련 세금 인센티브 기한 연장 .....	129
5. 홍콩 .....	129
가. 국외원천소득면제제도(FSIE) 발표 .....	129
6. 호주 .....	131
가. 2022/2023년도 예산안 발표 .....	131
7. 뉴질랜드 .....	132
가. 유류세 인하 내년 초까지 재연장 .....	132
나. 부동산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제공 .....	133
다. 세계 최초로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에 과세하는 제안 발표 .....	134

**IV** 국제기구 / 136

1. OECD .....	136
가. BEPS 프로젝트 필라1 Amount A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	136
나. BEPS Action 5 유해조세환경 검토 경과 공개 .....	137
다.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138
라. 글로벌 최저한세와 조세특례 보고서 발표 .....	139
마. BEPS Action 13 상호검토 발표 및 CbCR 지침 개정 .....	139
2. EU .....	141
가. 디지털시대에서의 부가가치세 연구 보고서 발표 .....	141
나. EU - 에너지 사업 관련 초과이익 분담금 제안 .....	143
다. EU 의회 디지털 부과금 도입 제안 .....	143
라.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지침 합의 .....	144

# 표목차

## 제1부

### OECD의 조세정책개혁 2022 (Tax Policy Reforms 2022)

〈표 1-Ⅲ-1〉 국가별 에너지사용 세제 개편 .....	40
〈표 1-Ⅲ-2〉 국가별 재산세제 개편 .....	43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표 2-I-1〉 2023년 과세소득구간 .....	55
〈표 2-I-2〉 2023년 AMT 면제금액 .....	56
〈표 2-I-3〉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 상의 지침 내용 .....	58
〈표 2-I-4〉 고급자동차에 부과되는 사치세 계산 예시 .....	60
〈표 2-II-1〉 독일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인하 현황 .....	75
〈표 2-II-2〉 스페인 거액자산에 대한 임시 부담금 요율 .....	84
〈표 2-II-3〉 포르투갈 2022년 및 2023년 개인소득세 세율 비교 .....	94
〈표 2-II-4〉 벨기에 가산세 등 적용 이자율 개정 내용 .....	100
〈표 2-II-5〉 벨기에 조세절차 기간 개정 내용 .....	101
〈표 2-II-6〉 2022년 룩셈부르크 에너지 세액공제 .....	102
〈표 2-II-7〉 네덜란드 2023년 근로소득 세액공제 변화 .....	110
〈표 2-II-8〉 핀란드 2023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	114
〈표 2-II-9〉 노르웨이 2023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	118
〈표 2-IV-1〉 2021년 9월 기준 EU 회원국 디지털 보고제도 운영현황 .....	141

# 그림목차

## 제1부

### OECD의 조세정책개혁 2022 (Tax Policy Reforms 2022)

[그림 1-I-1] 실질 GDP 성장률 .....	5
[그림 1-I-2] 실질가계소비 및 소비자물가지수 .....	7
[그림 1-II-1] 국가별 조세부담률(2019~2020년) .....	10
[그림 1-II-2] 명목기준 세수 및 GDP 변화(2019~2020년) .....	11
[그림 1-II-3] 세금 범주별 GDP 대비 세금 비율 변화(2019~2020년) .....	13
[그림 1-III-1] 총세입에서 PIT, SSCs,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국가별) .....	16
[그림 1-III-2] OECD 및 파트너 국가의 PIT, SSCs, 급여세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17	
[그림 1-III-3] OECD 회원국 및 일부 OECD 비회원 IF 관할국의 2000~2020년 기간 동안 노동 소득에 대한 평균조세격차의 변화 .....	19
[그림 1-III-4] 2000~2020년 OECD 회원국 및 일부 OECD 비회원 IF 관할국의 노동 소득 대비 평균조세격차의 변화 .....	20
[그림 1-III-5]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수입(2000년, 2020년) .....	25
[그림 1-III-6] 지적 재산권 제도 적용 및 일반 법인세율(2020년) .....	27
[그림 1-III-7] OECD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 변화(1990~2021년) .....	31
[그림 1-III-8]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 .....	32
[그림 1-III-9] 국가별 환경세 추이 .....	38
[그림 1-IV-1]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도입 세제 조치(2021년 9월~2022년 5월) .....	45





# 제1부 OECD의 조세정책개혁 2022 (Tax Policy Reforms 2022)





## OECD의 조세정책개혁 2022 (Tax Policy Reforms 2022)

- ▾ 조세정책개혁(Tax Policy Reforms) 보고서는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sup>1)</sup> 조세정책통계과가 국가 간 세금 개혁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세금 정책 개발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는 연례 간행물임

  - ▶ OECD는 2022년 9월 21일 Tax Policy Reforms 2022<sup>2)</sup>를 발간하였는데, 2016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22년에 발간된 7번째 보고서임
  - ▶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를 포함하여 OECD/G20 포괄적 프레임워크 내 71개 회원국에서 2021년 발표한 조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2021년 도입되거나 시행을 예고한 조세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 외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상승된 가격이 유지될 경우에 대한 정책적 권고가 포함되어 있음
- ▾ 2022년도 보고서는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조세 정책 변화에 관한 OECD의 설문문에 대한 회원국의 응답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 설문지를 통해 각 국에서 시행 중인 세금 유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변경된 조세 정책의 방향성 및 변경된 조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음
    - 설문지는 구체적으로 1) 총세입의 5% 이상 또는 GDP의 0.1% 이상의 세수 변경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2) 정치적으로 중요한 제도적 변화, 3) 조세정책 변화를 통한 예상 효과 및 그와 같은 추정의 근거에 관한 질문을 포함함
    - 2022년 보고서는 이전 버전의 보고서보다 설문 대상 국가의 범주가 넓어졌으며 총 71개국<sup>3)</sup>이 설문문에 응하였음

1)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정책행정센터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2) OECD, "Tax Policy Reforms 2022: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2022, <https://doi.org/10.1787/067c593d-en>, 검색일자: 2023. 2. 8.

3) OECD 회원국 외에도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카보 베르데, 쿡제도, 크로아티아, 조지아,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케냐,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모나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베트남이 설문문에 참가함

- ▣ Tax Policy Reforms 2022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 1장에서는 성장, 인플레이션, 생산성, 투자, 노동 시장, 공공 재정 및 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거시 경제 동향을 기술하고 있음
  - ▶ 2장에서는 최신 세수 동향을 설명하고 총세입을 구성하는 조세비율과 조세 구조의 변화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음
  - ▶ 3장에서는 설문에 응한 71개 국가의 조세 정책 변화 대해 설명하고 있음
    - 3장은 보고된 조세 정책 변화의 범주에 따라,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법인세 및 기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환경세, 재산세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음
  - ▶ 4장에서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정책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
- ▣ 본 보고서는 조세정책개혁 보고서의 요약 및 발췌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기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본 보고서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조세정책개혁 보고서의 소개 및 요약·발췌를 목적으로 함
  - ▶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정책개혁 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이나 쟁점 등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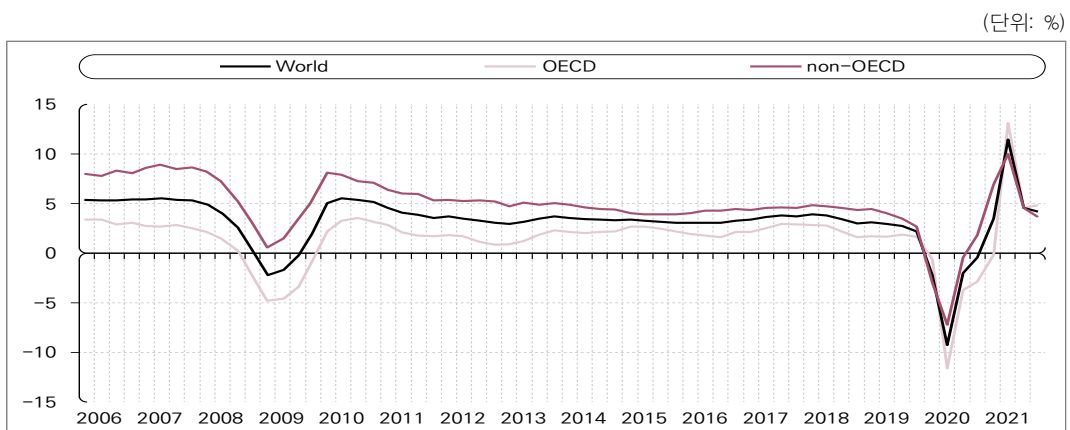
# I 거시 경제 동향(Macroeconomic background)

이 장에서는 2021년까지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 생산성, 투자, 노동시장, 공공 재정 및 소득불평등과 같은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1 세계 경제성장률, 고용, 소비 및 투자

-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감소 후 2021년에는 반등함
  -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0년 -3.4%에서 2021년 5.8%로 반등하였는데, 2020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보다 신흥경제국, 후진국 순으로 타격을 받음
    - OECD 회원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 -4.6% 기록한 이후 2021년 5.5%를 나타냄
  - ▶ 백신의 보급, 의료시스템, 여행 산업의 중요도, 재정규모 등의 차이로 경제성장률 회복속도는 국가마다 다름
    - 미국은 2021년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 등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빠르게 회복한 반면 많은 유럽 국가들은 회복이 더딘 편임
    - 2021년 4분기 유로지역과 영국의 GDP는 코로나 이전의 기대치보다 2%p이상 낮음

[그림 1-1-1] 실질 GDP 성장률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2, p. 14, Figure 1.1.

- ▣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sup>4)</sup>으로 회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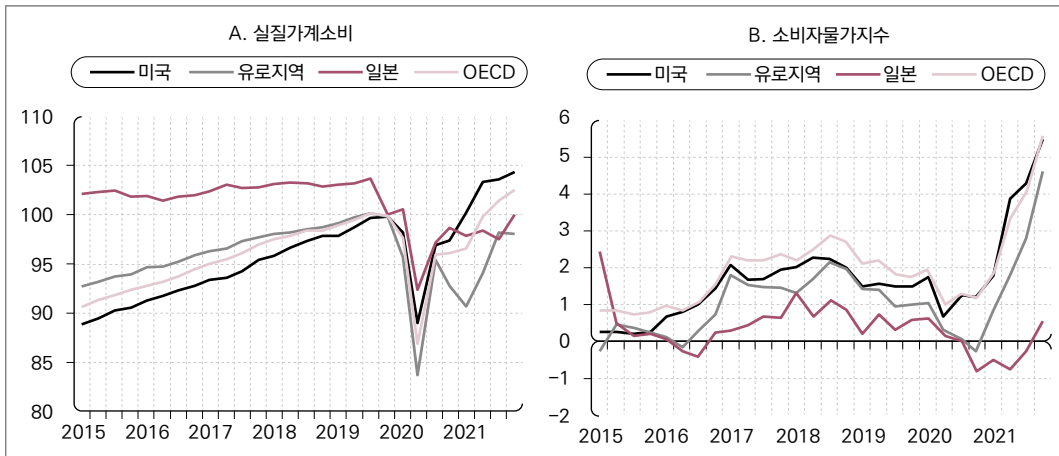
  - ▶ 2021년 OECD 실업률은 5.5%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의 큰 감소에도 실업률 변동은 크지 않았음
    - 다수의 국가의 실업률은 고용유지제도(job retention schemes)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지만,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미국은 실업률이 크게 증가함
    - 미국의 실업률은 2020년 중반 약 13%까지 치솟았으나 2021년 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였고, 실질 근로소득은 2020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21년 말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둔화됨
    - 유로 지역의 실업률은 약 1%p 증가 후 2021년 말에는 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아졌고 일본의 실업률은 다른 국가보다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았지만 경제 회복은 다른 국가보다 부진함
  - ▶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직, 실업 등 노동이동(Labour market transitions)의 영향을 크게 받아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 반면 코로나19는 노동이동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함
  
- ▣ OECD 회원국의 소비증가율은 2021년 회복하였지만 이는 물가 상승을 초래함

  - ▶ 2021년 OECD 소비증가율은 6.3%인데 2020년 -5.5%로 크게 감소 후 반등하였음
    - 2020년 가계소득에 대한 지원정책과 소비의 감소로 가계저축률은 증가함
    - 미국의 민간소비는 2020년 2분기 빠르게 반등하였고 2021년 4분기까지 상품에 대한 지출이 35%로 2019년 30%에 비하여 소비항목이 크게 변화됨
  - ▶ 계속되는 공급 중단과 상품에 대한 소비 증가는 2021년 하반기 물가 상승을 가속화함
    - 독일은 자동차 생산의 감소로 2021년 GDP가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공급망 차질에서 나타난 운송비의 급증은 OECD 회원국들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줌
  - ▶ 에너지 공급의 제한과 수요의 증가로 에너지가격은 상승했고 이는 2021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임
  - ▶ 2021년 4분기 OECD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5.5%로 1990년대 중반(미국 5.5%, 유로 지역 4.5%, 일본 0.5%) 이후 최고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의 구매력은 감소했지만 저축률은 상승함

4) 2019년 실업률 5.4%

- ▶ 다수의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표명했고 일부 중앙은행은 2021년 후반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자 함

[그림 1-1-2] 실질가계소비 및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2, p. 18, Figure 1.6. 재인용

▣ OECD 회원국의 기업 투자는 회복세를 보임

- ▶ 생산량 증가, 낮은 이자율, 투자심리 회복 등은 기업투자를 유인하였고 투자증가율은 2020년 4.25% 감소 후 2021년 5%로 반등함
- ▶ 2021년 생산자본스톡(productive capital stock)의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슷해졌으나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의 경우 2019년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함

## 2 공공부채 및 재정수지

▣ OECD 회원국 예산수지는 개선되었지만 공공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음

- ▶ 정부지출은 증가했고 세입은 감소했으며 차입과 공공부채는 급격히 증가함
  - OECD 회원국의 전체 공공부채는 2020년 20%p 이상 증가함
  - 이미 인구고령화, 서비스가격 상승으로 심화된 정부의 재정압박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채로 가중되었고 이는 현재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정개혁을 추진하여야 함을 시사함

- ▶ OECD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2020년 -10%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7.5%로 다소 완화됨
  - 다수의 국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정책을 실시하였고 2021년 재정적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특히 미국은 2020년 실업수당 확대, 중·저소득층 지원 등 재정정책의 확대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기록함
- ▶ 개발도상국은 OECD 국가보다 재정정책 대응이 제한적이었는데 재정여력이 부족하거나 코로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분석함
- ▶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다수 국가의 국채수익률은 크게 하락함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임
  - 저금리로 발행된 국채 증가는 공공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자지급이 감소하는 추세를 설명하고 있음

### 3 소득불평등

- ▾ 각국의 정부보조(government support)로 소득불평등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코로나19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함
  - ▶ 현금지원 정책 등 정부보조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2020년 실질소득(real income)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함
  - ▶ 2021년 가계소득(household income)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과거 평균으로 회복함
  - ▶ 다수의 국가에서 가계저축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주로 부유층과 고소득 가계에서 혜택을 받음
  - ▶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지원정책 효과로 소득불평등이 감소함
    - 다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육의 단절은 향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II 세수 동향(Tax revenue trends)

- ▾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의 배경으로 35개의 OECD회원국 GDP 대비 조세 수입(이하 “조세부담률”) 및 세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세수 동향을 설명하고자 함
- ▾ OECD회원국의 2020년 조세부담률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배경으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여 32.4%로 소폭 상승함
  -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전체 세수 구성 및 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침
    - 조세지원 정책 조치의 강화된 세금공제 및 세율의 일시적인 변동으로 세수가 감소되고, 봉쇄 및 기타 제한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 및 가계 소비 등이 조세 수입에 영향을 주었음
  - ▶ 그러나 조세 수입이 하락대비 GDP감소가 더 컸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다소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남
- ▾ 2020년 36개국 중 20개국<sup>5)</sup>에서 조세부담률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6개국<sup>6)</sup>이 감소하였음
  - ▶ 2020년 7개국<sup>7)</sup>에서 조세부담률이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9개국에서 30~40% 가량의 수준을 나타냄<sup>8)</sup>
    -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46.5%), 프랑스(45.5%)인 반면에, 가장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1.6%)이며 한국은 약 2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 ▶ 조세부담률 상승세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스페인(1.9%p)인데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SSCs) 감소폭이 작았기 때문임
    - 이어서 멕시코, 아이슬란드에서도 조세부담률이 1%p 이상 증가하였음

5)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캐나다,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한국, 스위스, 코스타리카, 멕시코, 미국

6) 콜롬비아, 칠레, 아일랜드, 튀르키예, 이스라엘, 영국,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독일, 노르웨이,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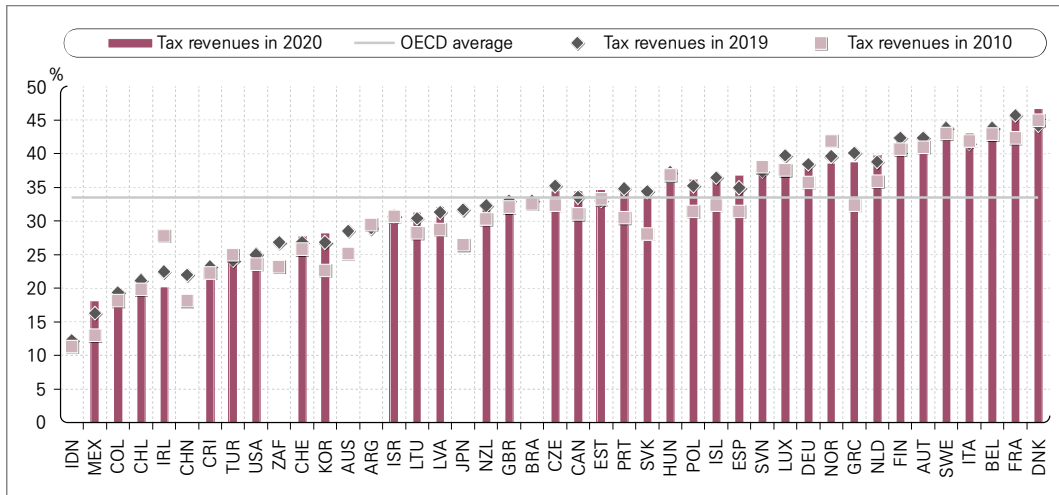
7)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8) 브라질, 일본은 2020년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음

- ▶ 칠레와 노르웨이에서는 조세부담률이 1%p 이상 하락하였음
- 노르웨이의 조세부담률이 크게 감소(3.5%p)한 이유는 유류세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기인함

[그림 1-11-1] 국가별 조세부담률(2019~2020년)

(단위: %)



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20년 데이터는 없음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2: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Tax Policy Reforms 2020, 2022, p. 32, Figure 2.3.

- ▣ 지난 10년간의 비교에서 이용가능한 정보가 있는 전체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0년의 30.5%에서 2020년 32.4%로 증가함
  - ▶ 증가한 국가로는 슬로바키아와 그리스가 각각 6.7%p와 6.5%p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외에 한국, 일본<sup>9)</sup>, 스페인 및 멕시코도 조세부담률이 5%p 이상 증가함
  - ▶ 감소한 국가는 9개국<sup>10)</sup>이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국가는 아일랜드로 2010년 27.7%에서 2020년 20.2%로 7.5%p 낮아짐
- ▣ 2020년 20개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는 2019년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세수보다 GDP 감소가 더 컸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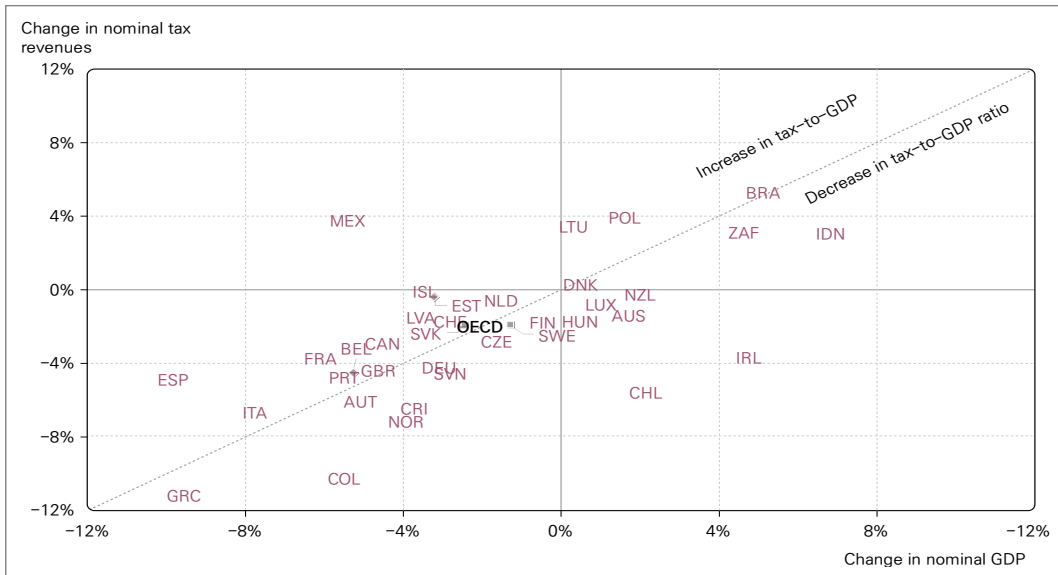
9) 일본은 201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

10) 콜롬비아, 칠레, 아일랜드, 튀르키예, 이스라엘, 헝가리,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 ▶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국가 중 명목 기준 세수가 증가한 국가는 6개국<sup>11)</sup>이며, 나머지 14개국<sup>12)</sup>에서는 세수 및 GDP가 모두 감소를 나타냄<sup>13)</sup>
- ▶ OECD 회원국 중 16개국에서 조세부담률이 평균 2.4% 하락함
  - 이 중 덴마크만 전년도보다 명목 조세 수입 수준이 높았지만,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았음
  - 이외에 11개국<sup>14)</sup>은 명목 세수와 명목 GDP 모두 감소하였으나 명목 세수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4개국<sup>15)</sup>은 명목 GDP가 증가하였으나 명목 조세수입은 감소함

[그림 1-II-2] 명목기준 세수 및 GDP 변화(2019~2020년)

(단위: %)



주: 1. 명목 GDP의 변화량을 x축, 명목세 변화량을 y축에 표시함  
 2. 대각선은 조세부담률이 변하지 않은 지점임  
 3. 대각선 위의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국가이며, 아래의 국가는 감소한 국가임  
 4.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8~2019년의 기준이며, 일본은 상기 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2: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Tax Policy Reforms 2020*, 2022, p. 33, Figure 2.4.

- 11) 멕시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브라질, 한국, 튀르키예
- 12) 그리스, 콜롬비아,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독일, 슬로베니아, 체코, 핀란드, 스웨덴, 헝가리, 룩셈부르크, 호주, 칠레, 아일랜드
- 13) [그림 1-II-2] 명목기준 세수 및 GDP 변화(2019~2020년)에는 국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원문 데이터에는 한국, 튀르키예가 있음
- 14) 그리스, 콜롬비아, 호주,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슬로베니아, 독일, 체코, 핀란드, 스웨덴
- 15) 아일랜드, 칠레, 헝가리, 룩셈부르크

- ▣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입 구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평균적인 세금 수준은 상승하였음

  - ▶ 2019년 개인소득세(PIT) 수입은 총세입의 22.3%, SSCs는 24.7%을 나타내고 있는데 총세입에서 SSCs의 평균 점유율이 가장 많이 증가함
    - 법인세(CIT) 수입은 최근 10년간 9-10%대를 나타내고 있음
  - ▶ 2019년 소비세(consumption tax) 비중은 33.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특히 부가가치세(VAT/GST)는 1990년 17%에서 20.9%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즉각적인 세수 상승효과가 나타나 증가한 것임
    - 총세입에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타 물품세(excise tax)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6.7%에서 2019년 12.3%로 감소함
  - ▶ 관세 및 기타 무역 관련 세수 비중은 1990년부터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5개 신흥 경제국<sup>16)</sup>에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재산세의 비율은 전체 구성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재산세는 OECD 및 파트너 국가에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 개 연도를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5.2%~5.4% 사이를 유지함
- ▣ 2019년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는 평균적으로 개인 및 기업의 소득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통해 세수의 32.8%를 징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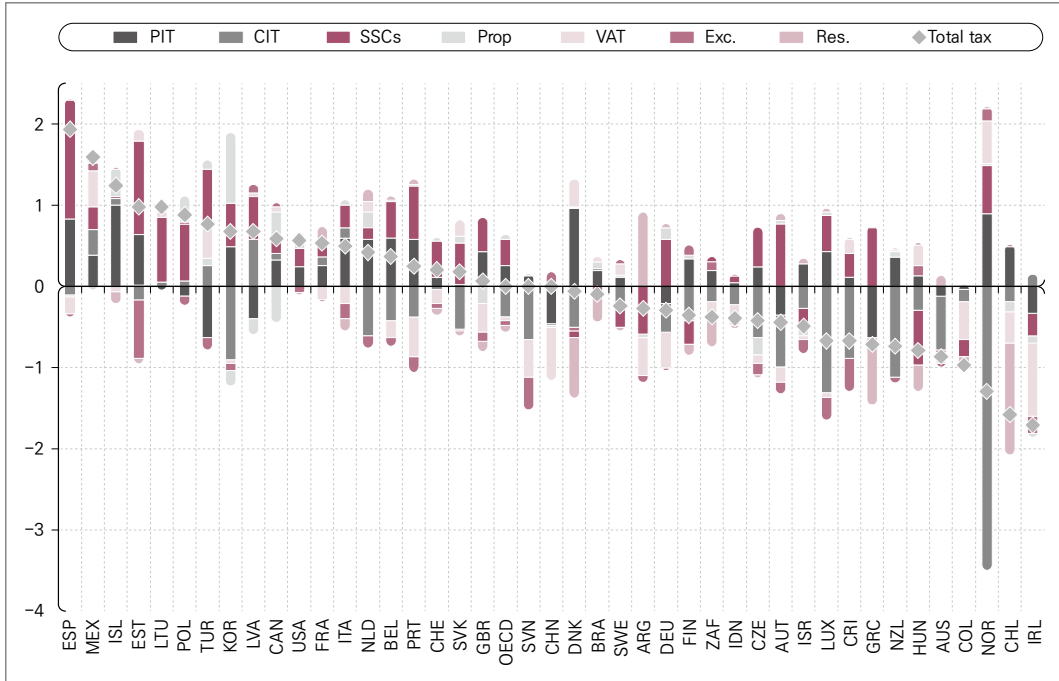
  - ▶ 10개국<sup>17)</sup>은 개인 및 기업 소득에 대한 세금이 총세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는 총세입의 50% 이상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차지하고 있음
  - ▶ 국가 간 소득세(PIT/CIT) 비율의 차이는 상당히 존재하였는데, 2019년에는 중국은 4.8%, 코스타리카는 6.1%, 콜롬비아는 6.8%인 반면에, 미국은 41%, 호주 42%, 덴마크 52.1%으로 매우 편차가 큼
  - ▶ 2019년에 SSCs는 OECD 국가 및 신흥 경제국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총세입의 24.8%를 차지하였으며,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에서는 SSCs가 총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함

16)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17)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그림 1-11-3] 세금 범주별 GDP 대비 세금 비율 변화(2019~2020년)

(단위: %)



주: 1.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20년도는 없음  
 2.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하여 일본의 SSCs 및 총세입에서 제외함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2: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Tax Policy Reforms 2020, 2022, p. 40, Figure 2.9.

- ▣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에 직면하여 여러 국가에서 조세 구조가 변화하였으며, 조세구조의 변화는 조세유형별 명목세수입 변화와 GDP 대비 비중의 변화 모두 나타남
  - ▶ 2019년~2020년 명목상 PIT 및 SSCs 수입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였고, 28개국<sup>18)</sup>에서 GDP 대비 PIT 수입은 증가하였으며 9개국<sup>19)</sup>에서는 감소함
  - ▶ GDP 대비 법인세(CIT) 수입 비율의 평균은 2020년 감소했음
    - 명목 법인세 수입이 12.1%으로 30개국<sup>20)</sup>이 감소하였고, 해당 법인세 수입의 급격한

18) 스페인, 멕시코,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스위스, 슬로바키아, 영국, 슬로베니아, 덴마크, 브라질, 스웨덴, 핀란드, 인도네시아, 체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코스타리카, 헝가리, 노르웨이, 칠레, OECD

19) 리투아니아, 폴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독일, 그리스, 호주, 콜롬비아, 아일랜드

20) 스페인, 에스토니아, 한국,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체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헝가리, 노르웨이, 칠레, 중국,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OECD

감소는 코로나19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기인함

- ▶ 특히 물품세는 28개국<sup>21)</sup>에서 감소하여 모든 유형의 세금 수입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함
  - 물품세 수입은 평균 5.4% 감소하였는데, OECD 회원국의 명목 물품세 수입 변화는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으로 인한 연료 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 2019년 대비 2020년 GDP에 대한 평균적인 재산세 수입 비중(0.05%p 증가) 및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0.04%p 감소)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재산세 비중의 가장 큰 증가는 한국으로 0.9%p 증가를 나타냄

---

21) 스페인, 에스토니아, 폴란드, 한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스위스, 슬로바키아, 영국, OECD, 슬로베니아, 덴마크, 브라질, 스웨덴, 핀란드, 체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칠레, 아일랜드

## III

### 최근 조세 정책의 변화(Tax policy reforms)

- ▾ 본 장에서는 국내 조세 정책 개혁과 관련하여 OECD의 연례 설문에 응답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내 71개 국가가 채택한 조세 조치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룸

  - ▶ 2022년 1월과 2월 경 완료한 국가의 응답을 기반으로,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법인세 및 기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환경세 및 재산세와 관련하여 2021년 발표 혹은 시행된 개정안 위주로 살펴봄
  - ▶ 각 국이 보고한 개정 조치의 범주와 사용된 자료원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세목은 상이할 수 있음
- ▾ 조세 정책 개혁과 관련한 OECD의 연례 설문은 사전에 합의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중앙 또는 그 이하 정부기관의 모든 조세 조치를 보고해야 함

  - ▶ 보다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2010년 11월 ‘조세정책 분석 및 조세 통계 특별조사 위원회(WP2)’ 회의를 통해 설문에 보고할 조세 조치 판단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
  - ▶ 그 기준에는 i) 세율의 중대한 변화, ii) 총세입의 5% 이상 또는 GDP의 0.1% 이상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 기준의 변경, iii) 정치적으로 중요한 제도적 개혁이 포함됨

#### 1 소득세(PIT) 및 사회보장기여금(SSCs)

- ▾ 다수의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 대응하여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s)의 부담을 낮추는 추세임

  - ▶ 조세 정책 변화에 관한 OECD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국가는 2021년 과세연도에 세율 인하 및 세원 축소를 통해 PIT 및 SSC 개혁을 단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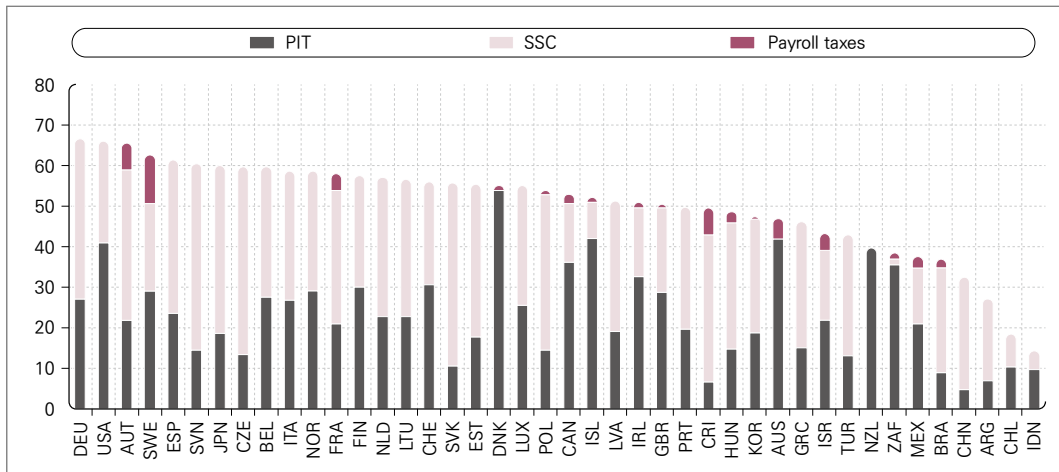
- PIT 세원 축소 조치는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되었음
- 2021년 SSCs에 대한 개혁은 주로 SSC 축소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여 일시적 부담 인하 및 부과 기준 축소 조치의 형태로 이루어 졌음

**가. 주요 세수 원천인 PIT 및 SSCs**

- ▣ PIT 및 SSCs는 많은 국가의 주요 세수로 총세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 PIT와 SSCs는 OECD 회원국 및 OECD 비회원국인 5개의 IF 관할국(이하“5개 IF 관할국”)22) 총세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PIT는 약 23%, SSCs는 약 26%인 것으로 확인됨
  - 체코, 일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는 SSCs가 총세입의 최소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은 PIT가 총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III-1] 총세입에서 PIT, SSCs,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국가별)**

(단위: %)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2: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2, p. 48, Figur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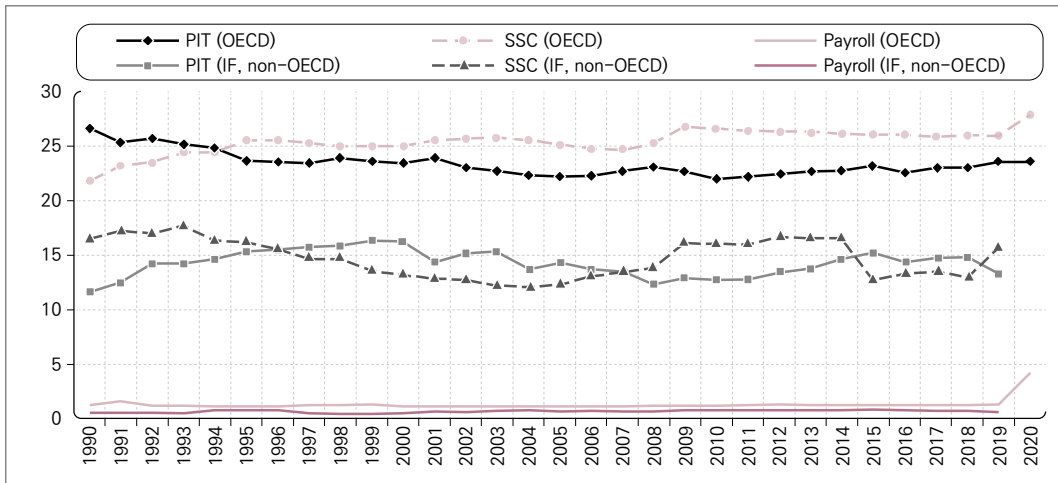
- ▣ OECD 회원국 전체에서 PIT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한 반면 SSCs는 증가하였음

22)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 ▶ 1965년 SSCs는 평균적으로 총세입의 17.6%를 차지했고 PIT는 총세입의 26.2%를 차지하였다가 1995년에는 SSCs와 PIT가 약 25%로 비슷해짐
- ▶ 2020년에 SSCs는 평균적으로 총세입의 27.7%를 차지함으로써 PIT 차지 비율인 23.5%를 넘어섬
-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총세입 구성에서 SSCs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 모두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1-III-2] OECD 및 파트너 국가의 PIT, SSCs, 급여세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2, p. 49, Figure 3.2.

-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총세입에서 PIT와 SSCs가 차지하는 비율 및 절대적 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 2020년 잠정 데이터가 제공된 34개 OECD 회원국 중 19개 국가의 명목 PIT 및 SSCs 수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15개 국가는 감소하였음
  - ▶ 총세입에서 PIT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개국에서 증가한 반면 7개국은 감소하였으며, SSCs의 비중은 28개국에서 증가가 나타나며 6개국이 하락하였음
    - 몇 개 국가에서는 PIT 및 SSCs 감소가 나타났으나 총세입의 감소폭에 비해 작음이 확인됨

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

- ▶ 근로소득에 대한 평균조세부담은 OECD 회원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5개 IF 관할국에서는 증가하였음
  - ▶ 2019년 OECD 국가에서 평균 임금을 버는 독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평균조세격차(The average tax wedge)<sup>23)</sup>는 OECD 비회원 IF 관할국에 비해 더 높았음
    - 브라질과 중국의 평균조세격차는 각 32.5%와 30.7%로 OECD 평균인 35%에 근접한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6.9%, 인도네시아는 7.8%로 추정됨
  - ▶ 시간이 지남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평균조세격차는 2000년 36.4%에서 2020년 34.6%로 감소한 반면 5개 IF 관할국<sup>24)</sup>은 2010년 21.4%에서 2019년 22%로 소폭 증가하였음
    -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OECD 회원국에서 평균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은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취해진 재정건전화 조치가 반영된 것임
    - 평균조세격차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저한 감소를 보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OECD 비회원 IF 관할국의 평균조세격차는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브라질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중국에서는 동일한 관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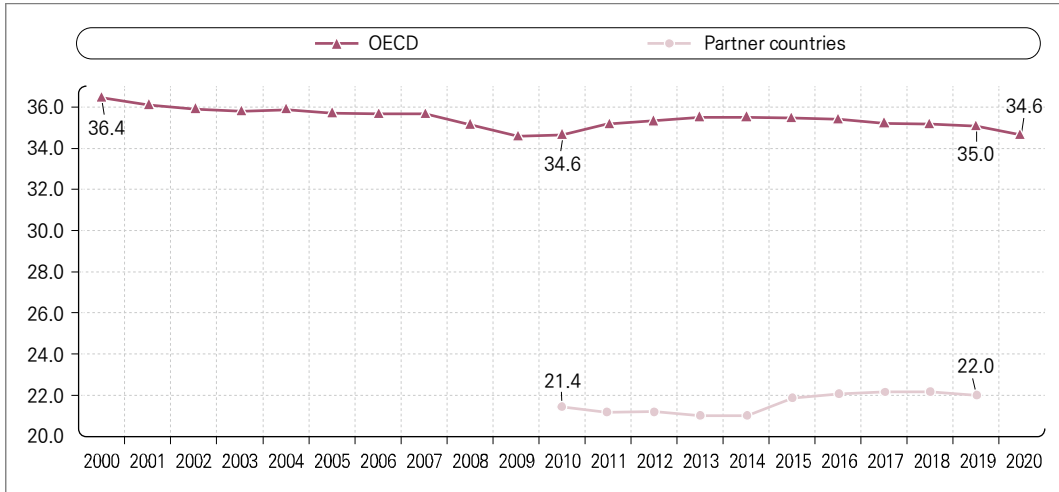
23) tax wedge는 고용주가 지출한 총 노동 비용 대비 노동 소득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24)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림 1-III-3]

OECD 회원국 및 일부 OECD 비회원 IF 관할국의 2000~2020년 기간 동안 노동 소득에 대한 평균조세격차의 변화

(평균임금의 100% 소득수준의 무자녀 독신자의 평균조세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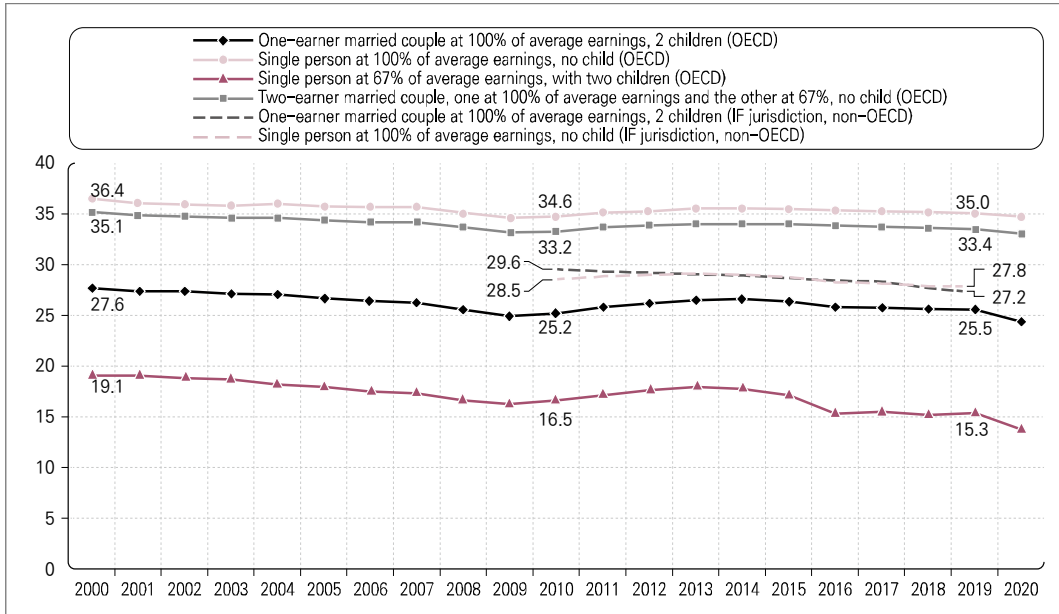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2, p. 50, Figure 3.3.

- ▾ OECD 회원 29개국 중 21개국의 평균조세부담 감소는 코로나19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된 소득세 인하가 주요 원인이나 부분적으로는 명목 평균임금의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 OECD 회원 5개국<sup>25)</sup>에서 나타난 근로 관련 세금 부담의 감소는 주로 낮은 SSCs와 관련이 있음

25)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그림 1-III-4] 2000~2020년 OECD 회원국 및 일부 OECD 비회원 IF 관할국의 노동 소득 대비 평균조세격차의 변화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2, p. 51, Figure 3.4.

#### 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변화

- ▣ PIT 개혁은 세수증대, 경제성장 촉진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도구임
- ▶ PIT 개혁에는 PIT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와 PIT 세원의 확대 또는 축소가 포함될 수 있고 시행 시에는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인상은 누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 및 투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
- ▶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에 PIT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거의 없으나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PIT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새로운 과세 구간을 도입함
- ▶ 대부분의 국가에서 PIT 세율 인하를 단행하였는데, 그중 다수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구간의 지원을 위한 세율 인하임

- 이탈리아는 과세 구간의 수를 기존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중간의 과세구간에 대한 PIT 세율을 낮추는 개혁을 단행하였음
- 아르메니아는 2021년 1월에 PIT 고정 세율<sup>26)</sup>을 23%에서 22%로 인하하였음
- 오스트리아는 2023년 7월부터 두 번째 및 세 번째 과세 등급에 적용되는 PIT 세율을 각각 35%에서 30%, 42%에서 40%로 인하할 예정임

#### 라. PIT 세원 축소 경향

- ▣ 대부분의 국가들은 PIT의 세원을 축소해오고 있음
  - ▶ 대부분의 PIT 세원 관련 개혁은 2021년 및 이후 시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세원 감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구간의 조정과 더불어 근로장려세제 지원 등의 형태로 이행되고 있음
- ▣ 일부의 OECD 회원국 및 OECD 비회원 IF 관할국은 기본수당을 인상하거나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음
  - ▶ 7개<sup>27)</sup>의 OECD 회원국 및 2개<sup>28)</sup>의 OECD 비회원 IF 관할국에서는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수당을 인상하거나 세액공제를 확대함
    - 폴란드를 비롯하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핀란드, 알바니아는 기본수당을 인상함
    - 체코, 아일랜드는 일반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으며 브라질은 소득세 면제 구간의 범위를 확대함
- ▣ 여러 국가에서 가족과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PIT 조치를 도입하였음
  - ▶ 오스트리아, 체코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였음

26) 아르메니아는 2019년 9월 1일, 기존 누진소득세율 체계에서 23%의 고정 소득세율 체계로 대체한 바 있음

27)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핀란드, 체코, 아일랜드

28) 브라질, 알바니아

- ▶ 폴란드는 4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추가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함
  - ▶ 근로소득과 같은 특정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최대 8만 5,528즈워티(2만 2,146 달러)까지 비과세함
- ▾ 이전 연도에 비해 더 많은 국가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및 기타 근로 혜택을 확대함
- ▶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는 근로 유인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함
    - 미국은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
    -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는 점중 및 점감 구간에서의 세제혜택을 증가시키거나 저소득 또는 중산층의 혜택을 상향 조정함
- ▾ 일부 국가에서는 자영업자 및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PIT 개혁을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함
- ▶ 폴란드는 R&D 센터에 대한 적격 비용 공제 금액 인상과 같이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PIT 감면을 강화함
  - ▶ 튀르키예는 소셜 콘텐츠 제작자와 앱 개발자의 소득이 지정된 금액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아닌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함
- ▾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관련 PIT 조치들이 시행됨
- ▶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제로로의 환경 전환을 위해 주택개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거나 기존 혜택을 확대하였음
    - 이탈리아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및 지진 복원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건물로의 개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함
    - 핀란드는 2022년에서 2027년 사이 기간 동안 석유 난방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가구에 대해 전환 비용의 세액공제를 일시적으로 최대 2,250유로(2,661 달러)에서 3,500유로(4,140달러)로 인상하였음
  - ▶ 또한 탄소절감 운송수단과 관련한 PIT 조치들이 도입되거나 확대됨
    - 벨기에에서는 가정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한 경우 최대 675유로(798달러)의 세금 공제가 가능함
    - 말레이시아는 2022년 및 2023년 과세연도에 전기 자동차의 구매, 대여 및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최대 2,500링깃(604달러)까지 공제할 것임을 발표함

-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시적 PIT 감면조치 또는 가계와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함
  - ▶ 일부 국가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시적 PIT 세액공제를 시행함
    - 스웨덴은 중산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임시 근로세액공제를 도입함
  - ▶ 일부 국가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함
    -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중 최대 1,500유로(1,774달러)에 대한 PIT를 비과세함
    - 한국은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일시적으로 5%p 인상하였음
    - 헝가리, 캐나다 온타리오 및 불가리아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환급 또는 일시적 공제 등을 시행함

#### 마. 자본소득 과세 체계의 변경

- ▣ 자본소득의 세율 변경을 단행한 국가는 2개국<sup>29)</sup>이었고, 세율 변경을 단행한 국가는 8개국<sup>30)</sup>이었음
  - ▶ 세율 변경은 세율인상을 통해 시행되었고, 세율 변경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같이 세율을 확대한 경우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 및 특정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같이 세율을 축소한 경우로 구분됨
  - ▶ 브라질과 노르웨이는 특정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음
    - 브라질은 포괄적인 소득세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예: 증권거래 수익 및 투자펀드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변경하였는데, 핵심은 배당 분배에 대한 15%의 원천징수세(이전에는 비과세)를 도입한 것임
    - 노르웨이는 주주 소득과 임금 간의 한계세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이동의 유인을 줄임<sup>31)</sup>

29) 브라질, 노르웨이

30)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불가리아, 몰타

31) 노르웨이는 일반 배당수익률에 대해 회사 수준에서 과세하는 반면 일반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주주 수준에서 22%의 단일세율에 조정 계수를 곱하여 과세하는 데, 개혁을 통해 조정계수를 기존

- ▶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는 세원확대를 통해 세원변경을 단행함
  -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15% 및 27.5%의 세율을 부과하여 세수 기반을 확대함
- ▶ 반면 벨기에, 불가리아, 몰타는 2021년 자본소득 세원을 축소하는 조치를 도입함
  - 불가리아는 EU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내 조약 당사국에 설립된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를 폐지하였음
  - 벨기에는 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투자자들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적격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25만유로(29만 5,685달러)에서 50만유로(59만 1,370달러)로 두 배 상향하였음
  - 몰타는 자격 기준에 따라, 양도되는 특정 부동산 가치 중 75만유로(93만 7,500달러)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2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및 기타 법인세

- ▣ 법인세율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국가 간 법인세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은 환경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을 자극하기 위해 법인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음
- ▣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와 맞물려 법인세 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 세계 135개 이상의 관할국이 두 개의 Pillar에 참여하여 다국적 기업이 공평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

### 가. 법인세 수입 추세

- ▣ GDP 대비 법인세 수입의 비율과 총세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 이러한 차이는 법인세가 GDP의 0.7%인 라트비아에서 GDP의 4.7%인 호주까지 다양했음

1.44에서 1.6으로 상향시켜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기존 31.6%(100×22%×1.44)에서 35.2%(100×22%×1.6)으로 높아지게 되었음.



- OECD 회원국의(중앙 및 지방) 합산 법인세율의 경우, 2000년 32.2%에서 2021년 23.3%로 감소함
- ▶ 콜롬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최고 법인세율 인상을 발표함
-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인하 유형 및 방법은 첫 번째 과세구간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소득 기준 대신 비소득 기준(매출액 또는 자산)에 따라 결정하는 등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거나 전반적으로 인하 기초를 보임
- ▣ 개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와 관련하여 독일과 멕시코는 법인세법을 현대화하고 과세를 간소화하는 등 세금 체계를 개혁함
  - ▶ 독일은 법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법을 현대화하여 파트너십이 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파트너십이 법인으로 취급받게 된다면 연방 개인 소득세 제도(최대 45%의 소득세율 적용 및 연대부가세, 교회세, SSC 부과)하의 도관체로서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15.825%)와 지방 영업세(7~17%)가 과세됨
  - ▶ 멕시코는 2022년 종합 세제 개편을 도입하면서 세금 납부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소득이 3,500만 멕시코 페소(17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과 개인의 과세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신설함<sup>33)</sup>
- ▣ 지적재산권(IP)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다른 원천에서 파생된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데 도입 국가가 확대되고 있음
  - ▶ 호주 정부는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 특허에서 파생된 기업 소득에 대해 2022년 7월 1일부터 17%의 인하된 세율로 과세하는 특허박스의 도입을 발표함<sup>34)</sup>
  - ▶ 이탈리아는 2022년을 기점으로 IP 제도를 지출에 기반한 조세 규정으로 전환<sup>35)</sup>하였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은 이탈리아의 기존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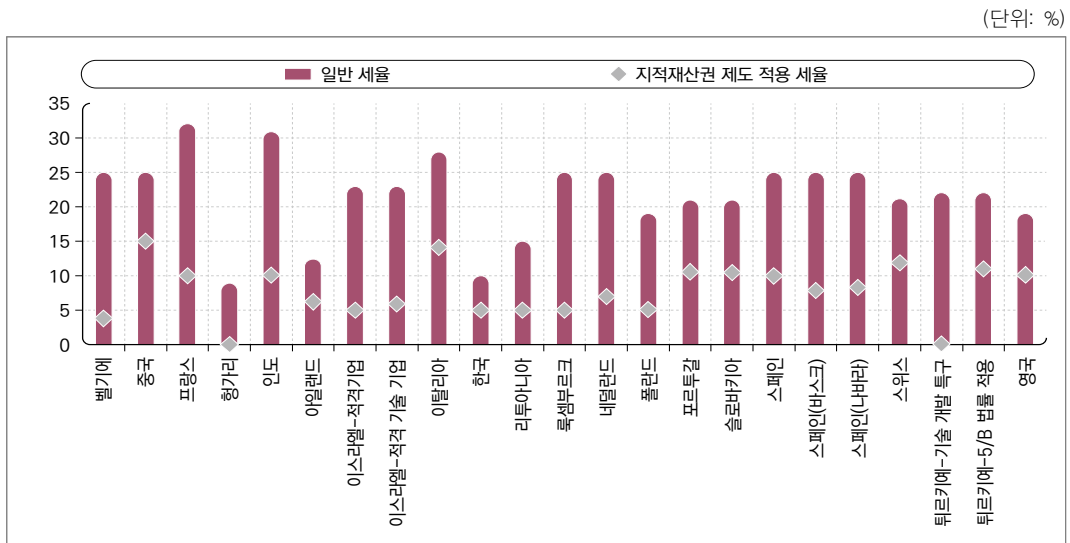
33) 새 정책은 2022년부터 30만 멕시코 페소(1만 4,798달러) 이하의 총소득에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득에 2.5%의 세율을 적용함

34) 호주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30%, 중소기업의 경우 25%의 세율로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함

35) 적격 IP 자산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출에 대해 지출액의 110%를 공제함

- ▶ 캐나다 퀘벡주는 퀘벡에서 개발된 적격 지적재산을 상업화하는 기업이 적격 지적재산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의 적격 부분에 대해 2%의 실효세율 혜택<sup>36)</sup>을 받을 수 있는 IP 제도를 도입함

[그림 1-III-6] 지적 재산권 제도 적용 및 일반 법인세율(2020년)



자료: Reduced CIT rates under selected non-harmfu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2020, OECD(2022) *Tax Policy Reforms 2022*, p. 72, Figure 3.9.

- ▶ OECD/G20 BEPS 프로젝트에서는 BEPS Action 5를 통해 특정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IP 제도를 포함한 유해한 조세 관행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련 국가들이 Action 5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정하게 함
- ▶ 한계실효세율<sup>37)</sup>은 기업 지분에 대한 공제, 감가상각 특례 및 기타 공제의 효과를 반영하며, 이러한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사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 법인세율에 비해 기업 한계실효세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칠레, 독일, 뉴질랜드, 영국)의 경우 가속 감가상각 규칙을 통해 한계실효세율을 감소시켰으며,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법정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한계실효세율이 하락함

36) 퀘벡지방의 일반적인 지방 법인세율은 11.5%임

37) EMTR(Effective Marginal Tax Rates): 과세로 인해 투자자가 세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전 수익률을 높이는 정도를 측정함

- ▾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거나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시적인 자본 공제를 확대하였고, 녹색 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하기도 함

  - ▶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장비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시행했으며, 주 차원에서 퀘벡 및 온타리오주는 적격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함
  - ▶ 폴란드는 자국 로봇공학 관련 산업의 향상을 목표로 로봇, 주변장치, 원격 관리 장치 및 교육 서비스 관련 비용에 대해 최대 50%의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함
  - ▶ 아일랜드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납세자가 구매 연도의 과세 이익에서 수소 연료 차량과 연료 공급 장치의 취득 등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는 가속 상각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 모리셔스는 기업 소득에서 각각의 소득 연도 동안 특수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두 배를 공제할 수 있는 자본 공제를 도입함
  
- ▾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OECD 회원국 국가는 2000년 20개국에서 2021년 38개국 중 34개국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함

  - ▶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에 걸쳐 연구개발 보조금의 내재한계 조세보조금률 (implied marginal rate of R&D tax subsidy)이 증가했으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비율이 더 높았음
    - 2013년 이후 내재적 보조금 수준의 변동 경향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특정 사례의 조세혜택 조치 확대 또는 강화를 통해 크게 확대됨
  
- ▾ 연구개발비 관련 세제혜택은 새로운 제도 도입, 공제율 및 공제 대상 확대, 유효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었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 또한 활용됨

  - ▶ 핀란드와 이탈리아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특히 폴란드는 기한의 연장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또한 확대함
  - ▶ 독일은 직원들의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매각, 계약 종료 또는 행사 시점 12년 후까지 연기하는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함

- ▣ 손실 이월 및 소급환급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회복 기간 동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도입됨
- ▶ 프랑스는 2020년 3분기 시작부터 2021년 2분기 말까지 발생한 최초 결손에 해당하는 한도까지 소급을 허용했으며, 헝가리는 2021년부터 에너지 공급자의 법인세법상 손실에 대해 이월제도를 도입함

#### 다. 법인세 관련 OECD/G20 BEPS 프로그램

- ▣ 디지털화와 관련한 조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BEPS 프로젝트 및 Pillar1, 2를 수립하였고, 해당 계획은 다국적 기업의 물리적 존재 관할권을 벗어난 새로운 과세권 설정 및 최저한세 관련 규정을 포함함
  - ▶ Pillar 1은 물리적 관할권에 관계없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권을 제공하여 과세권을 이익을 얻는 시장으로 재할당하는 등 다국적 기업과 관련한 국가 간 이익과 과세권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며, 이러한 이익 재분배 합의에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es)를 포함한 일방적인 조치의 철폐와 정지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
  - ▶ Pillar 2는 실효세율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규정하며, 조세 경쟁에 대해 다자간 합의된 제한을 두고, 개발도상국들이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을 통해 최저 9%까지 과세되지 않을 때 세원을 잠식하는 지출(이자 및 로열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 2015년 10월에 발의된 OECD/G20 BEPS 패키지는 다양한 조항을 통해 국가 간 상호 합의 및 정보 교환을 지향하며, 조약 남용 등을 지양함으로써 각 국가가 조세 회피를 대처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 거래의 과세와 관련한 다양한 진전이 있었음
  - ▶ BEPS Action 6은 조약 쇼핑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2022년 3월 발표된 4차 상호 검토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의 조약 쇼핑에 대한 최소 기준 이행 합의를 확인함
  - ▶ BEPS Action 13은 최종 모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각 관할구역에 대한 정보(회전율, 이익, 종업원, 납부한 세금 등)를 제공하고 각국의 과세 관청은 이 데이터를 다

른 과세관청과 교환하도록 하는데, 2022년 3월 현재 3000개 이상의 교류 관계가 활성화되었고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 교환 또한 증가함

- ▶ BEPS Action 14에 의해 퀴라소, 건지, 맨 섬, 저지, 모나코, 산마리노, 세르비아가 다자간 문서에 서명했으며, 모든 관련 관할국은 조세조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 합의 절차(MAP) 지침을 발행하거나 업데이트함

▾ 2015년 10월에 발의된 BEPS 패키지와 관련하여 2021년에 패키지의 구현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을 위해 다자조약(MLI) 조항이 발효됨

- ▶ 2022년 3월 기준 약 880건의 조세협약에 대해 BEPS 다자협약(MLI) 이행 조항이 발효되었으며, 2016년 11월에 100개 이상의 관할국이 MLI를 체결함

▾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BEPS 최소기준을 넘어 BEPS Action 2, 3, 4를 채택하였음

- ▶ EU 이사회가 BEPS Action 2, 3, 4를 채택한 후, 몇몇 EU 국가들은 입법상 조세회피 지침 이행을 완료했고, 이러한 국가는 증가하고 있음
- ▶ 독일은 2020년 1월 1일 자로 출국세와 혼성불일치 방지에 관한 규칙을 소급하여 시행 및 개정하였는데, 독일은 저세율 관할국의 업무 관련 비용 공제에 대한 강화된 규정 및 엄격한 원천징수조치와 이익 분배, 주식 판매 등과 관련된 제한 조치를 입법함
- ▶ 폴란드는 CFC 규칙과 관련하여 그 정의를 확장하였는데, 공격적인 조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하여 수동적 소득 범위를 확장하고 CFC판단과 관련한 새로운 전제(주식, 부동산, 무형자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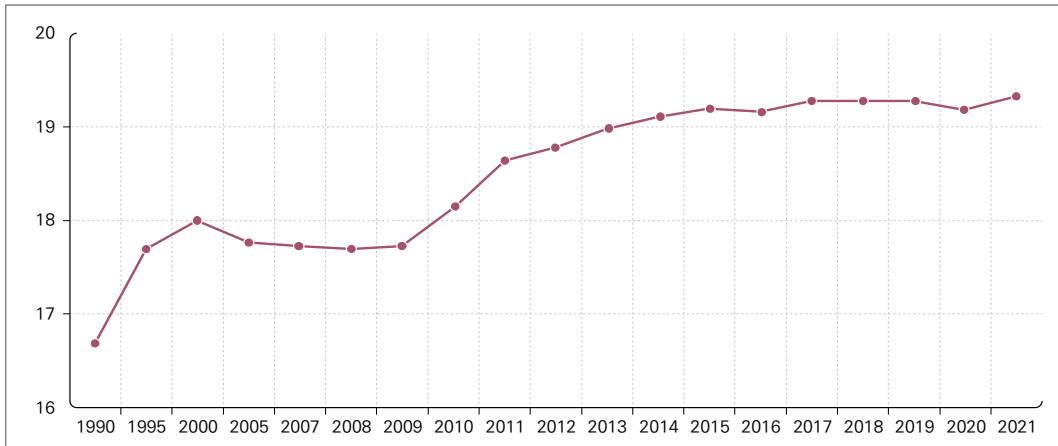
### 3 부가가치세(VAT/GST) 및 물품세(excise tax)

#### 가.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의 안정화

- ▾ 부가가치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였으나, 지난 6년간의 표준 세율을 대체로 유지하는 추세임
  - ▶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은 2020년 19.2%에서 2021년 19.3%로 소폭 상승함
  - ▶ 2014년 이후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은 큰 변동없이 19%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III-7] OECD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 변화(1990~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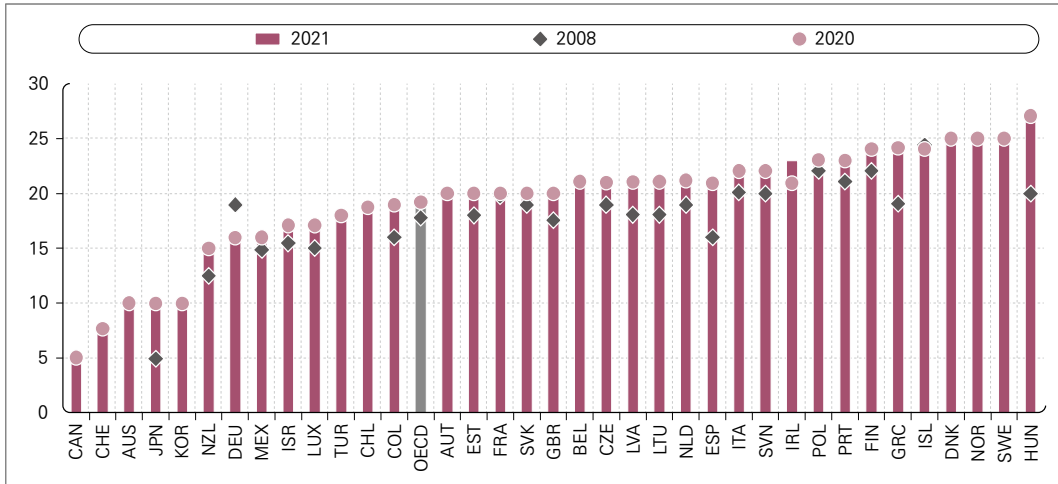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2*, p. 87.

- ▾ 2021년 OECD 회원국 중 부가가치세 세율이 22% 이상인 국가는 12개, 이하인 국가는 24개국이며, 이 비율 또한 2014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 독일과 아일랜드가 부가가치세 세율을 각각 16%와 21%로 인하한 바 있으나, 6개월 후 기존의 19%와 23%로 복귀함

[그림 1-III-8]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

(단위: %)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2*, p. 88.

## 나.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의 확대

### 1)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일시적 감면 확대

- ▣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감 세율 적용 대상 상품 및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정 상품에 대한 과세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 ▶ 2020년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세율 대상을 확대함
  - 의료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수요를 장려하고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짐
  - 리투아니아는 케이터링 서비스와 예술 및 문화 서비스, 우루과이는 관광 서비스에 각각 9%의 경감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베트남은 숙박, 문화,接客, 관광 부문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30% 경감함
  - 아이슬란드의 경우 주택 건설 및 유지 서비스의 노동분담금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조치는 처음 3~6개월간 도입 후, 이동 제한, 매장 및 공공장소의 폐쇄가 유지되는 동안 조치가 연장되기도 하였음

- ▣ 2020년 부가가치세 세율 감면 대상이 되었던 대부분의 업종들은 2021년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기존 세율로 복귀함
  - ▶ 의료용품을 제외한 46개의 부가가치세 경감 세율 임시 조치 중 43개가 2021년 해제됨
  - ▶ 그러나 의료용품과 함께 관광과 같이 단기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세율은 적용 기간을 연장함

## 2)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목적의 부가가치세 일시적 감면 확대

- ▣ 2021년 하반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에 직면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경감 세율 혹은 면제 대상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함
  - ▶ 코스타리카, 체코,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은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였음
    - 코스타리카는 연료 운송 및 유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체코는 전기 및 가스에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에스토니아는 가스, 전기 및 난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기존 20%의 표준 세율에서 9%의 경감 세율을 적용함
    - 이탈리아는 민간 및 산업용 천연가스 공급을 부가가치세 초경감 세율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2021년 4분기부터 5%의 경감 세율을 적용하고, 가정용 가스 요금은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폴란드는 2022년 1월부터 23%의 표준 세율이 적용되던 가스 및 지역난방에 8%의 경감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스페인은 21%의 표준 세율이 적용되던 에너지 관련 요금에 6개월간 10%의 경감 세율을 적용함
  - ▶ 또한 세네갈은 국세 식량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2021년 9월부터 밀가루에 영세율을 적용함

## 3) 경감 세율 영구 적용 대상의 확대

- ▣ 성불평등 완화와 관련하여 여성 위생용품을 경감 세율 영구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조치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임
  -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는 여성 위생용품을 10% 혹은 9.5%의 경감 세율 대상에 영구 추가하였으며, 멕시코와 영국은 영세율을 적용함

- ▶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아이슬란드,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2011년 초부터 이미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음
- ▣ 이외에도 일부 국가에서 미디어, 보수 및 수선, 통신 기기, 농업 등과 관련한 경감 세율 대상 영구 추가가 이루어짐
- ▶ 라트비아와 루마니아는 5%의 경감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 도서, 언론 및 기타 대중 매체를 추가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은 경감 세율 적용 품목에 보수 및 수선 서비스를 추가함
- ▶ 튀르키예는 중고 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18%에서 1%로 인하하고, 알바니아는 농업 투입물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함

#### 다. 부가가치세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

##### 1)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액 인상

-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OECD 회원국 중 16개국에서 부가가치세 등록 및 징수 기준액을 인상하였으며, 2021년에는 2개국에서 이와 관련한 변경이 있었음
- ▶ 포르투갈은 2021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액을 1만유로에서 1만 2,500유로로 25% 인상함
- ▶ 콜롬비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액을 1억 2,280만콜롬비아페소(9만 1,000달러)에서 1억 2,710만콜롬비아페소(9만 5,000달러)로 인상함
- ▶ OECD 회원국 외에도 알바니아에서 수입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5천만달러에서 5억달러로 10배 인상하기도 함
- ▣ 이 밖에도 일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등록 기준액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임
-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내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액인 37만 5,000사우디아라비아리얄(9만 8,680달러)을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자에게까지도 적용됨을 명시하는 지침을 발표함

## 2)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스템 개선

- ▾ 다수의 국가에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함
  - ▶ 독일은 2022년 2분기 말까지 납세 유예를 허용하고, 부가가치세 선납 세액을 축소함
  - ▶ 칠레는 2021년 1분기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기한을 2021년 4분기로 연기하였으며, 다음 해까지 균등 분할 납부를 허용함
  -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세금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연장함
  - ▶ 베트남은 2021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1분기의 경우 5개월, 2분기는 4개월, 3분기는 3개월 연기함
  
- ▾ 코로나19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응답 시간 단축, 절차 및 행정 요건 간소화 등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 폴란드는 온라인 또는 가상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소매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15일 이내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 ▶ 조지아는 부가가치세 완전 자동 환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환급액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도록 함
  - ▶ 슬로베니아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게 함

### 라.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 개선

- ▾ 2021년 9개국에서 비거주자인 공급자의 디지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하여 OECD 표준을 채택하였거나 도입을 발표함
  - ▶ 캄보디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케냐, 나이지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은 비거주자의 공급에도 국내 및 비디지털 공급과 동일한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 이집트와 페루는 인바운드 디지털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체제를 계속 정비 중에 있음

- ▣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상품 수입품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 저가 상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고려하고 있음

  - ▶ 이들 과세는 온라인 공급자 및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간소화된 등록 및 납세 협력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EU 가입국이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매자 징수제 도입을 발표함
  
- ▣ 최근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한 공유 및 각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OECD는 2021년 “공유 및 각국 경제의 성장이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정책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Growth of the Sharing and Gig Economy on VAT/GST Policy and Administration)”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리 대응 전략을 마련함

  - ▶ 운송 및 숙박 시설과 같은 여러 산업에서 새로운 상업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으며, 전문 서비스 및 금융 등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 ▶ 이전에는 현금화되지 않았던 자원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부가가치세 시스템이 대상 수입을 파악하고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함
  
- ▣ 또한 OECD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및 주요 지역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별 디지털 툴킷을 제작하고 있음

  - ▶ 2021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을 위한 부가가치세 디지털 툴킷을, 2022년에는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툴킷을 각각 발간함

**마. 건강 저해 품목에 대한 과세의 지속적 확대**

- ▣ 담배 제품에 대한 물품세 인상은 꾸준히 이어져왔으며, 2021년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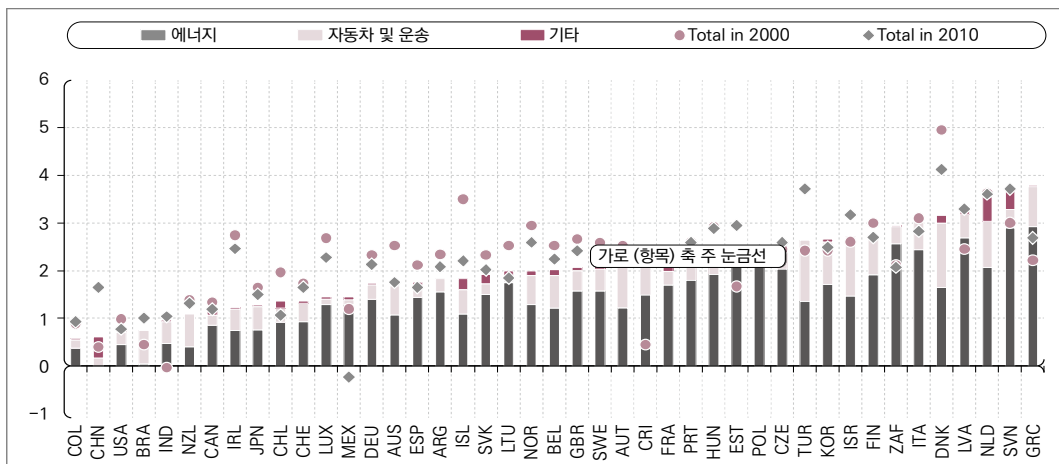
  -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벨기에, 캐나다에서 담배 제품에 대한 물품세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독일, 리투아니아, 케냐,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은 2022년부터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힘

- ▶ 덴마크와 리투아니아는 니코틴과 담배 대체품에 대한 신규 세금을 도입하였으며, 독일과 페루는 2022년 중반부터 대체 담배에 대한 과세 계획을 발표함
  - ▶ 그러나 토고는 담배 밀수 및 밀수 제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몇 년간의 점진적인 인상에 이어 2021년 담배 제품에 대한 물품세를 인하함
- ▣ 주류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곤란을 겪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소비세 부담을 완화한 국가 역시 존재함
- ▶ 아르메니아,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에서 주류에 대한 물품세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영국은 2023년 초부터 주류 관련 소비세 개혁을 통해 알코올 도수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 ▶ 호주는 2021년 중반부터 적격 양조업자와 증류주에 대해 소비세를 최대 35만호주달러(26만 2,960달러)(기존 10만호주달러(6만 8,820달러))까지 면제하며, 독일은 2003년까지 적용되었던 중소 양조장에 대한 경감 세율을 일시적으로 재도입함
  - ▶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소규모 및 독립 양조장에 대해 물품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취함
- ▣ 가당 음료에 대해 신규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기존의 세금이 인상되는 등, 각국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
- ▶ 2021년 3분기 현재 14개 OECD 회원국과 3개 OECD 비회원국에서 건강 관련 세금을 징수하고 있음
  - ▶ 2021년에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리터당 0.2캐나다달러(0.16달러))와 이스라엘(리터당 0.7~1셰켈(0.22~0.31달러)), 나이지리아(리터당 10나이라(0.03달러))는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함
  - ▶ 네덜란드는 물을 제외한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기존 소비세를 인상함

#### 4 환경세(Environmentally-related taxes)

- ▾ 2020년 환경세는 GDP의 2%로 2010년 2.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개별 국가마다 편차가 존재함
  - ▶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튀르키예는 GDP의 0.5%p 이상 크게 감소함
    - 반면 그리스,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 2019년에 비해 2020년 환경세 명목수입은 감소했지만 2010년 이후의 환경세 명목수입은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덴마크에서만 감소함

[그림 1-III-9] 국가별 환경세 추이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2, p. 104, Figure 3.22.

- ▾ 2020년 에너지 관련 세금은 2개국<sup>38)</sup>을 제외하고 환경세 수입의 평균 71%를 차지하고 자동차 관련 세금은 평균 23%로 그 뒤를 이음
  - ▶ 2021년 에너지 관련 세금은 낮아졌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에너지세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21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행되었기 때문임<sup>39)</sup>

38) 브라질(5%), 뉴질랜드(39%)

39) 보고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4장에서 별도로 분석함

- ▣ OECD 회원국 및 포괄적 이행체계 관할국 중 5개국<sup>40)</sup>은 탄소배출량의 거의 절반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효탄소가격(ECR)<sup>41)</sup>은 여전히 낮음

  - ▶ 2018년은 탄소배출량의 37%, 2021년은 49%를 탄소가격으로 부담했고 탄소가격 부담은 증가 추세지만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는 탄소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G20국가(사우디아라비아 제외)의 경우, 2021년 평균 ECR은 1tCO<sub>2</sub> 당 2018년 대비 2유로(2.5달러) 증가한 19유로(23.75달러)로 임
  - ▶ 유효탄소가격에 영향을 주는 탄소배출량의 비율은 국가마다 다르고 탄소가격 책정을 새롭게 도입한 국가는 유효탄소가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줌
    - 캐나다는 2019년 연방정부탄소가격제, 중국은 2021년 전력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독일은 2021년 배출권거래제, 남아공은 2019년 탄소세를 도입함
  
- ▣ 다수의 국가에서 탄소 저감을 위하여 탄소가격을 책정하는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인상하거나 정책지원을 줄임

  - ▶ 5개국<sup>42)</sup>에서 탄소가격제도를 새롭게 제정하고 6개국<sup>43)</sup>에서 탄소가격을 인상했으며 1개국<sup>44)</sup>에서 탄소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 ▶ 에너지 우대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함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난방연료에 대한 에너지세율을 인상, 라트비아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할인을 폐지, 영국은 사업용 레드디젤의 사용자격을 폐지, 벨기에는 전문가용 디젤 환급액을 점진적으로 삭감, 체코는 태양광 추가 부담금을 도입함
  - ▶ 6개국<sup>45)</sup>은 연료 또는 전기소비세를 인상함
  - ▶ 경유는 리터 당 유해물질과 탄소함량이 휘발유보다 높아 경유소비세와 휘발유소비세에 대하여 대부분 차등을 둠
    - 다만, 체코와 에스토니아는 경유소비세를 인하함

40) the five selected non-OECD Inclusive Framework jurisdictions(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41) ECR(Effective Carbon Rates)은 에너지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CO<sub>2</sub>의 가격으로서 에너지 사용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세, 에너지사용에 대한 특별세, 배출권거래가격의 총합

42)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안도라,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43)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남아공,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44) 라트비아

45) 알바니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에스토니아, 폴란드

〈표 1-III-1〉 국가별 에너지사용 세제 개편

구분	세율인상 및 과세기반 확대		세율인하 및 과세기반 축소	
	2020년	2021년 혹은 그 이후	2020년	2021년 혹은 그 이후
산업별 연료	-	-	-	-
농업	리투아니아	스웨덴	-	-
건축	-	영국, 프랑스	-	-
발전	-	체코	-	-
난방	라트비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핀란드
운송	핀란드	벨기에, 핀란드	-	슬로베니아
연료(전분야)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알바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탄소세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	-
전력소비	아일랜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부가가치세	-	-	포르투갈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2, p. 108, Table 3.11.

▣ 자동차세와 자동차등록세를 통하여 오염유발 차량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고 친환경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함

- ▶ 슬로베니아는 구매가격에 CO2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스웨덴은 휘발유 또는 경유 자동차 구매 후 3년간 자동차세를 인상, 프랑스는 오염이 심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세를 인상, 아일랜드는 누진 자동차등록세를 조정하여 오래되고 오염이 심한 경유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
- ▶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는 대체연료 차량에 대한 기업의 투자 및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유지함
  - 다만, 노르웨이, 아일랜드는 전기자동차 구매 인센티브를 축소함

- ▣ 폐기물, 플라스틱,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 외 새로운 환경개선 관련 세금도입은 없었고 플라스틱 관련 세금부과는 보편화됨
  - ▶ 그리스는 단일 플라스틱 컵과 뚜껑, 이탈리아는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스페인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에 조세를 부과하며, 영국은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를 발표함
    - 2021년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기여금제도(plastics contribution)는 의무는 아니나 EU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세금을 도입하도록 유인함

## 5 재산세(Property taxes)

- ▣ 총 재산세 수입 중 부동산보유세 비율은 증가하고 부유세와 금융 및 자본 거래세는 감소함
  - ▶ OECD 회원국 및 5개 IF 관할국에서 부동산보유세는 총 재산세 수입의 55.8%를 차지함
    -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주된 세수재원으로 재정관리, 재산평가, 징수능력이 있는 선진국에서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남
  - ▶ 거래세는 총 재산세 수입의 27.8%를 차지함
    - OECD 국가는 24.3%이고 5개 IF 관할국은 50.6%임
  - ▶ 일부 국가는 부유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총 재산세 수입의 23.1%를 차지함
- ▣ 최근 몇 년간 재산세 세입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한정된 조세수입임
  - ▶ 세계세입통계데이터셋(the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set)에 따르면 OECD 회원국과 5개 IF 관할국의 재산세 비중은 전체 GDP의 1.8%로 비교적 세입비중이 적음
    - 인도네시아는 GDP의 0.2%이고 캐나다는 GDP의 4.2%임
  - ▶ 재산세 추세는 국가마다 다르고 다수의 국가에서 2000년 이후 재산세 세입이 증가함
    - 2000년에서 2020년 동안 25개국은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증가하였고 18개국은 감소하였음
    - OECD 회원국과 5개 IF 관할국은 GDP 대비 재산세 세입이 평균 0.2%p 증가하고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아르헨티나(1.4%p)와 한국(1.4%p)인 반면 스웨덴(0.7%p)과 아일랜드(0.6%p)는 감소함

- ▣ 아일랜드와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부동산보유세를 개정이 이루어짐

  - ▶ 아일랜드는 2021년 7월, 지방재산세(LPT) 세제개편을 통하여 국가재정토지대장(the fiscal cadastre)을 정비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함
    - 새로운 값과 LTP가 도입된 2013년 5월의 부동산가액을 포함하여 이전 면제되었던 것이 과세대상에 포함됨
    - 주거용 부동산가액은 4년마다 갱신될 것임
    - 재산세 유예 대상 소득의 한도를 높이고 유예된 납부세액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4%에서 3%로 낮춤
  - ▶ 캐나다는 기존주택 재고의 생산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비거주자가 소유한 빈집 또는 사용률이 낮은 주택에 대하여 보유세를 도입함
    - 2022년 1월부터 빈집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평가액의 1%를 보유세로 부과함
    - 모든 부동산 소유자<sup>46)</sup>는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아일랜드 등의 여러 국가는 거래세를 개정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특징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 아일랜드는 2021년 5월, 10% 인지세를 도입했고 납부대상자는 12월 동안 누적 10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제외)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표준 인지세율은 100만유로(118만 2,741달러)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1%,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2%임
  - ▶ 영국은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2단계 거래세 인하를 발표함
  - ▶ 독일은 거래세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지주회사나 파트너십의 지분 또는 이익의 양도와 같이 특정 지분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과세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거래세(RETT)법을 개정함
  - ▶ 네덜란드는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율을 8%에서 9%로 인상함
  - ▶ 몰타는 부동산 양도가액이 75만유로(88만 5,005달러)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세 면제를 발표했고 이러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도 면제됨
  - ▶ 이스라엘은 두 개 이상의 주거용 아파트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거래세율과 과표구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함

46)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같이 세제개편에서 제외된 소유자 제외

- ▣ 아르헨티나와 노르웨이는 고액자산가들의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부유세를 개정함
  - ▶ 아르헨티나는 부유세의 누진성을 강화하여 두 개의 상위 과세구간을 신설함
    - 1억페소(105만 2,734달러)에서 3억페소(315만 8,202달러) 사이의 순자산에 대한 밴드를 추가하여 1.50%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페소 이상의 순자산에 대해서 1.75%의 세금을 부과함
  - ▶ 노르웨이는 부유세율은 인상하고 지분·영업자산 및 관련 부채의 평가할인율을 확대함
  
- ▣ 네덜란드와 영국은 상속증여의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를 개정함
  - ▶ 네덜란드는 2023년부터 주택 구매, 유지보수에 대한 증여공제가 폐지되고 증여세 면제는 2024년 폐지되기 전 2023년 10만 6,671유로(12만 6,164달러)에서 2만 7,231유로(3만 2,207달러)로 인하됨
  - ▶ 영국은 상속세 면제한도가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 없이 2021/22의 수준으로 2026년까지 동결됨

〈표 1-III-2〉 국가별 재산세제 개편

구분	인상		인하	
	2021년 혹은 그 이후		2021년 혹은 그 이후	
	과세기반	세율	과세기반	세율
부동산보유세	캐나다, 아일랜드	-	-	-
거래세	아르헨티나, 독일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몰타	-
부유세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
상속증여세	영국, 네덜란드	-	-	-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2022, p. 112, Table 3.14.

- ▣ 암호자산 과세제도는 소득세와 더불어 재산세에서도 개혁이 이루어 짐
  - ▶ 아르헨티나는 세원에 암호자산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포함하기 위하여 은행 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국내에 위치한 중개인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0.6%의 세금이 부과함
  - ▶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도 암호화폐 거래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발표함

## IV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조세 정책

### 1 소개

- ▣ 에너지 가격은 2021년 초부터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있음
  - ▶ 여기에는 천연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에 대한 투자 부족과 같은 장기적 추세, 러시아의 천연가스 현물공급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같은 단기적 추세가 포함됨
- ▣ 에너지 소비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므로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에 대응함
  - ▶ 지원 조치는 소득 지원(가계 및 기업으로의 이전)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 지원 조치가 중심이 됨
    - 소득 지원은 가계와 기업에 이전이나 바우처를 통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방식은 이미 시행 중인 소득지원책을 더 넓은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기존 이전액을 늘릴 수도 있음
    - 가격 지원 조치는 가격 통제, 전기 소비세 및 네트워크 요금 인하, 부가가치세(VAT) 및 연료 소비세 감면, 환급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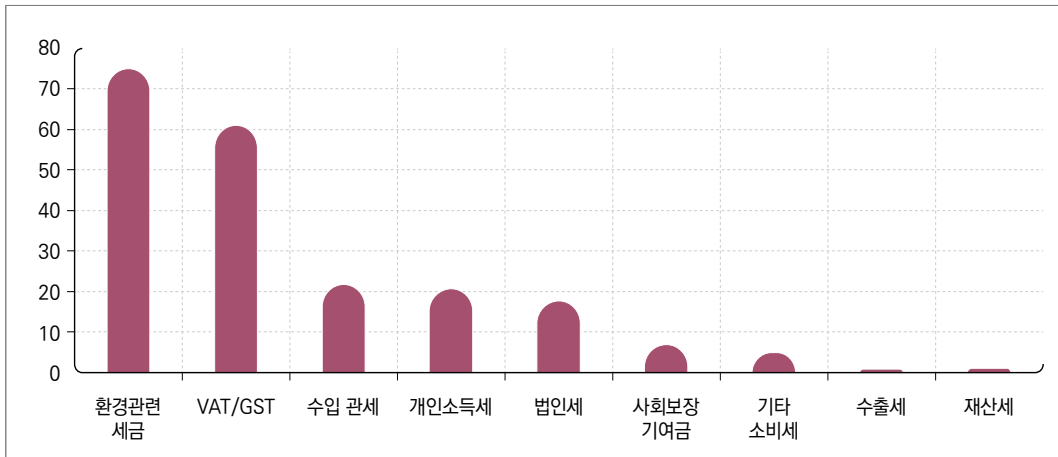
### 2 정부 지원책

- ▣ 각국의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다양한 세제 및 세외 조치로 대응하였는데,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대응 경향에서 차이를 보임
  - ▶ 고소득 국가에서 도입된 조치의 대부분은 보조금, 이전 또는 기타 규제 개입과 같은 세외 조치인 경향이 있는 반면, 세제상 조치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더 많이 시행되었음

- ▾ 국가들이 시행하는 세계 조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일시적인 간접세 감면이었으며, 세외 조치로는 보조금과 현금 이전이 있었음
  - ▶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의 대폭적인 인하인 환경 관련 세금의 경감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도입된 조치였고, 연료 제품에 대한 VAT/GST 세율의 인하와 수입 관세의 경감이 그 뒤를 이음
  - ▶ 보조금과 현금 이전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세외 조치로서 저소득 가구가 두 가지 조치 유형의 주요 대상이며, 일부 사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소수의 국가에서만 이루어짐

**[그림 1-IV-1]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도입 세제 조치(2021년 9월~2022년 5월)**

(단위: 정부에 의해 도입된 세금 조치의 수)



자료: Tax measures introduced in response to rising energy prices, September 2021 to May 2022, OECD(2022) *Tax Policy Reforms 2022*, p. 131, Figure 4.3.

- ▾ 세계 각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지원의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이었음
  - ▶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등 몇몇 국가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 ▶ 벨기에, 포르투갈, 영국은 태양 전지판, 태양열 온수기, 열펌프와 같은 에너지 절약 및 재생 에너지 제품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함
  - ▶ 이러한 42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와 주요 파트너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10월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행한 조치에 수반된 총 재정 비용은 총 2,460억달러에 달하며, 그중 1,690억달러가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었음

- ▾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횡재세를 시행함

  -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21년 10월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에너지 생산자에 대해 각각 1메가와트시당 91유로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횡재세의 부과를 발표함
  - ▶ 이탈리아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최소 500만유로의 수익 증가를 기록한 에너지 기업과 중개업체에 대해 2022년 3월에 10%의 횡재세를 부과했으며, 2022년 5월 초 세율을 25%로 인상함
  - ▶ 그리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전기 추가 수익에 대해 90%의 횡재세를 부과함
  - ▶ 영국은 2025년까지 석유·가스 기업의 초과 수익에 25%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발표함
  
- ▾ 정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 대처 정책으로 거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 가격통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부분의 지원은 기업보다는 가구에 집중되어 있음
  
- ▾ 조사 대상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물가와 소득 지원 정책을 결합했으나, 그 정책의 비율은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 간 차이를 보임

  - ▶ OECD 비회원국은 상대적으로 회원국에 비해 가격 지원 조치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음
    - 이는 비공식성이 높고 대체 에너지 자원이 덜 개발된 신흥 경제국에서 정교한 목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여 이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됨

### 3 정책 논평

-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 편의성, 효율성 및 장기적인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목표와 같은 다른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들이 가격 지원 조치에서 벗어나야 함

  - ▶ 가격 통제는 에너지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고정하거나 제한하는데, 이들은 비교적 구현이 간단하지만 지원의 대상을 표적화할 수 없음
    - 따라서 종종 소득이 높은 대규모 에너지 소비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격 신호를 약화시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음
  - ▶ 최종 사용자 에너지(전기, 천연가스 및 휘발유) 가격이 원가 회수 이하로 제한될 경우 에너지 공급망의 후방산업에서 더 큰 손실을 초래하여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공급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 소득 지원은 지원 조치에 대한 대상을 정밀화한다면 높은 가격이 지속되더라도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나, 수혜자를 식별하기 위해 정부 사회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국가는 이를 관리하거나 실제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독일의 사례와 같이 기존의 사회 및 재정 시스템 하에서 수혜자를 세부적으로 대상화하더라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예산 비용을 제한하면서 사회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미세 조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 에너지 위기의 극복과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가격 신호를 무디게 하고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개입은 단계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며, 가격 충격에 대한 가계 취약성 개선과 대체 에너지원 개발 역량을 구축해야 함

  - ▶ 진행 중인 에너지 위기는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예상되는 것과 유사한 사회적, 정치적 과제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인한 지속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은 화석 연료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방증함
  - ▶ 이러한 새로운 맥락에서 중기적으로 기후 정책과 에너지 안보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는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 I 북미

## 1 미국

### 가.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논의

[조세동향 22-07호]

-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2022년 7월 20일, ‘저가 주택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함<sup>47)</sup>
  - ▶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주택문제 관련 세금 인센티브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목적의 공청회임<sup>48)</sup>
    - 공청회에서 미국 민주당 상원위원인 Ron Wyden은 미국 전역에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주택구매 비용과 임대비용이 상승하였다고 말하며, 양질의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위해 2021년 9월 발의한 법안인 DASH(Decent, Affordable, Safe Housing for All) ACT<sup>49)</sup>의 중요성을 강조함
- ▣ Ron Wyden이 2021년 9월 23일 발의한 법안인 DASH(Decent, Affordable, Safe Housing for All)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 및 저렴한 주택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임<sup>50)</sup>

47) COMMITTEE ON FINANCE, “The Role of Tax Incentives in Affordable Housing,” <https://www.finance.senate.gov/hearings/the-role-of-tax-incentives-in-affordable-housing>, 검색일자: 2022. 7. 26.

48) IBFD, US Senate Finance Committee Discusses Affordable Housing Tax Incentives in Public Hearing,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1\\_us\\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1_us_2.html), 검색일자: 2022. 7. 26.

49) CONGRESS.GOV, “DASH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2820>, 검색일자: 2022. 7. 26.

50) COMMITTEE ON FINANCE, “Wyden Announces New Bill to End Homelessness and Ensure Affordable Housing for All,” <https://www.finance.senate.gov/chairmans-news/wyden-announces-new-bill-to-end-homelessness-and-ensure-affordable-housing-for-all#:~:text=Washington%2C%20D.C.,%20%E2%80%93%20Senate%20Finance%20Committee,and%20expand%20homeownership%20opportunities%20for>, 검색일자: 2022. 7. 26.

- ▶ 주택 공급 기준과 세법 개정을 통한 주택 생산의 확장을 내용으로 함
- ▶ 5년 이상의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선택 바우처를 발급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LIHTC)를 강화하였음
  - LIHTC는 민간 부문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다가구 주택 개발에 참여를 위한 비과세 채권 자금 조달 임계값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추었음
- ▶ 중위소득 주택 세액공제(MIHTC)를 제시함
  - 해당 지역 중위소득의 60%에서 100%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세입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공제를 제안함
- ▶ 첫 주택 구매의 경우 계약금의 세액공제를 제안함
- ▶ 법에서 인정되는 주택의 최대 구매가격(7만 5,000달러)<sup>51)</sup>의 20%에 해당하는(1만 5,000달러)<sup>52)</sup>를 한도로 계약금에 대해 세액공제함

## 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서명

[조세동향 22-08호]

-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서명함<sup>53)</sup>
  -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Chuck Schumer와 상원의원인 Joe Manchin이 에너지·기후변화 및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입장을 타결하면서 만든 예산 화해 법안임

51) 2022년 8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47만원임.

52) 2022년 8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69만원임.

53)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Signing of H.R. 5376,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8/16/remarks-by-president-biden-at-signing-of-h-r-5376-the-inflation-reduction-act-of-2022>, 검색일자: 2022. 8. 18.

- ▾ 해당 법안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sup>54)</sup>
  - ▶ 7,390억달러<sup>55)</sup>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함
    -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2022년 이후 내국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과세
    -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연간 매출이 10억달러<sup>56)</sup> 이상인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함으로써 3,130억달러<sup>57)</sup>의 예산을 확보
    - 2026년부터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sup>58)</sup>의 메디케어 협상을 통해 처방약 가격을 개혁함으로써 2,880억달러<sup>59)</sup>의 예산을 확보
    - 미국 국세청(IRS)의 세금 집행을 통해 1,240억달러<sup>60)</sup>의 예산을 확보
    - 이월 이자의 허점을 제거하여 140억달러<sup>61)</sup>의 예산을 확보
  - ▶ 확보된 예산 중 재정적자를 감축하는데 지출하는 3,000억달러<sup>62)</sup>를 제외하고 가용한 지출범위인 4,330억달러<sup>63)</sup>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을 제안함
    - 2021년 ‘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확대된 ‘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을 확대하는데 640억달러<sup>64)</sup> 지출
    -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책에 3,690억달러<sup>65)</sup> 지출
    - 태양광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장기 연장하여 설치된 장비 비용의 30%를 10년간 공제하고 2033년에는 26% 그리고 2034년에는 22%로 축소하여 적용

54) Senate Democrats, “Inflation Reduction Act One Page Summary,” <https://www.democrats.senate.gov/inflation-reduction-act-one-page-summary>, 검색일자: 2022. 8. 18.

55)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9조 8,905억원임

56)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395억원임

57)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9조 2,635억원임

58) CMS는 65세 이상 인구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임

59)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5조 7,760억원임

60)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6조 980억원임

61)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조 7,530억원임

62)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1조 8,500억원임

63)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0조 35억원임

64)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조 7,280억원임

65)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4조 2,755억원임

- ▶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책과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sup>66)</sup>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2030년까지 자국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확대할 계획
  -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
  -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업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 혜택 설명

[조세동향 22-09호]

- ▣ 백악관은 2022년 9월 12일, 최근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용될 세제 혜택에 대해 설명함<sup>67)</sup>
  - ▶ 세금공제를 통해 소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
    - 소기업의 운영비용을 낮추고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기업이 저비용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30%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제공
    - 트럭 및 밴과 같은 대형 차량을 사용하는 소기업이 청정 상업용 차량(예: 전기자동차)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30%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제공
  -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림
    - 2023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기존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인상하여 영향력 있는 R&D가 가능하도록 지원
  - ▶ 전 세계 국가들이 청정에너지 경제를 주도하고자 경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태양열, 풍력, 탄소 포집, 청정 수소 등에 대한 공급기회를 미국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
    - 배터리, 태양열,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 제조에 미국 자국 기술력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산업 군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66) 2022년 8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04조 6,250억원임

67) THE WHITE HOUSE, "FACT SHEET: How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ill Help Small Business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9/12/fact-sheet-how-the-inflation-reduction-act-will-help-small-businesses>, 검색일자: 2022. 9. 26.

- ▶ 미국 재무부 장관은 IRS에 연간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는 감사율(audit rates)을 확대하지 말 것을 지시함<sup>68)</sup>
  - 초부유층과 대기업이 미납한 세금의 징수를 촉구함
  -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피하고 있는 연간 이익이 10억달러 이상인 대규모 기업을 위주로 감사할 것을 지시함
  - 대기업 위주의 세금 징수를 통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은 억제할 계획

**라. 국세청, 2023년도 인플레이션 조정안 발표**

[조세동향 22-10호]

- ▾ 미국 국세청(IRS)은 2022년 10월 18일, 2023년 세금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Revenue Procedure 2022-38을 공개함<sup>69)70)71)</sup>
  - ▶ 이번에 공개한 인플레이션 조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2023년 조정되는 과세소득 구간은 <표 2- I -1>과 같음

**<표 2- I -1> 2023년 과세소득구간**

(단위: 달러, %)

구분	2022년 기준 과세소득 구간	2023년 조정되는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공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개인	20,550 미만	22,000 미만	10
	20,551~83,550	22,001~89,450	12
	83,551~178,150	89,451~190,750	22
	178,151~340,100	190,751~364,200	24
	340,101~431,900	364,201~462,500	32
	431,901~647,850	462,501~693,750	35
	647,850 초과	693,750 초과	37

6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ELEASES,"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918>, 검색일자: 2022. 9. 26.

69)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3,"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3>, 검색일자: 2022. 10. 20.

70) IRS, "Revenue Procedure 2022-38," <https://www.irs.gov/pub/irs-drop/rp-22-38.pdf>, 검색일자: 2022. 10. 20.

71)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2>, 검색일자: 2022. 11. 8.

〈표 2-1-1〉 의 계속

(단위: 달러, %)

구분	2022년 기준 과세소득 구간	2023년 조정되는 과세소득 구간	세율
미혼 개인	10,275 미만	11,000 미만	10
	10,276~41,775	11,001~44,725	12
	41,776~89,075	44,726~95,375	22
	89,076~170,050	95,376~182,100	24
	170,051~215,950	182,101~231,250	32
	215,951~539,900	231,251~578,125	35
	539,900 초과	578,125 초과	37
부동산 및 신탁	2,750 미만	2,900 미만	10
	2,751~9,850	2,901~10,550	24
	9,851~13,450	10,551~14,450	35
	13,450 초과	14,450 초과	37

자료: IBFD,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3 - Part I,"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9\\_us\\_4.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9_us_4.html), 검색일자 2022. 10. 20.

▾ 2023년 조정되는 대체 최저세(AMT) 면제금액을 공시함

- ▶ 저소득 및 중간소득 납세자에게 AMT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면제금액 구간을 공시함
  - 면제금액을 초과하였으나 지정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26% 세율로 AMT를 부과하고, 지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8% 세율로 AMT를 부과함

〈표 2-1-2〉 2023년 AMT 면제금액

(단위: 달러)

구분	AMT 면제 금액		28% 세율의 AMT가 적용되는 기준금액	
	2022년 면제금액	2023년 조정되는 면제금액	2022년 과세초과금액	2023년 조정되는 과세초과금액
공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개인	118,100	126,500	206,100	220,700
미혼 개인	75,900	81,300	206,100	220,700
부동산 및 신탁	26,500	28,400	206,100	220,700

자료: IBFD,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3 - Part I,"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9\\_us\\_4.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9_us_4.html), 검색일자 2022. 10. 20.

- ▶ 아동세(kiddie tax) 대상 아동에 대한 2023년 AMT 면제금액은 i) 아동의 근로소득에, 2022년보다 600달러<sup>72)</sup> 늘어난 8,800달러<sup>73)</sup>를 더한 금액 또는 ii) 독신 납세자의 일반 AMT 면제금액 중 적은 금액임
- ▾ 2023년 아동세(kiddie tax)가 적용되는 불로소득 기준액이 공시됨
  - ▶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이자, 배당금 및 기타 불로소득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동세 부과 대상임
    - 2023년 아동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1,250달러 또는 자녀의 불로소득에 적용되는 항목별 공제액 중 큰 금액임
  - ▶ 자녀에게 불로소득 외 근로소득이 없고, 자녀의 불로소득이 1만 2,500달러 미만인 경우 부모는 부모의 납세신고서에 자녀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마. 재무부,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 발표**

[조세동향 22-11호]

- ▾ 미국, 재무부 조세정책실과 국세청은 2022년 11월 4일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을 발표함<sup>74)</sup>
  - ▶ 세법 규정의 모호한 영역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정 지침을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임
  -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무부와 IRS가 발표할 행정 지침 및 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됨
    - 통합 환급, 소비세, 면제 조직, 일반 세금문제, 증여, 재산 및 신탁을 포함하여 미국 과세의 주요 영역별로 설명하고 있음

72) 2022년 11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3만원임

73) 2022년 11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19만원임

74) IRS, "Current Year Priority Guidance Plan," <https://www.irs.gov/privacy-disclosure/priority-guidance-plan>, 검색일자: 2022. 11. 22.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발표될 행정 지침은 다음과 같음

〈표 2-1-3〉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상의 지침 내용

공지일시	지침 내용
2023년 1월	역년 동안 처음 사용된 차량 소유자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 제한에 관한 지침 및 역년 중 처음 리스 한 차량 임차인의 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 산정에 관한 지침
2023년 2월	2022년도 지출 주거비용 산정을 위한 지침
2023년 3월	과 납부된 세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지침
2023년 4월	역년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 및 재생가능 전력 생산 공제를 위한 기준가격 발표
2023년 5월	석유 환급 공제 청구 결정에 사용되는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 발표
2023년 6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세금 초과 납부 및 과소 납부에 적용될 이자율에 대한 발표

자료: IRS 발표 'Priority Guidance Plan' 내용을 저자 정리

바. 의회예산국, 대규모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금 인상 논의

[조세동향 22-12호]

- ▣ 의회예산국(CBO)은 2022년 12월 7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관하여 논의함<sup>75)76)</sup>
  - ▶ CBO는 최근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연방 예산 적자를 GDP 평균의 5.1%(또는 1.6조달러)로 추정함<sup>77)</sup>
    - 지난 50년간 미국의 연간 평균 적자는 GDP의 3.5%로 보고됨
- ▣ CBO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3,000억달러 이상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옵션들을 제시함

75) IBFD,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iscusses Tax Hikes as Option for Reducing Large Budget Deficit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09\\_us\\_9.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09_us_9.html), 검색일자: 2022. 12. 14.

76) IBFD,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iscusses Tax Hikes as Option for Reducing Large Budget Deficit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09\\_us\\_10.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09_us_10.html), 검색일자: 2022. 12. 14.

77) CBO,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3 to 2032," <https://www.cbo.gov/system/files/2022-12/58164-budget-options-large-effects.pdf>, 검색일자: 2022. 12. 14.

- ▶ 사회보장급여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es)가 적용되는 최대과세소득(maximum taxable amount)의 인상을 제시함
  - 현행법에 따른 최대과세금액 미만의 소득 외에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도 12.4%의 사회보장급여세 적용을 제시함
  - 예를 들어, 2023년에는 14만 7천달러 미만의 모든 소득(최대과세소득)이 과세되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도 과세하여 14만 7천달러에서 25만달러 사이의 소득만 과세되지 않음
  - 2022년 기준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최대과세소득은 14만 7천달러<sup>78)</sup>이고 사회보장급여세는 12.4%임
- ▶ 개인소득세의 인상을 제시함
  - 일반 소득에 대한 모든 법정 세율을 1%p 인상할 것을 제시함
  - 소득에 대한 상위 4개의 과세구간(ordinary income in the four highest brackets)의 법정 세율을 2%p 인상할 것을 제시함
  - 표준 공제액과 인적 공제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조정 총소득(AGI)의 1%p 추가 세금 부과를 제시함
- ▶ 장기자본이득 및 적격 배당금에 대한 세율의 2%p 인상을 제시함
- ▶ 자선기부 옵션(charitable giving option)에 대한 공제제한을 제시함
- ▶ 재향군인회((Department of Veteran Affairs)의 장애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함
- ▶ 법인세율의 1%p 인상을 제시함
- ▶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함
  - 현재 미국은 저소득 임대주택의 개발에 대한 자금투자의 대가로 투자자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간접적 정부보조 정책인 LIHTC(Low-Income Housing Tax Credit)를 운영하고 있음

78) IRS, "Topic No. 751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Withholding Rates," <https://www.irs.gov/taxtopics/tc751>, 검색일자: 2023. 1. 4.

## 2 캐나다

### 가. 사치세 도입

[조세동향 22-07호]

- ▾ 2022년 4월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2022년 6월 23일 왕실의 승인을 얻어 캐나다는 10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새 고급자동차 및 항공기 판매와 25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새 보트 또는 요트 판매에 대해 사치세를 부과함<sup>79)</sup>
  - ▶ 도입되는 사치세는 2022년 9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개별 소비세 외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임<sup>80)</sup>
  - ▶ 법이 시행되면 소매가 기준 10만캐나다달러<sup>81)</sup>를 초과하는 새 고급자동차 및 항공기와 25만캐나다달러<sup>82)</sup>를 초과하는 새 보트에 부과되는 사치세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됨
    - 임계값을 초과하는 가치의 20%
    - 고급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전체 가치의 10%

〈표 2-1-4〉 고급자동차에 부과되는 사치세 계산 예시

(단위: 캐나다달러<sup>1)</sup>)

구매한 차	가격
소매점에서의 가격	90,000
포함된 에어컨 소비세(\$100)	100
자동 운전 시스템 옵션	8,000
업그레이드된 오디오 시스템	4,000
딜러가 설치한 휠 업그레이드	2,000

79) IBFD, "Canada 2022 Budget Introduces Luxury Tax, Other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29\\_ca\\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29_ca_2.html), 검색일자: 2022. 7. 26.

80) IBFD, "Finance Minister Recommends Implementing Luxury Tax on Aircraft on 1 September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2\\_ca\\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2_ca_1.html), 검색일자: 2022. 7. 26.

81)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186만원임

82)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5,374만원임

〈표 2-1-4〉 의 계속

(단위: 캐나다달러<sup>83)</sup>)

구매한 차	가격
화물/배송 전 검사	2,000
<b>사치품 목적의 총 가격</b>	<b>106,000</b>
(a) 사치세: 총 가치의 10%	10,600
(b) 사치세: \$100,000(임계값) 초과 가치의 20%	1,200
확정 사치세: Min[(a), (b)]	1,200
<b>소계</b>	<b>107,200</b>
GST	5,360
<b>총</b>	<b>112,560</b>

주: 1) 2022년 8월 17일 기준 1캐나다달러는 약 1,021원임  
 자료: canada.ca, "Consultation on the Select Luxury Goods Tax,"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programs/consultations/2021/consultation-proposed-luxury-tax/select-luxury-goods-tax.html>, 검색일자: 2022. 8. 9.

**나.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 2배 제안**

[조세동향 22-09호]

- ▾ 캐나다 총리는 2022년 9월 13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캐나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sup>83)</sup>
  - ▶ 발표를 통해 예정된 세 가지 조치를 제안함
    - 6개월 동안 상품 및 서비스 세금공제(GSTC) 한도를 두 배로 확대
    - 일회성 캐나다 주택혜택(Canada Housing Benefit) 시행
    - 치과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적격아동을 위한 치과 치료 혜택
- ▾ GSTC를 두 배로 늘릴 경우 세금공제를 받는 약 1,100만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짐
  - ▶ 자녀가 있는 캐나다 가정의 약 절반가량과 캐나다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포함됨

83) Government of Canada, "Making life more affordable for Canadians this year," <https://pm.gc.ca/en/news/news-releases/2022/09/13/making-life-more-affordable-canadians-year>, 검색일자: 2022. 9. 26.

- 자녀가 없는 독신 캐나다인은 234캐나다달러를 지원받고, 두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최대 467캐나다달러를 지원
- 고령자에게 255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지원

▶ 그 외 캐나다 정부는 주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세입자들을 위한 일회성의 주택혜택을 제공하고 더불어 초과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12세 미만 국민에게 향후 2년간 캐나다 치과혜택(Canada Dental Benefit)을 제공할 계획임

#### 다. 국세청,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지침을 공시

[조세동향 22-10호]

- ▶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2년 10월 14일,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지침을 공시함<sup>84)</sup>
- ▶ 이번 지침을 통해 SR&ED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 동안 실제 용도로 사용된 투자에 관해서만 세금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함
  - ▶ SR&ED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수행자가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를 받았으나 이후 장비를 미사용·폐기하거나 또는 SR&ED를 위해 임차한 사무실을 판매·상업적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SR&ED를 이유로 청구인이 적용받은 ITC를 회수할 방침임
  - ▶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자본 성격의 지출은 SR&ED 세금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에 관하여 설명함
  - ▶ 급여 또는 간접비와 관련한 지출에 관하여 받은 ITC는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기업이 SR&ED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개발비용으로 인건비, 재료비, 간접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재료를 처분하거나 상업용도로 전환한 경우 재료비에만 환수규정이 적용됨을 설명함

84) CRA, "Recapture of SR&ED Investment Tax Credit Policy,"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recapture-investment-tax-credit-policy.html#s6\\_0](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recapture-investment-tax-credit-policy.html#s6_0), 검색일자: 2022. 10. 20.

- ▶ ITC 적용을 받은 자산을 폐품으로 판매한 경우 판매수익이 자산 총비용의 10% 미만인 경우 환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ITC 적용을 받은 자산을 상업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비적격 당사자에게 처분할 당시 공정시장 가치가 자산 총비용의 10% 미만인 경우 환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특정자산이 SR&ED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자본자산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상황에서 비정규 구매자(non-arm's length purchaser)에게 처분하는 경우, 환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캐나다 국세청(CRA)은 “non-arm's length”에 관하여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연결된 개인 간의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비정규적 관계는 개인과 파트너십 또는 기업 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sup>85)</sup>
  - 자본자산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비정규 관계의 새로운 기업에 대한 SR&ED 자본자산의 처분을 허용함
- ▣ 투자세액공제(ITC)로 적격 SR&ED 지출에 대해 최소 15%, 최대 35%의 공제율이 적용됨
  - ▶ 기업(특정 CCPC 제외), 개인사업체, 파트너십의 파트너, 신탁의 수혜자는 15%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됨
    - 캐나다가 통제하는 민간기업(CCPC)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적격 SR&ED 지출에 대해 300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35%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됨

**라. 재무장관, 경제 활성화 조치 발표**

[조세동향 22-11호]

- ▣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Chrystia Freeland는 2022년 11월 3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가 제안한 조치를 요약한 2022년 가을 경제성명을 발표함<sup>86)87)88)89)</sup>

85) CRA, “Definition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definitions-letter-a-b-usiness.html#Nn\\_rms\\_lngth\\_trnsctn](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definitions-letter-a-b-usiness.html#Nn_rms_lngth_trnsctn), 검색일자: 2022. 11. 8.

86)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releases 2022 Fall Economic Statemen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2/11/government-of-canada-releases-2022-fall-economic-statement-making-life-more-affordable-and-building-an-economy-that-works-for-everyone.html>, 검색일자: 2022. 11. 29.

87) Government of Canada, “Making Life More Affordable,”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2/11/making-life-more-affordable.html>, 검색일자: 2022. 11. 29.

88) Government of Canada, “Jobs, Growth, and an Economy That Works for Everyone,” <https://www.canada.ca>,

- ▶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캐나다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조치는 새로운 자사주 매입세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안이 포함됨
- ▾ 2022년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두 배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 공제가 적용됨
  - ▶ 현재 GST 크레딧 수령 대상인 약 1,100명의 저소득·중산층은 자동으로 추가 지급금을 받게 됨
    - 자녀가 없는 독신 캐나다인은 추가로 최대 234캐나다달러<sup>90)</sup>, 두 자녀 이상의 캐나다 부부는 최대 467캐나다달러<sup>91)</sup>를 수령하게 됨
- ▾ 2023년 7월부터 전년도 캐나다 근로자혜택(CWB)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CWB 선급금을 자동 지급할 계획임
  - ▶ CWB는 캐나다 최저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과세연도 말에 지급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CWB대상자들은 생활필수품 구매 등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과세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음
- ▾ 2024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공기업의 모든 종류의 자사주 매입 순가치에 대해 기업 수준(corporate-level)의 2% 세금 부과를 시행할 계획임
  - ▶ 세금이 제정되면 5년간 연방 세입이 약 21억캐나다달러<sup>92)</sup>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금부과를 위한 세부사항은 공개 예정임
- ▾ 2023년부터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자본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시행할 예정임
  - ▶ 정부가 예시하는 특정 청정기술 분야에 사용된 적격 장비자본 비용의 30%에 대해 세액공제할 계획임

ca/en/department-finance/news/2022/11/jobs-growth-and-an-economy-that-works-for-everyone.html, 검색일자: 2022. 11. 29.

89) IBFD, "Canada Proposes Stock Buyback Tax, Other Tax Measures in 2022 Fall Economic Statement,"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04\\_ca\\_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04_ca_3.html), 검색일자: 2022. 11. 29.

90)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만원임

91)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만원임

92)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745억원임

- 태양광 발전, 소형 모듈형 원자로, 집중형 태양광, 풍력 및 수력을 포함한 발전 시스템
  - 배터리, 자기에너지 저장장치, 압축 공기에너지 저장장치, 수력 저장장치, 중력에너지 저장장치 등 운영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식 전기 저장 시스템
  - 산업용 무공해 차량 및 관련 충전 또는 연료 보급 장비
  - 활성 태양열 난방, 저탄소 열 장비
- ▶ 세액공제를 통해 받은 환급금의 사용은 2023년 예산 집행일부터 가능하며, 제도는 2032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임
- ▾ 주택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제안함
- ▶ 2022년부터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함
    - 해당 조치는 주택과 관련한 자재 비용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제안임
  - ▶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 구성원을 위한 보조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연간 최대 7만 5천캐나다달러<sup>93)</sup>를 지급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주택에 대한 외국인 구매를 2년간 제한할 계획임

93)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08만원임

## II 유럽

### 1 영국

#### 가. 트러스 영국 정부, '감세'에 초점 맞춘 새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7호]

- ▶ 영국 재무부장관 퀴지 콰텡(Kwasi Kwarteng)은 2022년 9월 23일, 하원에서 '2022년 미니 예산안(mini budget)'을 발표하였음<sup>94)</sup>
  - ▶ 금번 미니 예산안은 '2022년 성장 계획(The Growth Plan 2022)'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음
  - ▶ 소득세 기본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 각종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음
    - 퀴지 콰텡 재무장관은 '높은 세율이 근로 의욕과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영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새 시대를 맞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 ▶ 영국 정부는 이러한 감세 정책으로 2027년까지 약 450억파운드<sup>95)</sup>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94) GOV.UK, "The Growth Plan 2022 Speech," 2022. 9. 23.,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the-growth-plan-2022-speech>, 검색일자: 2022. 9. 26.; IBFD, "United Kingdom - Tax Cuts Headline 2022 'Mini Budget'," 2022. 9.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3\\_uk\\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3_uk_2.html), 검색일자: 2022. 9. 26.

95)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조 772억 5,000만원임

- ▾ (소득세) 2023년 4월부터 기본세율을 19%로 1%p 인하하기로 함<sup>96)</sup>

  - ▶ 또한 15만파운드<sup>97)</sup>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내년 4월부터 현행 45%에서 40%로 내리기로 함
  
- ▾ (인지세) 주택가격 12만 5천파운드<sup>98)</sup> 이상에서 25만파운드<sup>99)</sup> 이상으로 납부 기준이 2배 올라가게 됨

  - ▶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인지세 납부 기준이 주택가격 30만파운드<sup>100)</sup> 이상에서 42만 4천파운드<sup>101)</sup> 이상으로 올라 인지세 부담이 현재보다 완화될 예정임
  
- ▾ (법인세) 법인세율 인상 계획은 폐지되었음

  - ▶ 애초 영국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올리려고 했지만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였음
  
- ▾ 다만, 금번 예산안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예산안 발표 다음날부터 발생한 금융 대란<sup>102)</sup>으로 인해 향후 계획의 이행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sup>103)</sup>

96) GOV.UK, “Chancellor announces new Growth Plan with biggest package of tax cuts in generations,” 2022. 9. 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new-growth-plan-with-biggest-package-of-tax-cuts-in-generations>, 검색일자: 2022. 9. 26.

97)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3,039만원임

98)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199만원임

99)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8,376만원임

100)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6,052만원임

101)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5,086만원임

102) 2022년 9월 26일 영국 파운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약 5% 하락하며 한 때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까지 추락하였으며,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영국 국채 투매 현상이 벌어지며 국채금리가 급등하였음

103) Bloomberg Tax, “UK’s Biggest Tax Cuts Since 1972 Prompt Crash for Pound, Bonds,” 2022. 9. 2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9L0SB2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ZgvcmlvZD109aRmellQMfH1dHxDq9FXyK7pubpqLQRyki7CgbFWxx\\_N6bfBJoPgDONRFJ8N2YRTf58CbAfMWy29QC1Dvs-Y8x9eUtIQ\\_Yeb6dBApHEdENNQRqWTHMcZzX\\_3mScCb3BMZUFy\\_8YYDKfwW3qnhvBUblY\\_g7PSe3SHQXh50\\_mJ84MfIK6qBCzJqE1V6to9oprKgeGJN0QhzhlicY9QOUFNb-fUU7rTtA0urxP33bZIC2Z1eLiu5-Br8NCm2FpMXXIsUHNuvqwGJVfHr7IHTfi\\_NU6vGPaR3pFLQZYx9DNUInzNGnAYdms5pfbWxKlZSJlrYOVkeQT4LHyfTgJpzuU%3D](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9L0SB2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ZgvcmlvZD109aRmellQMfH1dHxDq9FXyK7pubpqLQRyki7CgbFWxx_N6bfBJoPgDONRFJ8N2YRTf58CbAfMWy29QC1Dvs-Y8x9eUtIQ_Yeb6dBApHEdENNQRqWTHMcZzX_3mScCb3BMZUFy_8YYDKfwW3qnhvBUblY_g7PSe3SHQXh50_mJ84MfIK6qBCzJqE1V6to9oprKgeGJN0QhzhlicY9QOUFNb-fUU7rTtA0urxP33bZIC2Z1eLiu5-Br8NCm2FpMXXIsUHNuvqwGJVfHr7IHTfi_NU6vGPaR3pFLQZYx9DNUInzNGnAYdms5pfbWxKlZSJlrYOVkeQT4LHyfTgJpzuU%3D), 검색일자: 2022. 10. 4.

- ▶ 영국 정부는 2022년 10월 3일,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를 40%로 인하하고자 하는 계획을 철회하였음<sup>104)</sup>

## 나. 2022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 발표

[조세동향 22-11호]

- ▣ 영국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Jeremy Hunt)는 2022년 11월 17일, 2022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을 발표하였음<sup>105)106)</sup>
  - ▶ 금번 예산안은 공공지출 삭감과 세수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물가상승 대응과 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 예산안은 300억파운드<sup>107)</sup> 규모의 지출 삭감 방안과 250억파운드<sup>108)</sup> 규모의 증세 방안을 담음
  - ▶ 지난 9월,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50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안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영국의 국가 경제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임
- ▣ 증세안으로는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 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함<sup>109)</sup>
  - ▶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 세율을 인상하여, 2023년부터 전기 및 가스 업체에 적용되는 세율은 25%에서 35%로 상향조정될 예정임<sup>110)</sup>

104) IBFD, "United Kingdom Scraps Plan to Cut Top Income Tax Rate," 2022. 10.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03\\_u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03_uk_1.html), 검색일자: 2022. 10. 7.

105) GOV.UK., *The Autumn Statement 2022 speech*, 2022. 11. 17.,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the-autumn-statement-2022-speech>, 검색일자: 2022. 11. 21.

106) IBFD, "United Kingdom - Adoption of OECD Pillar 2, Reduction of Additional Rate Threshold Headline Chancellor's Autumn Statement," 2022. 11.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7\\_u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7_uk_1.html), 검색일자: 2022. 11. 21.

107)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7조원임

108)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7조원임

109)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Officially Publishes Text of Autumn Finance Bill," 2022. 11.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24\\_u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24_uk_1.html), 검색일자: 2022. 11. 25.

110)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to Extend Windfall Tax Until 2028, Raise Rate to 35%," 2022. 1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8\\_uk\\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8_uk_2.html), 검색일자: 2022. 11. 21.

- 횡재세는 기존의 2025년 12월이 아닌 2028년 3월까지 연장되어 적용될 예정임
- 이에 따른 횡재세 세수는 2023년에 140억파운드<sup>111)</sup>로 예상됨
- ▶ 또한, 2023년 4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의 적용 대상을 연소득 15만파운드<sup>112)</sup> 이상에서 연소득 12만 5,140파운드<sup>113)</sup>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함
- 개인소득세 기본세율(20%)이 적용되는 과세구간 3만 7,700파운드<sup>114)</sup>는 2028년 4월까지 동결하기로 함
- ▶ 자본이득세의 연간 면제금액을 2023년 4월 6일부터 1만 2,300파운드<sup>115)</sup>에서 6천파운드<sup>116)</sup>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함
- 2024년 4월 6일부터는 추가 하향하여 3천파운드<sup>117)</sup>로 조정될 예정임
- ▣ 영국 재무부는 또한 금번 예산안에서 OECD 필라2가 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힘<sup>118)</sup>
- ▶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그룹이 해외 사업에 대해 15% 미만의 유효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할 것이며, 보충적으로 적격 국내 최저한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을 도입하여 대기업들이 영국에서 15% 미만의 유효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 구체적인 입법안은 2023년 춘계예산안(Spring Finance Bill 2023)에 포함될 것이라고 함

111)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조 2,712억원임

112)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3,862만원임

113)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907만원임

114)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01만원임

115)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56만원임

116)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5만원임

117)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7만원임

118) IBFD, "United Kingdom; OECD - United Kingdom to Implement OECD Pillar 2 Proposal," 2022. 1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8\\_u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8_uk_1.html), 검색일자: 2022. 11. 21.

## 2 독일

### 가. DAC7 시행 및 「조세통칙법」개정 법안 발표

[조세동향 22-07호]

- ▣ 독일 재무부는 2022년 7월 12일 EU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 시행과 「조세통칙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법안을 발표함<sup>119)</sup>, <sup>120)</sup>

  - ▶ 동 법안은 EU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sup>121)</sup>에 대한 이행을 위해 독일 내 법제화를 위한 것이며, 이 외 「조세통칙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함
  - ▶ DAC7은 기존 정보 교환 및 협력 범위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며, 독일의 법안 역시 DAC7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 EU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등록 판매자(Anbieter)의 소득 정보 등을 수집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관련 정보를 EU회원국의 과세당국과 서로 공유할 의무가 있음

  - ▶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Anbieter)에게 원천징수 하거나 부과한 수수료와 관련된 소득으로,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가 얻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부동산 및 운송수단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보고대상임
  - ▶ 플랫폼 사업자의 첫 번째 데이터 보고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 ▣ EU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있는 EU회원국에 플랫폼을 등록해야 하고 판매자의 소득정보 등을 보고해야 함

119) 독일 재무부,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21/514 des Rates vom 22. März 2021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11/16/EU über die Zusammenarbeit der Verwaltungsbehörden im Bereich der Besteuerung und zur Modernisierung des Steuerverfahrensrechts,"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2-07-12-Gesetz-zur-Umsetzung-der-Richtlinie-EU-2021-514/0-Gesetz.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0_Legislaturperiode/2022-07-12-Gesetz-zur-Umsetzung-der-Richtlinie-EU-2021-514/0-Gesetz.html), 검색일자: 2022. 7. 22.

120)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Bill on Implementation of DAC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15\\_d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15_de_1.html), 검색일자: 2022. 7. 22.

121) DAC7은 EU 조세행정협력지침(EU Directive 2011/16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in the EU(DAC))의 7번째 수정안을 뜻하는 것임

- ▾ 「조세통칙법(Abgabenordnung)」 개정으로는, 세무조사 시 부과제척기한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2025년부터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미준수 시 하루 최대 100유로(최대 100일)<sup>122)</sup>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sup>123)</sup>

#### 나. 독일 - 가스 사용 부담금 부과 및 가스 부가가치세율 인하

- ▾ 독일 가스공급합작회사인 트레이딩허브유럽(Trading Hub Europe GmbH)은 2022년 8월 15일 급격히 치솟는 수입 가스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가스사용부담금(gas levy)을 부과하기로 발표함<sup>124)</sup>, <sup>125)</sup>
  -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소비자는 천연가스 사용량 1킬로와트시 당 2,419센트<sup>126)</sup>추가로 지불해야 함
  - ▶ 가스 사용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 독일 재무부는 국민의 가스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스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19%에서 7%로 인하하기로 함<sup>127)</sup>
  - ▶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됨

122) 2022년 8월 1일 유로 원 환율(1유로=1,339.32원) 기준 약 13만 4천원이며, 최대 벌금은 약 1,340만원임

123) Deloitte, “MOF publishes DAC 7 draft implementation bill,” <https://www.taxathand.com/article/25661/Germany/2022/MOF-publishes-DAC-7-draft-implementation-bill>, 검색일자: 2022. 7. 22.

124) TRADING HUB EUROPE, “Pressemitteilung Gasbeschaffungsumlage ab Oktober 2022,” <https://www.tradinghub.eu/de-de/Unternehmen/Newsroom/News/Details/ArtMID/1404/ArticleID/100/Pressemitteilung>, 검색일자: 2022. 8. 25.

125) IBFD, “Germany Introduces Temporary Gas Levy on Household Consum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16\\_d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16_de_1.html), 검색일자: 2022. 8. 17.

126) 2022년 8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원임

127) 독일재무부, “Mehrwertsteuer auf Gas wird gesenkt,” <https://www.bundeskanzler.de/bk-de/gasumlage-mehrwertsteuer-2075248>, 검색일자: 2022. 8. 25.

**다. 고물가 대응 제3차 납세자 구호 패키지 발표**

[조세동향 22-09호]

- ▾ 2022년 9월 4일 독일 집권 연정당은 급격한 에너지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3차 고물가 대응 구호패키지를 승인함<sup>128)</sup>

  - ▶ 제3차 구호패키지의 예산규모는 약 650억유로임<sup>129)</sup>
- ▾ 해당 조치에는 연금수급자 및 학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실업수당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감면된 부가세율을 포함함

  - ▶ 조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함
    - 음식점의 식품 공급에 대한 감면된 부가세율 7% 적용 연장
    - CO2 부과금 인상을 2024년 1월 1일로 연기
    - 2024년 3월 31일까지 천연가스 소비에 대한 감면된 부가세율 7% 적용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inflation-driven cold progression)
  - ▶ 조세정책 외의 조치로는 전기요금의 경감, 연금수급자의 경우 300유로<sup>130)</sup>, 학생의 경우 200유로<sup>131)</sup>의 일회성 일시금 지급, 첫째·둘째 자녀의 월별 아동수당 18유로<sup>132)</sup> 인상, 실업수당 인상 등을 포함함
- ▾ 부가세율 및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임

128) 독일정부, "Germany stands united at this challenging tim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third-relief-package-2123130>, 검색일자: 2022.9.26.; IBFD, EUR 65 Billion Third Relief Package Brings Greater Help to Taxpay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05\\_d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05_de_1.html), 검색일자: 2022. 9. 26.

129)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0조 347억원임

130)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만 1581원임

131)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만 1054원임

132)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 5289원임

**라. 일회용 플라스틱 부담금 부과 법안 승인**

[조세동향 22-11호]

- ▾ 독일 정부는 2022년 11월 2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함<sup>133)134)</sup>

  - ▶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2019. 9. 4)을 이행하는 안으로 부과율과 부과기준은 하위 영에서 규정될 예정이고 향후 하원과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입법과정이 진행될 예정임
  - ▶ 해당 부담금은 기타간접세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플라스틱 등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제조업체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함<sup>135)</sup>
- ▾ 이 법안으로 2025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오염원인자 부과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기준 해의 전년에 유통시킨 플라스틱 양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sup>136)137)</sup>

  - ▶ 부담금의 부과 범위는 EU의 지침에 언급된 모든 상품을 포괄함
    - 일회용 식품용기, 테이크아웃 식품 포장지, 음료용 컵 및 뚜껑, 플라스틱 캐리어백, 물티슈, 풍선, 담배필터 등
  - ▶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연방환경청에 제조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시장에 출시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종류와 양을 보고해야 함
    - 업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양을 잘못 신고하는 등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을 압수하는 등의 제재를 받음

133) IBFD, “Germany Plans Levy on Single-Use Plastics From 20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6\\_d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6_de_1.html), 검색일자: 2022. 11. 25.

134)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 “Einwegkunststoff-Fondsgesetz liegt im Kabinett,”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919000>, 검색일자: 2022. 11. 25.

135) 독일 연방환경청(BMUV), “Einwegplastik und Zigarettenskippen in der Umwelt kosten Kommunen jährlich 700 Millionen Euro,” <https://www.bmuv.de/pressemitteilung/einwegplastik-und-zigarettenskippen-in-der-umwelt-kosten-kommunen-jaehrlich-700-millionen-euro>, 검색일자: 2022. 12. 05.

136) 독일 연방환경청(BMUV), “Referentenentwurf des Gesetzes zur Umsetzung bestimmter Regelungen der EU-Einwegkunststoffrichtlinie,” <https://www.bmuv.de/gesetz/referentenentwurf-des-gesetzes-zur-umsetzung-g-bestimmter-regelungen-der-eu-einwegkunststoffrichtlinie>, 검색일자: 2022. 11. 25.

137) EY, “German Government releases draft legislation for a Single-Use Plastics levy in Germany,” [https://www.ey.com/en\\_gl/tax-alerts/german-government-releases-draft-legislation-for-a-single-use-pl](https://www.ey.com/en_gl/tax-alerts/german-government-releases-draft-legislation-for-a-single-use-pl), 검색일자: 2022. 11. 25.

- ▣ 연방환경청은 ‘일회용플라스틱기금’을 설립 및 운영하고 해당 기금은 폐기물처리, 폐기물 재활용, 공공장소 청소, 소비자 인식제고 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사용하게 됨<sup>138)</sup>
- ▶ 연방환경청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최대 연 4억 5천만유로<sup>139)</sup>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함

**마.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 결정**

[조세동향 22-12호]

- ▣ 독일 정부는 2022년 11월 21일 요식업(음료류 제외)의 부가가치세를 인하 법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기로 결정함<sup>140)</sup>
- ▶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제1차 코로나 세금 지원법 (Erste Corona-Steuerhilfegesetz)」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업 및 케이터링 서비스(음료류 제외)를 위해 최초 재정하였으며,<sup>141)</sup> 요식업자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9%에서 한시적으로 7%로 인하하였음
- ▶ 「제3차 코로나 세금지원법(Drittes Corona-Steuerhilfegesetz)」으로 감경세율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sup>142)</sup> 독일 재무부는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138) 독일 연방환경청(BMUV), “Plastikverschmutzung hat künftig ihren Preis,” <https://www.bmuv.de/pressemitteilung/plastikverschmutzung-hat-kuenftig-ihren-preis>, 검색일자: 2022. 11. 25.

139)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84억 6,650만원임

140) 독일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Umsatzsteuer-Anwendungserlass/2022-11-21-ermaessigter-umsatzsteuersatz-fuer-restaurations-und-verpflegungsdienstleistungen-verlaengerung-des-zeitlichen-anwendungsbereichs-bis-zum-31-12-2023.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Umsatzsteuer-Anwendungserlass/2022-11-21-ermaessigter-umsatzsteuersatz-fuer-restaurations-und-verpflegungsdienstleistungen-verlaengerung-des-zeitlichen-anwendungsbereichs-bis-zum-31-12-2023.html), 검색일자: 2022. 12. 20.

141) 독일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0-04-29-Corona-Steuerhilfegesetz/0-Gesetz.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0-04-29-Corona-Steuerhilfegesetz/0-Gesetz.html), 검색일자: 2022. 12. 20.

142) 독일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3-17-Drittes-Corona-Steuerhilfegesetz/0-Gesetz.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3-17-Drittes-Corona-Steuerhilfegesetz/0-Gesetz.html), 검색일자: 2022. 12. 20.

〈표 2-11-1〉 독일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인하 현황

구분	적용 기간	기존세율	개정세율
요식업 (배달류 미포함)	2020년 7월 1일~2020년 12월 31일(변동)	19%	5% <sup>1)</sup>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연장)	7%	7%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연장)	7%	7%

주: 1) 제 2차 코로나 세금지원법에 의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로 변경되었음  
 자료: 독일 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corona-steuerhilfegesetz-1750228>, 검색일자: 2022. 12. 21.

**바.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세 도입**

[조세동향 22-12호]

- ▾ 독일 정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세 부과를 시행함<sup>143)144)</sup>
  - ▶ 2022년 9월 30일 EU 이사회의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이익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독일 정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연대분담금(Solidaritätsbeitrag)’의 명칭으로 초과이익세(Abschöpfung von Zufallsgewinnen)를 부과할 예정임<sup>145)</sup>
  - ▶ (연대분담금) 화석연료 기업에 지난 4년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초과이익세를 부과함<sup>146)</sup>
  - ▶ 2022년 및 2023년 이익이 2018~2021년 기간의 평균 이익 보다 20% 이상 초과하는 에너지 기업이 그 대상임

143) 독일 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gesetzesvorhaben/eu-energiekrisenbeitrag-2145638>, 검색일자: 2022. 12. 20.

144) 독일 연방경제기후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12/20221215-bundestag-beschliesst-energiepreisbremsen.html>, 검색일자: 2022. 12. 20.

145) 독일연방경제기후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9/20220930-eu-energieerat-einigt-sich-auf-schnelle-notfallmassnahmen-zur-dampfung-der-strompreise.html>, 검색일자: 2022. 12. 21.

146) 독일 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gesetzesvorhaben/eu-energiekrisenbeitrag-2145638>, 검색일자: 2022. 01. 03.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천연가스 및 화석 연료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윤을 창출한 화석연료기업에 대해 33% 세율로 징수함
- ▶ 독일 정부는 초과이익세 수입을 10억~30억유로<sup>147)</sup>로 추정함

### 3 프랑스

#### 가.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 점진적 폐지

[조세동향 22-09호]

- ▣ 프랑스 재무부장관은 2022년 9월 12일,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contribu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함<sup>148)</sup>
  - ▶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는 2023년 및 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프랑스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임
    - 기존에도 2020년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의 세율을 1.5%에서 0.75%로 인하하고, 2021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조치를 취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켜 왔음<sup>149)</sup>
  - ▶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매출액(상품판매 및 용역제공)과 추가소득(고정자산 양도소득 등)에서 생산비용 등 기타비용을 공제한 것임<sup>150)</sup>
    - 매출이 15만 2,500유로<sup>151)</sup>를 초과하는 기업 및 상시 영업활동을 하고 매출이 50만유로<sup>152)</sup>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과됨<sup>153)</sup>

147) 2022년 12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4000억~4조원임

148) IBFD, "France to Phase Out Contribution on Added Value of Enterprises," 2022. 9.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14\\_fr\\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14_fr_2.html), 검색일자: 2022. 9. 27.

149) IBFD, "France Lowers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Extends Scope of Reduced Rate for SM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05\\_fr\\_2%23tns\\_2021-01-05\\_fr\\_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05_fr_2%23tns_2021-01-05_fr_2), 검색일자: 2022. 9. 30.

15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 p. 109.

151) 2022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1,483만원임

152) 2022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01만원임

나. 2023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10호]

- ▾ 프랑스 정부는 2022년 9월 26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가구와 기업 지원, 고용 증진, 경제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함<sup>154)</sup>

  - ▶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조세정책은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인하, 전기에 대한 최소 소비세율 적용 기한 연장, 주요 스포츠 경기 조세제도의 조정이 있음
    -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의 점진적 폐지와 관련하여 2023년 기업의 최종 납부세액을 2023년에는 50% 감면하고, 2024년에는 전체를 폐지할 예정임<sup>155)</sup>
    - 전기에 대한 최소 소비세율 적용 기한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함
    - 국제 스포츠 대회 프랑스 조직의 경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요건인 자회사 규정을 개정하고<sup>156)</sup> 프랑스 원천 소득의 ‘지불 또는 지급된’ 이라는 문구를 삭제함<sup>157)</sup>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5.4%)을 반영하여 인상함
- ▾ 국회는 ‘초과이익(superprofit)’과 관련한 한시적 부담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차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조세정책을 포함함
  - ▶ 정부의 초과이익과 관련한 최종안은 매출이 7억 5천만유로<sup>158)</sup>를 초과하는 프랑스

153) economie.gouv.fr., “Qu’est-ce que la 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cotisation-valeur-ajoutee-entreprise-cvae>, 검색일자: 2022. 9. 27.

154)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0273\\_projet-loi#\\_Toc115111280](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0273_projet-loi#_Toc115111280), 검색일자: 2022. 10. 14.; IBFD, “Finance Bill for 2023 Phases Out Contribution on Added Value of Enterprises, Maintains Minimum Excise Duty Rates on Electricity,” 2022. 9.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28\\_fr\\_1%23tns\\_2022-09-28\\_fr\\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28_fr_1%23tns_2022-09-28_fr_1), 검색일자: 2022. 10. 14.

155) 기업 부가가치 분담세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상품판매 및 용역제공) 및 추가소득(고정자산 양도소득 등)에서 생산비용 등 기타비용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2021년 세율을 1.5%에서 0.75%로 인하하였음

156) 프랑스 「상법」 제L233-1조(자본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자회사)의 국제 스포츠 대회의 프랑스 조직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예산안은 직·간접적인 보유도 자회사의 개념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함

157) 국제 스포츠 경기의 조직·운영을 담당하는 프랑스 기구에 대하여 경기 관련 소득(수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원천징수세 등 각종 조세를 면제하는 기존의 조항을 2024 파리 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정함

158)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519억 5,750만원임

- 법인의 프랑스 개인거주자에 대한 배당액 및 자기주식취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2022년 및 2023년의 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을 33%로 함
- 2022년 및 2023년의 배당액 및 자기주식취득액이 2017~2021년에 배당된 연평균 금액의 1.2배인 경우에 부과됨
  - 국회는 적용 세율로 35%를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33%를 제안하여 논의 중임<sup>159)</sup>
  - EU는 2022년 10월 6일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하여 한시적인 연대 분담금을 승인하면서, 보충적인 국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정책은 이를 반영한 것임<sup>160)</sup>
- ▶ 정부는 경감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이익 기준 인상, 자녀양육비용의 공제한도 인상, 코로나19 관련 재화에 대한 경감 부가가치세율 적용 기한 연장의 정책을 추가함<sup>161)</sup>
- 15%의 경감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소규모기업의 이익 기준을 3만 8,120유로<sup>162)</sup>에서 4만 2,500유로<sup>163)</sup>로 인상함
  - 비용의 50%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자녀양육비용의 최대 금액을 2,300유로<sup>164)</sup>에서 3,500유로<sup>165)</sup>로 인상함
  -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재화에 적용되던 5.5%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4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도록 함

159) Assemblée nationale, "AMENDEMENT,"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amendements/0273A/AN/3486.pdf>, 검색일자: 2022. 11. 2.; IBFD, "National Assembly Votes for Increased Taxation of 'Super-dividends' from Large Companies," 2022.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4\\_fr\\_2%23tns\\_2022-10-14\\_fr\\_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4_fr_2%23tns_2022-10-14_fr_2), 검색일자: 2022. 11. 2.

16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2-09호」, 2022, p. 17.; EUR-Lex,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R1854>, 검색일자: 2022. 11. 2.

161) IBFD, "Government Pushes Adoption of First Part of Finance Bill for 2023," 2022. 10.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20\\_f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20_fr_1.html), 검색일자: 2022. 11. 2.

162)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344만원임

163)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59만원임

164)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2만원임

165)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0만원임

## 4 이탈리아

### 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 긴급조치 법률 전환

[조세동향 22-07호]

- ▾ 이탈리아 의회는 2022년 7월 15일 에너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긴급 조치들을 법률(Law Decree No. 50/2022)로 전환함<sup>166)</sup>

  - ▶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진 긴급 조치들에 해당하며, 세액공제 확대와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세율 감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 기업에 발생하는 에너지 관련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천연가스의 공급에 적용되던 감면 세율이 유지됨

  - ▶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은 적격 기업은 특정 조건에 따라 2022년 1분기에 소비된 천연가스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2022년 2분기에 소비된 천연가스 비용에 대해 적격 기업에 부여된 세액공제가 기존 20%에서 25%로 증가함
  - ▶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 외에도 적격 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2022년 2분기에 소비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됨
  - ▶ 적격 운송 기업은 부가가치세 순세액에 대해 2022년 1분기 연료구매에 발생한 비용의 28%, 적격 어업 기업은 2022년 2분기 연료구매에 발생한 비용의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또한 국내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공급에 2021년 4사분기부터 적용되어 온 5%의 부가가치세 감면 세율이 2022년 3사분기 발생분에 대해서도 유지됨
- ▾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와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 한도가 인상됨

  - ▶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무형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취득 비용의 세액공제 한도가

166) IBFD, "Parliament Enacts Urgent Measures to Support Enterprises Affected by Increased Energy Costs," 2022.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7-21\\_it\\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7-21_it_1), 검색일자: 2022. 7. 25.

기존 20%에서 50%로 인상됨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혹은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진, 판매자가 관련 주문을 수락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문 금액의 최소 20%가 실제로 지불된 투자 건에 한함

▶ 적절한 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영세기업의 경우 기존에 50%에서 70%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됨

▣ 이 밖에도 적격 개인사업자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부동산 내진 설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해당 작업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전체 작업의 최소 30% 이상이 진행되어야 함

## 5 스페인

### 가. 에너지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초과이윤 부담금 관련 법안 초안 제출

[조세동향 22-08호]

▣ 스페인은 2022년 7월 28일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은행의 한시적 이익에 대해 새로운 초과이윤 부담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sup>167) 168)</sup>

▶ 2022년 6월 25일 각료 회의를 통해 에너지 회사에 대하여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2년 7월 12일 총리는 국정 토론에서 이를 은행 부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해당 계획은 부담금(non-tax contribution) 부과 형태로 확정되었으며, 본 법안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해당 부문의 이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과하여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167) IBFD, "Draft Windfall Profit Tax Bill on Energy Companies and Banks Submitted to Parliament," 2022. 8.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8-03\\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8-03_es_1), 검색일자: 2022. 8. 22.

168) IBFD, "Planned Windfall Profit Tax on Energy Sector Extended to Banks, Prime Minister Says," 2022.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7-14\\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7-14_es_1), 검색일자: 2022. 8. 22.

- ▾ 에너지 기업 및 은행에 대한 부담금은 2023년과 2024년 각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됨
  - ▶ 에너지 기업에 대한 부담금은 2019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유로를 넘는 기업의 순매출액에 대해 1.2%의 요율로 부과됨
    - 통합 과세가 적용되는 에너지 그룹의 경우 그룹 내 매출량을 고려하여 주요 석유, 가스 및 전기 사업자의 회사에 부과금이 적용됨
    -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에너지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 은행 부문에서는 은행의 순이자수입과 은행 중개 마진에 대해 4.8%의 부담금을 부과함
    - 2019년 이자 수입과 은행 중개 마진이 8억유로 미만인 은행은 제외됨
  - ▶ 납부기한은 9월 20일까지로, 2월 20일까지 납부액의 50%를 선납해야 함
- ▾ 초과이윤 부담금은 법인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담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부과된 금액의 1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임

## 나. 에너지 관련 조세 지원 연장 및 확대

[조세동향 22-09호]

- ▾ 스페인 총리는 2022년 9월 1일, 다가오는 겨울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의 일시적인 인하 계획을 발표함<sup>169)170)</sup>
  - ▶ 2022년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가스 공급 및 수입, 국내 구입에 대해 기존 21%에서 5%로 인하된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높은 물가상승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이 승인될 수 있음을 밝힘
    - 이 밖에도 바이오매스용 조개탄 및 펠릿이나 팻감용 목재의 공급, 수입 및 국내 구입에도 동일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이 적용됨

169) IBFD, "Government to Slash VAT on Gas from 21% to 5%, Prime Minister Says," 2022. 9.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9-05\\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9-05_es_1), 검색일자: 2022. 9. 26.

170) IBFD, "Government Slashes VAT Rate on Natural Gas from 21% to 5%," 2022. 9.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9-21\\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9-21_es_1), 검색일자: 2022. 9. 26.

- ▶ 이를 통해 스페인의 세수는 3개월 동안 1억 9천만<sup>171)</sup>~2억유로<sup>172)</sup>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 이번 계획은 2022년 6월 26일 승인된 다른 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확장적 성격을 지니며, 당시 승인된 조치들에 대한 연장 혹은 확대 조치도 함께 이루어짐
  - ▶ 전기에 대한 특별세(Impuesto Especial sobre la Electricidad)에 대해 0.5%의 감면세를 적용 및 전기에너지 생산에 대한 과세 중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제공된 전기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존 감면된 10%의 세율에서 5%로 추가 감면된 세율을 적용함

#### 다. 초과이익세 법안 초안 수정

[조세동향 22-11호]

- ▣ 스페인 연립정부는 2022년 11월 18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과세 영향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세 법안 초안의 수정을 수락함<sup>173)</sup>
  - ▶ 거래자산에 대한 임시 부담금의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11월 10일 제출된 법안 초안이나, 이후 정당 간 협상을 거쳐 경제위원회에서 타협안이 수용된 후 초과이익세 관련 사항도 함께 수정됨
- ▣ 초과이익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활동 및 에너지 요금 등 과세대상 범위가 일부 축소됨
  - ▶ 스페인 내 사업 활동에 대해서만 초과이익세를 부과함
  - ▶ 계약 등을 통해 고정가격으로 설정된 시장요금을 적용받은 매출액에만 초과이익세의 대상이 됨
    - 수요 및 공급에 따라 매일 가격이 변경되는 최대 전력 계약 10kW 이하의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71) 2022년 10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6억원임

172) 2022년 10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38억원임

173) IBFD, "Spain - Spain Continues to Refine Windfall Profit Tax for Energy Companies," 2022. 11.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21\\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21_es_1), 검색일자: 2022. 11. 21.

- ▾ 유럽중앙은행(Europe Central Bank, 이하 ECB)의 초과이익세 관련 경고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음<sup>174)</sup>

  - ▶ ECB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스페인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에 초과이익세를 도입하고자 함
  - ▶ 또한 초과이익세의 세수는 고유가 해결을 위한 긴급 개입을 다룬 EU의 규정(Regulation (EU) 2022/1854)에 상응하는 목적에 사용되며, 은행의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음을 명시함
  
- ▾ 이번 초안 수정을 통해 에너지 기업 및 은행에 대한 초과이익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됨

  - ▶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하여 기업 그룹이 공제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50%로 제한하여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
  - ▶ 스페인 영화 및 시청각자료 제작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제작자가 부담한 비용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변경함
    - 스페인 국내외 제작사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만유로에서 2천만유로로 인상함
    - 시청각 시리즈의 경우 1회 방영분마다 1천만유로의 공제한도가 발생함<sup>175)</sup>

**라. 비거주자의 특정 거액자산에 대한 임시 부담금 과세**

[조세동향 22-11호]

- ▾ 스페인 연립정부는 2022년 11월 10일 특정 거액자산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임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sup>176)</sup>

  - ▶ 본 법안은 「에너지 임시 부담금 설정 및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 제안(122/000247)」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

174) IBFD, "Spain - Spain Proposes to Include Foreign Bank Branches in Windfall Tax Plan," 2022. 11.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 검색일자: 2022. 11. 21.

175) Congreso de Los Diputados, Serie B Núm. 271-5 (18 November 2022) p.116, [https://www.congreso.es/public\\_oficiales/L14/CONG/BOCG/B/BOCG-14-B-271-5.PDF](https://www.congreso.es/public_oficiales/L14/CONG/BOCG/B/BOCG-14-B-271-5.PDF), 검색일자: 2022. 11. 29.

176) IBFD, "Spain - Spain Proposes to Include Foreign Bank Branches in Windfall Tax Plan," 2022. 11.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 검색일자: 2022. 11. 21.

- ▣ 특정 거액자산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부유세에 대하여 임시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함
  - ▶ 자산의 50% 이상이 스페인 부동산으로 구성된 외국 법인에 대한 지분을 대량 보유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이 때 EU 외 국가 또는 정보교환 계약 및 세금 징수가 적용되는 EEA 국가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스페인에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 ▶ 요율은 다음 표와 같으며, 해당 지자체 또는 국가에 직접 납부한 순부유세 세액은 본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거주자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순부유세, 거액자산부담금의 합산액이 총 과세 소득의 60%를 초과할 수 없는 조항이 있으나, 비거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sup>177)</sup>
    -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자산의 가치는 시장 가치(토지대장 기재 가치, 다른 과세 목적상 행정부가 결정하거나 확인한 가치, 부동산의 취득 가치 또는 보수 중 큰 값)으로 결정됨

〈표 2-11-2〉 스페인 거액자산에 대한 임시 부담금 요율

자산 가치	요율
3,000,000 유로 이상~5,347,998.03 유로 이하	1.7%
5,347,998.03 유로 초과~10,695,996.06 유로 이하	2.1%
10,695,996.06 유로 초과	3.5%

자료: IBFD, "Spain - Spain Proposes to Include Foreign Bank Branches in Windfall Tax Plan (14 Nov.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 검색일자: 2022. 11. 21.

- ▣ 거액자산 임시 부담금은 승인 후 2개 과세연도의 매년 12월 31일에 적용됨
  - ▶ 법안이 승인되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되는 경우 2022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 상황에 따라 부과금이 2개 과세연도 이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존재함

177) Spanish Property Insight, "Spanish Wealth Tax (Patrimonio)," <https://www.spanishpropertyinsight.com/tax-and-pensions/spanish-wealth-tax-patrimonio/>, 검색일자: 2022. 11. 29.

마. 「스타트업법」 국회 승인

[조세동향 22-12호]

- ▾ 스페인 국회는 2022년 12월 1일 신생 기업에 개별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법(Start-up law)을 승인함

  - ▶ 본 법은 스타트업 과세 관련 인센티브 내용을 규정하며, 설립 후 5년 미만(생명공학, 에너지 또는 공업의 경우 7년 미만)인 법인에 적용됨<sup>178)</sup>
- ▾ 법인세와 관련하여 첫 과세소득에 대한 세제 및 세무행정 관련 혜택을 포함하고 있음<sup>179)</sup>

  - ▶ 처음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해부터 그다음 3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됨
  - ▶ 첫 과세소득이 발생한 2년간 연체 이자 또는 보증 없이 6개월 혹은 12개월간 법인세 또는 비거주자 소득세 납부 연기를 허용함
-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특별과세제도의 내용을 변경함<sup>180)</sup>

  - ▶ 일반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스톡옵션의 연간 과세면제 소득은 1만 2천유로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5만유로가 적용됨
    - 5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다음 과세기간 혹은 10년 후에 과세됨
    - 또한 직원에게 지급된 주식의 가치는 지급 전 마지막 증자 시 제삼자가 인수한 주식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증자가 없는 경우 시장가치로 평가됨
  - ▶ 스페인에서 세법상 거주지를 획득한 적격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인바운드 국외 거주자 특별과세제도의 비거주 기간이 스페인 입국 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됨

178) IBFD, "Spain - Spain Plans To Create New Tax Incentives To Promote Start-Up Companies," 2021. 7.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1-07-26\\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1-07-26_es_1), 검색일자: 2022. 12. 15.

179) IBFD, "Spain - Government Approves Start-up Law for Emerging Companies, Provides Corporate Tax Incentives," 2022. 12.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2-13\\_es\\_2](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2-13_es_2), 검색일자: 2022. 12. 15.

180) IBFD, "Spain - Government Approves Start-up Law for Emerging Companies, Provides Tax Incentives for Individuals," 2022. 12.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14\\_es\\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14_es_1.html), 검색일자: 2022. 12. 15.

- 이 제도는 해당 납세자의 배우자 및 25세 미만의 자녀, IT를 활용한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디지털 유목민, 적극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 적극 전문가 및 관리자에 계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개인이 스타트업 법인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최대 공제액 또한 6만유로에서 10만유로로 증가함
- ▶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성공적인 펀드 관리를 통해 얻은 사례 혹은 성과 보수는 50%의 소득공제가 허용됨

## 6 아일랜드

### 가. 2023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10호]

-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2022년 9월 27일, 2023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sup>181)</sup>
  - ▶ 전체 예산안은 총 110억유로<sup>183)</sup>이며, 이 중 41억유로<sup>184)</sup> 규모의 일회성 조치(once-off measures)가 포함됨
  - ▶ 금번 예산안은 인플레이션 및 급격한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책과 대응조치가 주를 이룸
- ▣ (법인세) 법인세 측면에서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85)</sup>

181) 아일랜드 정부, *Budget 2023*, 2022. 9. 27., <https://www.gov.ie/en/campaigns/budget/>, 검색일자: 2022. 10. 13.

182) Tax Notes International, *Ireland Unveils €1.7 Billion Tax Plan To Ease Inflation Pressure*, Volume 108, 2022, p.87.

183) 2022년 10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조 2,369억원임

184) 2022년 10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조 6,788억원임

185) IBFD, "Ireland - Direct Taxes: 2023 Budget Would Affirm Commitment to Corporate Minimum Tax, Increase Standard Tax Bands for Individuals," 2022. 9.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8\\_ie\\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8_ie_2.html), 검색일자: 2022. 10. 13.

- ▶ 법인세 속지주의(territorial system of corporation tax) 도입 가능성과 함께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 ▶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율을 50% 감면하는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를 2027년까지 4년 연장함
  - ▶ TV,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는 영상제작 세제혜택(film corporate tax credit)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 직원 주주 프로그램(Key Employee Engagement Programme: KEEP)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sup>186)</sup>
-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총 11억유로<sup>187)</sup> 이상 규모의 소득세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88)</sup>
- ▶ 개인소득세 관련 세액공제를 강화함
    - 소득 표준세율 구간을 미혼 개인의 경우 4만유로<sup>189)</sup>로, 외벌이 부부의 경우 4만 9천 유로<sup>190)</sup>로 인상함
    - 개인 세액공제(personal tax credit)를 1,700유로<sup>191)</sup>에서 1,775유로<sup>192)</sup>로 인상하였으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credit) 환급한도를 1,700유로<sup>193)</sup>에서 1,775유로<sup>194)</sup>로 인상함
    - 또한, 가정 간병인 세액공제(home carer tax credit)를 1,600유로<sup>195)</sup>에서 1,700유로<sup>196)</sup>로 인상함

186) 직원 주주 프로그램(KEEP)은 중소기업의 인재유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취득시점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처분 시에만 과세하는 제도임

187)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5,463억원임

188) 아일랜드 정부, *Statement by Minister Donohoe on Budget 2023*, 2022. 9. 27., <https://www.gov.ie/en/speech/0ed8e-statement-by-minister-donohoe-on-budget-2023/>, 검색일자: 2022. 10. 18.

189)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23만원임

190)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89만원임

191)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9만원임

192)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0만원임

193)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9만원임

194)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0만원임

195) 2022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7만원임

196) 2022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1만원임

- ▶ 외국인 및 해외근무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의 소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특정 외국근로자 구제 프로그램(Special Assignee Relief Programme: SARP)<sup>197)</sup>의 종료일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적격 소득 수준을 현행 7만 5천유로<sup>198)</sup>에서 10만 유로<sup>199)</sup>로 상향조정함
  -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이거나, 해외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해외소득공제 (Foreign Earnings Deduction: FED) 또한 2025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함
- ▣ (기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이외의 세목에 대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200)</sup>
  - ▶ 탄소세를 CO2 1톤당 7.50유로<sup>201)</sup> 인상하여 41유로<sup>202)</sup>에서 48.5유로<sup>203)</sup>로 인상될 예정임
    - 2022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 연료에 우선 적용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모든 연료에 적용함
  - ▶ 환대(hospitality) 및 관광산업에 대해 임시적으로 적용되었던 9%의 부가세 경감세율을 2023년 3월 1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부가가치세율인 13.5%로 복귀(revert)될 예정임
  - ▶ 2023년 1월 1일부터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9%에서 0%로 경감될 예정임
  - ▶ 첫 부동산 취득 시 소득세 및 예금이자보유세(DIRT)를 환급하는 Help-to-buy 세제 혜택은 2024년까지 현행 상태로 연장될 예정임
  - ▶ 빈집세(Vacant Homes Tax)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2개월 기간 동안 30일 미만으로 점유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빈집세가 적용될 예정임

197) 특정 외국근로자 구제 프로그램(SARP)은 아일랜드에서 근무하는 특정 외국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198) 2022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22만원임

199) 2022년 10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163만원임

200) IBFD, "Ireland - Indirect Taxes: 2023 Budget Would Raise Carbon Taxes, Extend Help-to-Buy Scheme," 2022. 9.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8\\_ie\\_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8_ie_3.html), 검색일자: 2022. 10. 13.

201)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544원임

202)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640원임

203)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185원임

**나.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부과 승인**

- ▶ 아일랜드는 2022년 11월 22일, 에너지 기업의 매출에 대한 초과이익세(windfall profit tax) 도입을 승인하였음<sup>204)</sup>
  - ▶ 금번에 도입되는 초과이익세는 태양 및 풍력에너지에 대해 120유로<sup>205)</sup>/MWh, 석유 및 석탄발전(oil-fired and coal-fired) 에너지에 대해서는 180유로<sup>206)</sup>/MWh, 기타 가스 이외 발전에너지에 대해서는 180유로<sup>207)</sup>/MWh의 매출 최저한도(cap on market revenues)를 두도록 하였으며, 해당 매출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매출분에 대하여 초과이익세를 납부해야 함
    - 이러한 매출 최저한도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것임
    -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매출분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었다는 점을 전기 공급업체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매출 최저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
  - ▶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과 함께, 아일랜드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활동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임시적인 추가 부과금 도입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2018~2021년 기간 동안 기업의 평균 과세소득보다 20% 이상 높은 과세소득을 창출한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금이 산출될 예정임

204) IBFD, "Ireland - Irish Cabinet Approves New Windfall Profit Tax on Energy Companies," 2022. 11.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24\\_i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24_ie_1.html), 검색일자: 2022. 12. 12.

205)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만 6,300원임

206)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 9,400원임

207)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 9,400원임

## 7 스위스

### 가. 글로벌 최저한세수 사용계획 발표

[조세동향 22-07호]

- ▣ 2022년 6월 23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거둔 수입을 연방정부에 25%, 주(Cantons)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75%를 할당하여 사용할 것을 발표함<sup>208)</sup>
  - ▶ 해당 예산을 주정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국가 재정 형평지출에 충당하여 스위스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 밝힘
  - ▶ 2022년 1월 12일 스위스 연방의회는 20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15%) 규정을 시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sup>209)</sup>
    -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2023년 6월 헌법 개정에 대한 전국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며, 스위스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최대 25억프랑<sup>210)</sup>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sup>211)</sup>

### 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하는 국가연금 개정안 승인

[조세동향 22-10호]

- ▣ 스위스는 9월 25일 실시된 연방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연금 개정안(AHV 21)을 승인함<sup>212)</sup>

208) 스위스의회, "Confederation arranges for implementation of OECD minimum tax rate in Switzerland," [https://www.efd.admin.ch/efd/en/home/the-fdf/nsb-news\\_list.msg-id-89425.html](https://www.efd.admin.ch/efd/en/home/the-fdf/nsb-news_list.msg-id-89425.html), 검색일자: 2022. 7. 21.

2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스위스 - 디지털세 필라2 최저한세 이행 결정," 「주요국의 조세동향 22-01호」,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3688Wn0\\_0&rs=viewer/result/kiTrend/202202///](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3688Wn0_0&rs=viewer/result/kiTrend/202202///), 검색일자: 2022. 7. 21.

210) 2022년 7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3조 3,699억원임

211) SWISSINFO, Switzerland details revenue split for global corporate tax rate, <https://www.swissinfo.ch/eng/switzerland-details-revenue-split-for-global-corporate-tax-rate/47698274>, 검색일자: 2022. 7. 21.

212) IBFD, "Swiss Voters Approve State Pension Reform and VAT Rate Increase," <https://research.ibfd.org/#>

- ▶ 해당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포함한 세제상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7.7%에서 8.1%로 0.4%p 인상함
  - 일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하된 부가가치세율(reduced VAT rate)을 기존 2.5%에서 2.6%로 0.1%p 인상함
  - 숙박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3.7%에서 3.8%로 0.1%p 인상함
  - 남녀 공통 정년을 65세로 통일함
- ▣ 개정안을 통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2030년까지 국가연금에 대한 자금 조달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며,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8 포르투갈

### 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계획 발표

[조세동향 22-09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2년 9월 5일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억 3,800만유로 상당의 추가 계획을 발표함<sup>213)</sup>
  - ▶ 포르투갈의 2022년 8월 물가상승률은 8.9%로, 이는 2022년 예산안에서 전망한 4%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었음
  - ▶ 포르투갈은 2022년 4월에도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23%에서 13%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6\\_ch\\_1.html](/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6_ch_1.html), 검색일자: 2022. 10. 16.

213) Reuters, "UPDATE 1-Portugal approves \$2.4 bln in new inflation aid for families," 2022. 9. 6., <https://www.reuters.com/article/portugal-cabinet-inflation-idUSL8N30C419>, 검색일자: 2022. 9. 26.

- ▾ 이번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추가 계획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sup>214)</sup>
  - ▶ 2023년 12월까지 전력이 6.9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에 대하여, 월 100킬로와트시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13%에서 6%로 인하함
  - ▶ 탄소세의 인상을 연도 말까지 유예하고 유류세인 ISP세(Imposto Sobre Produtos Petrolíferos)를 감면함

**나. 2023년 예산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2-10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2년 10월 10일 2023년 예산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
  - ▶ 포르투갈은 해당 예산을 통해 원자재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국제무역의 제약,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sup>215)</sup>
- ▾ 법인세와 관련한 공제가 신설되거나 일부 공제의 대상기간 혹은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법인의 자동차 취득과 관련한 세율이 변경됨<sup>216)</sup>
  - ▶ 일반 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2년으로 적용되던 세무상 결손금 공제 기한이 무제한으로 변경됨
    - 다만 일부의 경우 2023년부터 발생하는 결손금이나 공제가 연속적인 연도로 이어지는 결손금의 초년도 결손금에 대해서는 연간 공제한도가 현행 70%에서 65%로 축소됨
    - 상기한 공제한도 축소는 상업 및 공업, 농업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나 회사 전환, 회사 구조조정 중 세무상 결손금의 이전, 조세중립 체제하에서 개인 자산 형태의 자본기여 등에 대해 적용됨

214) IBFD, "Portugal Plans to Slash VAT Rate on Electricity From 13% to 6%," 2022. 9.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9-12\\_pt\\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9-12_pt_1), 검색일자: 2022. 9. 26.

215) IBFD, "Individual Income Taxation: 2023 Budget Would Levy Up to 28% Tax on Crypto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3](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3), 검색일자: 2022. 10. 19.

216) IBFD, "Corporate Taxation: 2023 Budget Would Change Deduction of Corporate Tax Loss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2](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2), 검색일자: 2022. 10. 19.

- ▶ 대기업의 외국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경우, 그 고려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2년으로 확대함
  - 대기업의 외국 고정사업장이 기업 형태를 전환하는 경우 지분소득 면세와 회사청산 제도를 적용할 때 12년의 기준 기간을 고려하게 됨
- ▶ 세무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세대상 소득이 직전 3년 중 한 해에 발생하고 해당 소득이 3년 중 첫 해, 혹은 이후 2년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직전 2년간 적시에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2022년과 2023년 지자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 중소기업에 대한 17%의 감면세율 적용 소득상한액이 현행 2만 5천유로<sup>217)</sup>에서 5만 유로<sup>218)</sup>로 확대됨
  - 2023년에서 2026년 사이 회사 구조 조정을 통해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해당 세율을 2년 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전년도에 발생한 전기 및 가스 비용의 초과액은 보조금을 차감한 후 2022년 과세 소득에서 120% 공제가 적용됨
  - 전기 또는 가스의 생산·이송·분배·거래나 정제된 석유제품의 생산, 혹은 폐기물 및 응집 연료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이 50% 이상 발생하는 회사는 제외됨
- ▶ 농업 기업은 기업 활동에 사용된 특정 상품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의 140%를 2022년과 2023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 전기자동차의 경우 현재 과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취득 비용이 6만 2,500유로<sup>219)</sup>를 초과하는 경우 10%의 지자체 과세대상이 됨
  - 반면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세율은 2.5%, 7.5%, 15%로 인하됨<sup>220)</sup>
-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일부 과세구간의 세율을 변경하였으며, 암호화자산의 과세 내 용을 확정하고 일부 감면 및 공제사항을 확대함<sup>221)</sup>

217)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04만 9천원임

218)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009만 7천원임

219)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62만 2천원임

220) 현재 세율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경우 5%, 10%, 17.5%,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경우 7.5%, 15%, 27.5%임

221) IBFD, "Individual Income Taxation: 2023 Budget Would Levy Up to 28% Tax on Crypto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3](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3), 검색일자: 2022. 10. 19.

- ▶ 개인소득세 세율과 관련하여 각 소득구간의 금액이 2022년 예산안 대비 5.1% 인상 되었으며, 두 번째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23%에서 21%로 인하됨

〈표 2-11-3〉 포르투갈 2022년 및 2023년 개인소득세 세율 비교

2022년 <sup>1)</sup>			2023년 <sup>2)</sup>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7,116유로 이하	14.5%	-	7,479유로 이하	14.5%	-
7,116유로 초과 10,736유로 이하	23%	604.86유로	7,479유로 초과 11,284유로 이하	21%	486.14유로
10,736유로 초과 15,216유로 이하	26.5%	980.63유로	11,284유로 초과 15,992유로 이하	26.5%	1,106.14유로
15,216유로 초과 19,696유로 이하	28.5%	1,284.99유로	15,992유로 초과 20,700유로 이하	28.5%	1,426.65유로
19,696유로 초과 25,076유로 이하	35%	2,565.21유로	20,700유로 초과 26,355유로 이하	35%	2,772.14유로
25,076유로 초과 36,757유로 이하	37%	3,066.79유로	26,355유로 초과 38,632유로 이하	37%	3,299.12유로
36,757유로 초과 48,033유로 이하	43.5%	5,455.84유로	38,632유로 초과 50,483유로 이하	43.5%	5,810.25유로
48,033유로 초과 75,009유로 이하	45%	6,176.56유로	50,483유로 초과 78,834유로 이하	45%	6,567.33유로
75,009유로 초과	48%	8,426.51유로	78,834유로 초과	48%	8,932.68유로

자료: 1) PwC World Wide Tax Summaries, Portugal: Individual - Taxes on personal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portugal/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text=Residents%20in%20Portugal%20for%20tax,%25%20to%2048%25%20for%202022,> 검색일자: 2022. 11. 09.

2) IBFD, "Individual Income Taxation: 2023 Budget Would Levy Up to 28% Tax on Crypto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3,](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0-13_pt_3) 검색일자: 2022. 11. 09.

- ▶ 암호화자산 소득의 경우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상업활동과 관련한 총소득의 85%를 순수익으로 간주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됨
  - 실제 상업활동이 없는 경우 매도가(판매일 현재 시장가치)와 취득액 사이의 차액을 양도 소득으로 결정하여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365일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가 면제됨
- ▶ 고용 또는 자영업과 관련하여 청년 노동자의 최초 5년간 소득에 적용되던 감면율이 1, 2차 연도에는 50%(최대 12.5×SSI까지), 3, 4차 연도에는 30%(최대 7.5×SSI까지), 5차 연도에는 20%로 증가함

-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둘째부터 6세까지 적용되던 아동 당 750유로<sup>222)</sup>의 소득 공제가 900유로<sup>223)</sup>로 확대됨
  - ▶ 아조레스 및 마데이라 제도는 소득공제 가능한 교육비 한도가 현행 800유로<sup>224)</sup>에서 1,000유로<sup>225)</sup>로 인상되며, 내륙 영토로 이사하는 경우 적용되는 임대비용 공제는 현행 502유로<sup>226)</sup>에서 임대 첫해부터 3년간 1,000유로까지로 인상됨
  - ▶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101시간부터 50%가 감면되고, 비과세 거주자의 경우 현재 월 최저 임금자의 원천징수만 면제되고 있었으나 최초 50시간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면제됨
  - ▶ 자가 소비 목적 또는 소규모 생산 단위에서 생산된 잉여 에너지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연간 최대 1,000유로까지 공제됨
- ▾ 일부 간접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석유 및 에너지 제품의 세금감면 혜택을 여객 운송 회사까지 확대함<sup>227)</sup>
- ▶ 담뱃세와 차량유통세, 차량등록세, 그리고 알코올음료 및 설탕이 첨가된 비알코올음료에 대한 세금이 각각 4%p 가량 인상됨
    - 현재 담뱃세는 필련 14%, 각련 15%, 시가류 25%, 물담배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알코올음료는 종류 및 용량에 따라 8.34<sup>228)</sup>~29.3유로<sup>229)</sup>의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음<sup>230)</sup>
  - ▶ 석유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금의 일부 감면 혜택이 여객운송 회사들로 확대되며, 해당 감면은 매 급유가 아닌 월 단위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예정임

222)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5만 1천원임

223)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6만 2천원임

224)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2만 2천원임

225)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0만 3천원임

226)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0만 4천원임

227) IBFD, "Indirect Taxes: 2023 Budget Would Hike Taxes on Tobacco, Vehicles, and Certain Alcoholic and Non-Alcoholic Beverag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2\\_pt\\_1%23tns\\_2022-10-12\\_pt\\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2_pt_1%23tns_2022-10-12_pt_1), 검색일자: 2022. 10. 19.

228)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1,700원임

229)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1,080원임

230) 포르투갈 국세청, Estatísticas - "Imposto: 3 - IT - Imposto sobre os Tabacos" - "Taxas de imposto," <https://info-adianeiro.portaldasfinancas.gov.pt/pt/estatisticas/Pages/estatisticas.aspx>, 검색일자: 2022. 10. 28.

## 9 벨기에

### 가. 조세 개혁 청사진 제안

[조세동향 22-08호]

- ▾ 벨기에 재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18일, 조세 개혁 청사진을 제안함<sup>231)</sup>

  - ▶ 청사진은 향후 10년의 조세 체계에 대한 주된 방향을 제시함
  - ▶ 청사진에 담긴 제안에 기초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실행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함
  
- ▾ 소득세 구간 변동 및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제안함

  - ▶ 구간별 소득세율을 인하하며 소득세율 구간을 4단계로 증가시키고, 특정 경제 활동에 대한 근로 소득의 일부를 과세하지 않음
    - 구간별 소득세율을 현행 40%, 45%, 50%에서 35%, 40%, 45%로 각 5%씩 인하하고, 8만 4,740유로<sup>232)</sup>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함
    - 공유 경제 활동, 협회를 위한 근로, 정규 근로에 추가하여 제공하는 부수적인 근로 또는 임시적인 근로에 대한 소득 중 6천유로<sup>233)</sup>는 과세하지 않음
    -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에서 ‘급여’의 정의를 일치시킴
  - ▶ 중소기업 및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정책을 제시함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최저 과세구간의 기준액을 10만유로<sup>234)</sup>에서 20만유로<sup>235)</sup>로 상향함
    -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를 도입함

231) Vanpeteghem, “Épure pour une vaste réforme fiscale,” <https://vanpeteghem.belgium.be/sites/default/files/articles/Blauwdruk%20FR.pdf>, 검색일자: 2022. 8. 17.; IBFD, “Blueprint for Tax Reform Would Cut Rates, Modernize System,” 2022.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1\\_be\\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1_be_2.html), 검색일자: 2022. 8. 17.

232)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420만원임

233)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3만원임

234)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474만원임

235)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6,949만원임

- ▾ 소득세 구간 변동 및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제안함
  - ▶ 배당 및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제안함
    - 배당·이자·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고, 관련 면제 제도를 폐지(전환 제도가 적용될 예정)함
    - 임대소득에 대한 25%의 원천징수세를 도입하고, 첫 3천유로<sup>236)</sup>는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공제함
    - 증권거래세 및 증권계좌에 대한 조세를 폐지함
  -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전기 등과 관련한 경감 정책을 도입하고, 경감 부가가치세율을 단일화함
    - 전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기존 2단계의 경감 부가가치세율(6% 및 12%)을 단일 경감 부가가치세율(9%)로 대체함
    - 야채, 과일, 건강식품, 공공운송수단에 대한 영세율(0%)을 도입함
    - 탄소 부담금을 도입함

## 나. 인하된 부가가치세율 적용 연장 및 초과이익세 도입 발표

[조세동향 22-09호]

- ▾ 벨기에 정부는 2022년 8월 31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연방 위기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인하된 부가가치세율 적용 연장 및 특정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windfall profit tax) 도입을 발표함<sup>237)</sup>
  - ▶ 전기·천연가스·지역난방에 대하여 적용되는 6%의 부가가치세율 적용 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 ▶ 특정 에너지 기업에 대하여 일시적인 초과이익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는 특정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초과이익세 도입을 발표하고, 벨기에 전

236) 2022년 8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6만원임

237) belgium, be, [https://www.belgium.be/fr/actualites/2022/un\\_plan\\_federal\\_de\\_crise\\_face\\_la\\_flambee\\_des\\_prix\\_de\\_lenergie](https://www.belgium.be/fr/actualites/2022/un_plan_federal_de_crise_face_la_flambee_des_prix_de_lenergie), 검색일자: 2022. 9. 27.; IBFD, “Belgium to Extend VAT Rate Cuts, Introduce Windfall Profits Tax, Prime Minister Says,” 2022. 9.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02\\_b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02_be_1.html), 검색일자: 2022. 9. 27.

- 기 및 가스 규제 위원회(CREG) 등으로 구성된 작업 그룹에게 초과이익 포착 가부, 조세의 형식 및 법적 수단 등을 조사하도록 함
- 특정 원자력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도 원자력 생산으로 인한 연이익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원자력 부담금(cotisation sur l'énergie)이 부과되고 있어 초과이익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sup>238)</sup>
  - 법적 불확실성과 초과이익의 규모 추정이 쉽지 않으며, 에너지 기업이 소비자에게 특정 이익을 상환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대체 방법이 가능하다는 등의 반대 견해도 여전히 존재함<sup>239)</sup>

#### 다. 2023/2024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10호]

##### ▣ 벨기에 정부는 2022년 10월 11일, 2023/2024년도 예산안에 합의함<sup>240)</sup>

- ▶ 기업과 관련하여 결손금 공제 허용한도를 인하하고, 사회보장부담금을 경감함
  - 법인세와 관련하여 100만유로<sup>241)</sup>를 초과하는 결손금 공제 허용금액을 70%에서 40%로 인하하고, 이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은 물가 연동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1·2사분기에는 24.92%(고정요율과 임금변동요율을 합한 총 부담률)에서 일시적으로 7.07%가 경감되고,<sup>242)</sup> 2023년 3·4사분기에 납부 예정인 부담금은 2025년까지 납부가 연장됨<sup>243)</sup>

238) world nuclear news, "Electrabel contends nuclear tax calculation," <https://world-nuclear-news.org/Articles/Electrabel-contends-nuclear-tax-calculation>, 검색일자: 2022. 9. 30.

239) The Brussels Times, "Energy crisis: How to tax excess profit from energy companies?," 2022. 8. 31., <https://www.brusselstimes.com/280502/energy-crisis-how-to-tax-excess-profit-from-energy-companies>, 검색일자: 2022. 9. 30.

240) IBFD, "Government Proposes Loss Carry-Forward Restriction, Windfall Profits Tax in Multiyear Budget Agreement," 2022.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2\\_b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2_be_1.html), 검색일자: 2022. 10. 14.

241)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158만원임.

242) Sécurité sociale/Entreprise, "Les cotisations," <https://www.socialsecurity.be/employer/instructions/dmfa/fr/latest/instructions/socialsecuritycontributions/contributions.html>, 검색일자: 2022. 11. 8.

- ▶ 전기에 대한 6%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1사분기에도 적용될 예정임

▾ 특정 에너지 기업에 대하여 초과이익 분담금을 도입함

-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MWh당 180유로,<sup>244)</sup>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MWh당 130유로<sup>245)</sup>이상의 소득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 이 조치는 EU가 2022년 10월 6일 한시적인 초과이익 분담금 도입을 결의함에 따른 것임<sup>246)</sup>
- ▶ 입법안에 따르면 부과금액은 등록된 원유정제 기업은 수입원유 1톤당 6.9유로<sup>247)</sup>, 등록된 디젤·경유·휘발유 기업은 제품의 1입방미터(cubic meter)당 7.8유로<sup>248)</sup>임<sup>249)</sup>

라.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2-11호]

▾ 벨기에 정부는 2022년 10월 4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함<sup>250)</sup>

- ▶ 조세 관련 이자율 규정을 개정하여 법정이자율을 기초로 적용되도록 하고, 조세절차

243) premier.be, “Un pays qui protège,” [https://www.premier.be/sites/default/files/articles/20221011\\_begroting%202324%20FR.pdf](https://www.premier.be/sites/default/files/articles/20221011_begroting%202324%20FR.pdf), 검색일자: 2022. 11. 8.

244)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만원임

245)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만원임

24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2-09호」, 2022, p. 17.; EUR-Lex,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R1854>, 검색일자: 2022. 11. 2.

247)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천원임

248) 2022년 11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원임

249) news.belgium, “Contribution de solidarité temporaire à charge du secteur pétrolier,” <https://news.belgium.be/fr/contribution-de-solidarite-temporaire-charge-du-secteur-petrolier>, 검색일자: 2022. 11. 2.; IBFD, “Government Council Approves Proposal to Levy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2022. 10.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31\\_b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31_be_1.html), 검색일자: 2022. 11. 2.

250) dekamer, “Projet de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fiscales et financières diverses,” <https://www.dekamer.be/FLWB/PDF/55/2899/55K2899005.pdf>, 검색일자: 2022. 11. 14.; IBFD, “Government Submits Omnibus Tax Bill to Amend Statute of Limitations, Harmonize Tax Interest Rates,” 2022. 10. 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06\\_be\\_1%23tns\\_2022-10-06\\_be\\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06_be_1%23tns_2022-10-06_be_1), 검색일자: 2022. 11. 14.

기간, 이의신청 기간 및 장부 등 보관 기간을 연장함

▶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개정하여 지연가산세와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함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조세 일반의 경우 미납세액 및 환급세액에 법정이율(최소 4%, 최대 10%)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납세액 등은 법정이율에 4%를, 환급가산금은 법정이율에 2%를 가산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 금융자산세, 유가증권세, 은행세, 보험세 또한 기존 민법상 이율(1.5%)에서 법정이율(최소 4%, 최대 10%)이 적용될 예정임

〈표 2-11-4〉 벨기에 가산세 등 적용 이자율 개정 내용

구분	대상	기존 이자율	개정 이자율
조세 일반 (부가가치세 제외)	미납세액(지연납부 포함)	4~10%	법정이율 (4~10%)
	환급세액	2%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지연납부 포함)	월 0.8%	법정이율 + 4%
	낮은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이자		법정이율 + 2%

자료: IBFD, "Government Submits Omnibus Tax Bill to Amend Statute of Limitations, Harmonize Tax Interest Rates," 2022. 10. 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06\\_be\\_1%23tns\\_2022-10-06\\_be\\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06_be_1%23tns_2022-10-06_be_1), 검색일자: 2022. 11. 14.

▣ 조세절차 기간을 3년, 4년, 6년, 10년의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조세절차 기간이란 조사, 부과, 징수, 이의신청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으로 과세관청과 관련한 절차의 종료 기한을 정해놓은 것임

▶ 기존 3년(기본)으로 적용되던 기간 중 무신고·지연신고·불충분신고는 4년, 국외 거래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6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사안'은 10년의 기간을 도입함

〈표 2-11-5〉 벨기에 조세절차 기간 개정 내용

구분	개정 기간	개정 적용 대상
기본	3년	-
신고 관련	4년	무신고·지연신고·불충분신고
국외거래 관련	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및 CbCR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li> <li>'조세 투명성 및 정보 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에 의하여 비협력 국가로 간주되는 국가에 설립된 자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급의 미신고</li> <li>조세조약 또는 'EU 이자 및 사용료 지침(2003/49)'에 기초하여 원천징수 신고에 포함되는 면제·포기·경감</li> <li>외국납부세액공제</li> <li>DAC6 기구(arrangement) 또는 최소 2만 5천유로<sup>1)</sup>의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국가로부터 받은 정보</li> </ul>
복잡한 사안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성불일치</li> <li>조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가공 기구(arrangement)로부터 미배분된 이익</li> <li>신고 의무가 있는 외국 기구(arrangement)</li> <li>부동산세·과태료·미납부 원천징수세·근로소득세의 징수</li> </ul>

주: 1)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04만원임  
 자료: IBFD, "Government Submits Omnibus Tax Bill to Amend Statute of Limitations, Harmonize Tax Interest Rates," 2022. 10. 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06\\_be\\_1%23tns\\_2022-10-06\\_be\\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06_be_1%23tns_2022-10-06_be_1), 검색일자: 2022. 11. 14.

▣ 이의신청 기간 및 장부 등 보관 기간을 연장함

- ▶ 부과처분 또는 경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부과처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경정처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장부, 명세서 등 문서 보관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10 룩셈부르크

가. 에너지 세액공제 법안 시행

[조세동향 22-07호]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2년 6월 29일, 에너지 세액공제(Credit d'Impot Énergie)를 도입하는 법안을 공포함<sup>251)</sup>
  - ▶ 개인사업자·근로자·연금수령자의 2022 및 2023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하여 에너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 법안은 2022년 6월 30일부터 발효됨
  - ▶ 법안은 에너지 관련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연대 패키지'의 일부로, 세액공제액은 소득에 연동됨
    - 세액공제액은 개인사업자·근로자·연금수령자의 소득구간별 소득액에 기초하여 산출됨
    - 개인사업자는 연 단위로 산출하고 2023년에 산출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며, 근로자·연금수령자는 월 단위로 산출하고 2023년에도 기존 방식이 유지됨

〈표 2-11-6〉 2022년 룩셈부르크 에너지 세액공제

(단위: 유로<sup>4)</sup>)

구분	소득	공제액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 <sup>1)</sup>	2022년	936 ~ 44,000	$N^2 \times 84$
		44,001 ~ 68,000	$N \times 84 - (\text{순 소득액} - 44,000) \times (N \times 8/24,000)$
		68,001 ~ 100,000	$N \times 76 - (\text{순 소득액} - 68,000) \times (N \times 76/32,000)$
	2023년	936 ~ 44,000	252
		44,001 ~ 68,000	$252 - (\text{순 소득액} - 44,000) \times (24/24,000)$
		68,001 ~ 100,000	$228 - (\text{순 소득액} - 68,000) \times (228/32,000)$
근로자 <sup>3)</sup>	78 ~ 3,667	84	
	3,668 ~ 5,667	$84 - (\text{월 총급여액} - 3,667) \times 8/2,000$	
	5,668 ~ 8,334	$76 - (\text{월 총급여액} - 5,667) \times 76/2,667$	

251) Journal officiel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Loi du 29 juin 2022," <https://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22/06/29/a317/jo>, 검색일자: 2022. 7. 28.; IBFD, "Luxembourg Enacts Energy Tax Credit," 2022. 7.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1\\_lu\\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1_lu_2.html), 검색일자: 2022. 7. 13.

〈표 2-11-6〉 의 계속

(단위: 유로<sup>4)</sup>)

구분	소득	공제액 계산 방법
연금수령자 <sup>3)</sup>	78~3,667	84
	3,668~5,667	84 - (월 수령액 - 3,667) × 8/2,000
	5,668~8,334	76 - (월 수령액 - 5,667) × 76/2,667

주: 1) 연 단위 산출

2) N = 급여, 임금, 연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한 첫 번째 조정이 시작되는 2022년 5월부터 12월 사이의 개월 수

3) 월 단위 산출, 2022년과 2023년의 공제액 계산 방법은 동일

4) 2022년 8월 17일 기준 1유로는 약 1,338원임

자료: Journal officiel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Loi du 29 juin 2022," <https://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22/06/29/a317/jo>, 검색일자: 2022. 7. 28.

## 나. 2023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11호]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2년 10월 12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함<sup>252)</sup>

- ▶ 개인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정 공제혜택 기준 및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과 관련하여 임대 부동산의 가속상각률을 인상하고, 역혼성체(reverse hybrid entity) 규정을 명확히 함
- ▶ 기타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조세 신고기한을 연장함

▣ 개인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정 공제혜택 기준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을 완화함

- ▶ 한부모가정 공제액을 1,500유로<sup>253)</sup>에서 2,500유로<sup>254)</sup>로 변경하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소득한도 기준을 3만 5천유로<sup>255)</sup>에서 6만유로<sup>256)</sup>로 인상함

252) Chambre des Députés, "Projet de Budget 2023,"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3/174/26774\\_5.pdf](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3/174/26774_5.pdf), 검색일자: 2022. 11. 14.; IBFD, "2023 Budget: Government Proposes to Reduce Salary Threshold for Expat Regime, Push Back Filing Deadlines," 2022.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2\\_lu\\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2_lu_2.html), 검색일자: 2022. 11. 14.

253)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7만원임

254)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6만원임

255)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856만원임

256)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325만원임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 요건인 최소급여액 기준을 10만유로<sup>257)</sup>에서 7만 5천유로<sup>258)</sup>로 인하함
  -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사·주거·교육 등 특정 비용 공제혜택이 제공되고, 교육 등 특례 적용 요건 중 하나인 급여액 기준을 완화함
  
- ▣ 법인과 관련하여 임대 건물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를 개정하고, 역혼성체 규정을 명확히 함
  - ▶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신축된 임대 건물(또는 건물 일부)에 적용되었던 6%의 가속상각률을 4%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신축된 건물 및 최대 2개의 부동산에만 적용됨
  - ▶ 역혼성체 규정이 거주 관할국에서 과세 면제되는 관계기업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과세 면제는 룩셈부르크 도관 기업·기구의 분류 방식 차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개정함<sup>259)</sup>
    - 규정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도관 기업·기구는 특정 조건하에 룩셈부르크 또는 다른 관할국(투자자의 관할국 포함)에서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거주 관계기업이 기업·기구를 실제로 간주하는 관할국에 소재한 기업·기구의 이익에 대한 의결권·이익 분배권 등의 최소 5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규정이 적용됨
  
- ▣ 기타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조세 신고기한을 연장함<sup>260)</sup>
  - ▶ 경감 부가가치세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기존 가구용 기구에 적용되던 8%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을 전기 자전거의 판매, 대여 및 보수까지 확대함
    - 3%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명세서에 대하여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인도 시 적용됨

257)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862만원임

258)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96만원임

259) EY, "Luxembourg Draft Budget Law 2023 clarifies Reverse Hybrid Entity Rule," 2022. 10. 17., [https://www.ey.com/en\\_gl/tax-alerts/luxembourg-draft-budget-law-2023-clarifies-reverse-hybrid-entity](https://www.ey.com/en_gl/tax-alerts/luxembourg-draft-budget-law-2023-clarifies-reverse-hybrid-entity), 검색일자: 2022. 11. 14.

260) KPMG, "Luxembourg: Tax proposals in budget 2023, property tax reform," 2022. 10. 14.,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2/10/tnf-luxembourg-tax-proposals-in-budget-2023-property-tax-reform.html>, 검색일자: 2022. 11. 14.

- ▶ 2022 회계연도의 개인소득세, 법인세, 지방사업소득세 및 2023 회계연도의 부유세의 연간 신고기한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함

## 11 그리스

### 가. 연구비에 대한 세제 혜택 관련 법률 발표

[조세동향 22-08호]

- ▣ 그리스 정부는 2022년 7월 21일 연구비에 대한 R&D 공제 및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 No.4957을 발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sup>261)</sup> <sup>262)</sup>
  - ▶ 그리스의 고등교육 기관인 HEI의 특수연구기금계정(ELKE)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해 R&D 사업 비용을 소득 공제함
  - ▶ 해당 비용과 관련한 R&D 사업의 목록을 제공함
    - 산업 계열의 박사학위 준비, 연구 파트너십 개발, 산업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임상시험 준비 등과 관련된 사업 비용이 이에 해당함
  - ▶ 그리스 HEI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특허에 대해 이익 실현 연도로부터 최대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함
  -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연구환급계정을 통해 취득한 과학 및 기타 장비에 대해 100%의 감가상각비를 허용함

261) Bloomberg Tax, "Greece Gazettes Law Providing R&D Deductions, Tax Incentives for Research Funding," 2022. 8. 11.,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greece-gazettes-law-providing-r-d-deductions-tax-incentives-for-research-funding>, 검색일자: 2022. 8. 22.

262) IBFD, "Greece Introduces New Educational R&D Tax Incentives," 2022. 8.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8-04\\_gr\\_2](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8-04_gr_2), 검색일자: 2022. 8. 22.

나. 부동산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추가 유예

[조세동향 22-12호]

- ▣ 그리스 정부는 2022년 12월 6일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를 추가 유예함<sup>263)</sup>
  - ▶ 추가 유예가 이루어진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자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는 이미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중단된 바 있음<sup>264)</sup>
  - ▶ 그리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부동산 시장과 건설 및 기술 서비스 부문에 활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12 네덜란드

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발표

[조세동향 22-07호]

- ▣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2022년 7월 7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함<sup>265)</sup>
  - ▶ 전기, 휘발유, 디젤 및 LPG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함
  - ▶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에서 9%로 인하

263) IBFD, "Greece - Greece Suspends Tax on Capital Gains Arising from Sale of Immovable Property," 2022. 12.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 검색일자: 2022. 12. 14.

264) IBFD, "Greece - Greece Proposes to Further Suspend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rising from Sale of Immovable Property," 2022. 11.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1-29\\_gr\\_1%23tns\\_2022-11-29\\_gr\\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1-29_gr_1%23tns_2022-11-29_gr_1), 검색일자: 2022. 12. 14.

265) News IBFD, "Netherlands Enacts Tax Reductions to Counter Soaring Energy Prices," 2022. 7.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7\\_nl\\_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7_nl_3.html), 검색일자: 2022. 7. 20.

하였으며, 기업은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 시 감면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sup>266)</sup>

- 에너지 공급업체는 공급받는 자의 결제 시점과 상관없이, 감면기간 동안 인화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환급을 신청한 에너지 공급업체는 신청기간 동안 다른 에너지 공급계약에도 동일한 매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면기간 동안 선택에 대한 포기가 불가능함<sup>267)</sup>
- ▶ 휘발유 및 경유 등에 대한 소비세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 인하함
  - 휘발유의 소비세는 리터당 82센트에서 21% 감소하여 리터당 17.3센트 인하하였으며, 경유는 11.1센트, LPG는 4.1센트 인화된 소비세가 적용됨<sup>268)</sup>

## 나. 2023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9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2년 9월 2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함<sup>269)</sup>
  - ▶ 법인세율 인상, Box 2 소득에 대한 2단계 누진세율 도입, Box 3 소득세율 인상, 30% ruling 제도 소득금액 상한 도입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 (법인세) 최하위 법인세율을 기존 15%에서 19%로 4%p 인상하고,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금액을 하향 조정할 계획임<sup>270)</sup>
  - ▶ 최하위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적용대상 금액을 39만 5천유로<sup>271)</sup>에서 20만유

266) News IBFD, "Tax Authority: Entrepreneurs May Apply for VAT Refunds Using Temporary Reduced VAT Rate at Time of Signing Energy Contract," 2022.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7-14\\_nl\\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7-14_nl_1), 검색일자: 2022. 7. 20.

267) 네덜란드 법원, "Omzetbelasting, teruggaaf van omzetbelasting bij kortingen in verband met de tijdelijke toepassing verlaagd btw-tarief voor energie," <https://wetten.overheid.nl/BWBR0046909/2022-07-14>, 검색일자: 2022. 7. 20.

268) 네덜란드 정부, "Verlaging brandstofaccijns gaat ook gelden voor LPG en LNG," <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22/03/17/verlaging-brandstofaccijns-gaat-ook-gelden-voor-lpg-en-lng>, 검색일자: 2022. 7. 20.

269) News IBFD, "Corporate Income Tax Hike, Substantial Shareholders and "Box 3" Headline 2023 Budget," 2022. 9.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20\\_nl\\_1%23tns\\_2022-09-20\\_nl\\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20_nl_1%23tns_2022-09-20_nl_1), 검색일자: 2022. 9. 23.

270) News IBFD, "Government Hikes Lower Rate of Corporate Income Tax, Lowers Threshold in 2023 Budget," 2022. 9.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21\\_nl\\_2%23tns\\_2022-09-21\\_nl\\_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9-21_nl_2%23tns_2022-09-21_nl_2), 검색일자: 2022. 9. 23.

로<sup>272)</sup>로 축소하고, 세율은 15%에서 19%로 4%p 인상함

- ▶ 최상위 법인세율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25.8%로 유지함

▾ (개인소득세) 유보소득 배당 촉진 목적으로 Box 2 소득에 대한 2단계 누진세율을 도입하고, Box 3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함

- ▶ 현행 소득세법상 실질적인 주주(Substantial shareholders)<sup>273)</sup>가 벌어들인 배당 및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26.9%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2024년부터 2단계 누진세율을 도입할 계획임
  - 6만 7천유로<sup>274)</sup>까지는 1단계에 해당하는 세율인 24.5%를 적용하고, 6만 7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에 해당하는 세율인 31%를 적용할 계획임
- ▶ 현재 31%인 Box 3<sup>275)</sup> 소득세율을 2025년부터 1%p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34%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면세 대상 소득기준(Belastingvrije vermogen)을 기존 5만 560유로<sup>276)</sup>에서 5만 7천유로<sup>277)</sup>로 인상할 계획임
- ▶ 최하위 소득세율을 현행 37.07%에서 36.93%로 0.14%p 인하하고, 최상위 소득세율은 49.5%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근로소득세) 2024년부터 30% 룰링(ruling)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상한 기준을 도입할 계획임<sup>278)</sup>

- ▶ 법적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30% 룰링 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21만 6천유로<sup>279)</sup>를 한도로 제도 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6만 4,800유로<sup>280)</sup>의 금액에 대해 면세 적용이 가능함<sup>281)</sup>

271)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4,693만원임

272)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693만원임

273) 실질적인 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함

274)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75만원임

275) Box 3 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소유 자산(Vermogen)에 대한 자본소득으로, 저축으로 인한 투자수익 등을 의미함

276)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99만원임

277)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91만원임

278) News IBFD, "30% Ruling Cap Features Prominently Among Wage Tax Measures in 2023 Budget," 2022. 9.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1\\_nl\\_4.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1_nl_4.html), 검색일자: 2022. 9. 26.

279)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9,790만원임

280) 2022년 9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937만원임

- 30% 룰링 제도의 소득금액 상한기준은 고위 공직자의 최대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최고 소득 기준법(Balkenendenorm)과 동일하며, 2022년 기준액은 정부 장관 급여의 130%인 21만 6천유로임
- 다만, 2022년에 30% 룰링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4년이 아닌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금액 상한기준 한도를 적용받음

▾ (간접세) 부동산거래세(Transfer tax) 표준세율을 인상하고, 주택구입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폐지 계획 등을 발표함<sup>282)</sup>

- ▶ 부동산거래세 표준세율을 2023년부터 기존 8%에서 10.4%로 2.4%p 인상함
  - 네덜란드 거주자는 법적·경제적 소유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특정권리를 취득할 때, 취득한 재산의 공정가치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표준세율을 인상함<sup>283)</sup>
  - 단, 자가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은 현행 세율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 자녀의 거주 주택 구매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금액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0만 6,671유로<sup>284)</sup>에서 2만 8,947유로<sup>285)</sup>로 축소하고 2024년부터는 주택 구매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폐지할 계획임

#### 다. 2023년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의제주거소득 최종 수치 발표

[조세동향 22-11호]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2년 11월 10일, 2023년 근로소득 세액공제(arbeidskorting) 및 의제주거소득(eigenwoningforfait)의 최종 수치를 발표함<sup>286)</sup>

281) PWC, "30% ruling capped," <https://www.pwc.nl/en/insights-and-publications/tax-news/wage-tax-and-social-security/30-ruling-capped-.html>, 검색일자: 2022. 9. 26.

282) News IBFD, "Property Transfer Tax Increase, Abolition of Gift Tax Exemption for Purchase of Dwellings, Highlights of Other Tax Measures in 2023 Budget," 2022. 9.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1\\_nl\\_6.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1_nl_6.html), 검색일자: 2022. 9. 26.

283)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9. Miscellaneous Taxes (Last Reviewed: 15 August 2022), "9.2.1. Immovable property,"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nl\\_s\\_9.2.1.%23gtha\\_nl\\_s\\_9.2.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nl_s_9.2.1.%23gtha_nl_s_9.2.1.), 검색일자: 2022. 9. 23.

284)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712만원임

285)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92만원임

286) News IBFD, "Netherlands Sets 2023 Employment Tax Credit, Rate of Imputed Income from Owner-Occupied Dwellings," 2022. 11.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

-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율<sup>287)</sup>을 확정하고, 의제주거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임대가치 비율 등을 확정함
- ▣ (근로소득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금액을 조정하고, 각 구간별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 모든 소득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11만 5,295유로<sup>288)</sup>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표 2-11-7〉 네덜란드 2023년 근로소득 세액공제 변화

(단위: 유로)

근로소득 범위		근로소득세액공제	
2022년	2023년	2022년 <sup>1)</sup>	2023년
10,351 미만	10,740 미만	4.541% × 근로소득	8.231% × 근로소득
10,352~22,357	10,741~23,201	470 + 28.461% × (근로소득 - 10,351)	844 + 29.861% × (근로소득 - 10,740)
22,358~36,650	23,202~37,691	3,887 + 2.610% × (근로소득 - 22,357)	4,605 + 3.085% × (근로소득 - 23,201)
36,651~109,347	37,692~115,295	4,260 - 5.860% × (근로소득 - 36,650)	5,052 + 6.510% × (근로소득 - 37,691)
109,347 초과	115,295 초과	0	0

주: 1) 기초연금(Algemene Ouderdomswet, AOW) 수령 연령 미만인 경우이며, 기초연금 수령 연령에는 더 낮은 공제율이 적용됨.

자료: Netherland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검색일자: 2022. 11. 17.

- ▣ (의제주거소득) 의제주거소득 산정 시, 부동산가치(Waardering Onroerende Zaken-waarde, WOZ-waarde)에 적용되는 임대가치 비율을 인하함
  - ▶ 네덜란드는 소유한 거주주택에 대해, 임대를 했다면 통상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던 임대소득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에 적용되는 임대가치 비율을 인하함
  - 의제주거소득은 부동산가치에 임대가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됨

-11\_nl\_5.html, 검색일자: 2022. 11. 17.

287) 네덜란드에서는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임

288) 2022년 1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045만원임

- ▶ 2023년부터 부동산가치가 120만유로<sup>289)</sup>(현행 113만유로<sup>290)</sup>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0.35%(현행 0.45%)의 임대가치 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 초과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2.35%를 적용하기로 결정함

## 13 덴마크

### 가. 2023년 통근비용 소득공제 및 자차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인상안 최종수치 발표

[조세동향 22-12호]

- ▼ 덴마크 정부는 2022년 11월 24일, 2023년 km당 통근비용 소득공제액 및 비과세 수당 한도의 최종 수치를 발표함<sup>291)</sup>
  - ▶ 통근비용 소득공제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조정되는데, 최근 증가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km당 공제액을 확정하였고,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 (통근비용) 현행법에서는 통근거리가 24k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거리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km당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 직원의 출퇴근거리가 24km 초과 120km 이하인 경우 km당 공제액을 기존 2.16덴마크크로네<sup>292)</sup>에서 2.19덴마크크로네<sup>293)</sup>로 0.03덴마크크로네 인상함
  - ▶ 직원의 출퇴근거리가 120km를 초과하는 경우 km당 공제액을 기존 1.08덴마크크로네<sup>294)</sup>에서 1.10덴마크크로네<sup>295)</sup>로 0.02덴마크크로네 인상함

289) 2022년 1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억 7,009만원임

290) 2022년 1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억 7,286만원임

291) News IBFD, "Denmark Sets 2023 Deduction Rates and Tax-Free Allowances for Commuting," 2022. 12.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02\\_d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02_dk_1.html), 검색일자: 2022. 12. 15.

292)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3원임

293)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9원임

294)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2원임

295)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5원임

- ▣ (자차운전보조금) 현행법에서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km당 일정금액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 조정액을 인상함
  - ▶ 업무수행에 이용한 거리가 연간 2만킬로 미만인 경우, km당 비과세 적용금액을 기존 3.70덴마크크로네<sup>296)</sup>에서 3.73덴마크크로네<sup>297)</sup>로 0.03덴마크크로네 인상함
  - ▶ 업무수행에 이용한 거리가 연간 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km당 비과세 적용금액을 기존 2.17덴마크크로네<sup>298)</sup>에서 2.19덴마크크로네<sup>299)</sup>로 0.02덴마크크로네 인상함
  - ▶ 종업원 소유 차량이 자전거, 오토바이 또는 전기스쿠터일 경우 비과세 한도를 기존 km당 0.57덴마크크로네<sup>300)</sup>에서 0.61덴마크크로네<sup>301)</sup>로 0.04덴마크크로네 인상함

## 14 핀란드

### 가. 2023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8호]

- ▣ 핀란드 재무부는 2022년 8월 5일 2023년 예산안(TALOUSARVIOKSI 2023)을 발표함<sup>302)</sup>
  - ▶ 법인세 이자비용공제 한도 폐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비세 인상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 구체적 개정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세부사항은 정부의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중에 공표될 예정임

296)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1원임

297)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96원임

298)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5원임

299)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9원임

300)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6원임

301) 2022년 12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4원임

302) News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Its Budget Proposal for 2023 With No Big Surprises," 2022. 8.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05\\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05_fi_1.html), 검색일자: 2022. 8. 17.

- ▾ (법인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연구개발비 소득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임
- ▾ (개인소득세) 기존 예정된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이 폐지되거나 도입될 예정임

  - ▶ 소득세 세율구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연동, 통근비용 소득공제 확대 적용 등은 유지됨

    - 세율 적용 표는 통상적으로 매년 갱신되며, 2022년도에는 연간 1만 9,200유로<sup>303)</sup>이상의 소득에 대해 4구간으로 나누어 6~31.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sup>304)</sup>
    - 2022년 7월 1일부터 유가상승에 대응하여,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통근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7,000유로<sup>305)</sup>에서 8,400유로<sup>306)</sup> 인상하였으며, 해당 정책을 2023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임<sup>307)</sup>
  -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제도는 2020년 제도 도입 시부터, 공제비율을 점차 축소하여 2023년부터는 공제되지 않을 계획이었음
- ▾ (소비세) 담배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며, 파라핀 디젤에 대한 세금감면을 축소하여 세수를 확대할 예정임

## 나. 2023년 예산안 세부사항 발표

[조세동향 22-10호]

- ▾ 핀란드 정부는 2022년 9월 19일 2023년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함<sup>308)</sup>

303) 2022년 8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2만원임

304) IBFD, "Finland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fi\\_s\\_1.9.1.%23gthb\\_fi\\_s\\_1.9.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fi_s_1.9.1.%23gthb_fi_s_1.9.1.), 검색일자: 2022. 8. 29.

305) 2022년 8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34만원임

306) 2022년 8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21만원임

307) News IBFD, "Ministry of Finance Promises to Increase Tax Reliefs for Commuting Costs for 2022," 2022. 3.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3-18\\_fi\\_1%23tns\\_2022-03-18\\_fi\\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3-18_fi_1%23tns_2022-03-18_fi_1), 검색일자: 2022. 8. 29.

- ▶ 핀란드 재무부는 2022년 8월 5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부사항은 9월에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린 바 있음
- ▣ 세법개정안은 기존 예정된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액 인상안의 세부사항을 발표함
- ▶ 개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기준액을 3~4% 인상하고, 세율도 기존 6~31.25%에서 19~44%로 크게 인상함
  - 소득구간별로 기본소득세가 부과되고, 최저소득기준 초과액에 대해서는 구간별 누진 세율이 추가 적용됨

〈표 2-11-8〉 핀란드 2023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단위: 유로, %, %p)

소득구간	종류	2022년	2023년	변화
1	과세소득	0~19,200	0~19,900	-
	세율	-	12.64	12.64
2	소득기준	19,200~28,700	19,900~29,700	3.6
	세율	6	19	13
3	소득기준	28,700~47,300	29,700~49,000	3.5
	세율	17.25	30.25	13
4	소득기준	47,300~82,900	49,000~85,800	3.6
	세율	21.25	34	12.75
5	소득기준	82,900 초과	85,800 초과	3.5
	세율	31.25	44	12.75

자료: Norway~Individual Taxation sec. 1.10. Rates,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October 18, 2022)

다. 이자비용 공제 규정 개정안 비준

[조세동향 22-12호]

- ▣ 핀란드 대통령은 2022년 12월 9일, 「사업소득세법」 제18b조에 따른 일반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개정안을 비준함<sup>309)</sup>

308) News IBFD, "Government Presents Budget for 2023 to Parliament," 2022. 9.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0\\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20_fi_1.html), 검색일자: 2022. 10. 18.

- ▶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되는 추가 요건을 도입하여, 적용 배제 기준을 더 엄격히 함
  - 현재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은 법인의 자기자본비율(equity-to-balance-sheet ratio)이 연결재무제표상의 해당 비율과 같거나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추가된 요건은 대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대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제삼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15 오스트리아

### 가. 2023년 연방 예산 승인

[조세동향 22-10호]

- ▣ 오스트리아 연방총리는 2022년 10월 12일 2023년 연방 예산안을 승인함<sup>310)</sup>
  - ▶ 해당 예산안은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생계비 세액공제 등 세액 공제에 대한 조정 등을 포함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23년 7월 1일부터 3만 1천유로<sup>311)</sup>에서 6만유로<sup>312)</sup> 사이의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 세율을 42%에서 40%로 인하함
    - 2023년부터 법인 소득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2024년 23%까지 인하함

309) News IBFD, "President Ratifies Law Amending Interest Deductibility Rules," 2022. 12.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09\\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2-09_fi_1.html), 검색일자: 2022. 12. 15.

310) Bloombergtax, "Austria Cabinet Approves Draft Federal Budget Bill 202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7HBN70O000000?criteria\\_id=590512b607d53d59c0f5250e9a08ad2f&searchGuid=e3d42679-b8a2-43b8-a7c3-f8eb08ffc0d6&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7HBN70O000000?criteria_id=590512b607d53d59c0f5250e9a08ad2f&searchGuid=e3d42679-b8a2-43b8-a7c3-f8eb08ffc0d6&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 검색일자: 2022. 10. 16.

311)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228,630원임

312)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603,800원임

- 월 총소득 1,100<sup>313)</sup>유로에서 1,800유로<sup>314)</sup> 사이의 근로자에게 생계비 전체에 대한 생계비 세액공제 청구를 허용함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에 대한 일부 공제 및 세액공제를 조정함
- 공제 가능한 취득 또는 생산 비용에 대한 자산가치 한도를 800유로<sup>315)</sup>에서 1,000유로<sup>316)</sup>로 높임
- 사업에 대한 지출과 관련하여 특정 자산과 관련한 취득 또는 생산 비용의 10%를 영업비로 공제하는 혜택을 도입하며, 환경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인 경우 취득 또는 생산비용의 15%를 영업비로서 공제함

#### 나.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대한 이익부과금 도입 발표

[조세동향 22-11호]

-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2년 11월 18일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대한 이익부과금의 도입을 발표함<sup>317)</sup>
  - ▶ 이 조치는 EU 회원국들 간 화석연료산업의 잉여이익에 대해 일시적인 별도 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급하여 부과됨
  - ▶ 이외에 전력공급자에 대해 가격 상한을 두는 조치도 병행되어 전력공급가격이 최대 1메가와트시당 180유로<sup>318)</sup>로 제한됨
- ▣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연대기여금) 석유와 가스 기업들의 과거 4년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연대기여금은 2022년과 2023년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과세 이익으로 계산됨

313)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69,403원임

314)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8,114원임

315)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41,384원임

316) 2022년 10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26,730원임

317) News IBFD, "Austria Proposes Windfall Profits Tax on Energy Companies," 2022. 11.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21\\_at\\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21_at_1.html), 검색일자: 2022. 11. 28.

318)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 9,615원임

- 과거 4년(2018~2021년) 동안 발생한 연간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부과금이 부과됨
- ▶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일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입증되는 경우 관련 투자비용의 50%를 공제할 수 있음
- ▶ 부과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급하여 부과됨
- ▾ (전력 가격 상한) 전력공급자가 공급하는 전력에 1메가와트시당 180유로의 가격 상한을 설정함
  - ▶ 에너지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공제를 반영하여 1메가와트시당 180유로의 가격 상한이 적용됨
  - ▶ 가격 상한은 2022년 12월 1일에 발효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16 노르웨이

### 가. 2023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10호]

- ▾ 노르웨이 정부는 2022년 10월 13일에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함<sup>319)</sup>
  - ▶ 소득 재분배, 가계경제 안정, 공공복지 보장, 녹색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안하며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 전반에 걸친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법인세 - 직접세)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함<sup>320)</sup>

319) News IBFD, "2023 Budget: Government Promises Favourable Personal Income Taxation - Direct Taxes," 2022.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3\\_no\\_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3_no_3.html), 검색일자: 2022. 10. 18.

320) News IBFD, "2023 Budget: Government Proposes More Taxes for Industries Exploiting Natural Resources - Direct Taxes," 2022.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3\\_no\\_2%23\\_tns\\_2022-10-13\\_no\\_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3_no_2%23_tns_2022-10-13_no_2), 검색일자: 2022. 10. 18.

- ▶ 수력발전 생산자를 위한 자원 임대료에 대한 실효세율을 기존 37% 45%로 8%p 인상할 것을 제안함
  - ▶ 풍력 및 수력 발전에 대하여 전기 판매단가가 1킬로와트시당 0.70노르웨이크로네<sup>321)</sup>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23%의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sup>322)</sup>
  - ▶ 육상풍력 발전 생산자에 대하여 40%의 자원 임대세를 도입함
  - ▶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세 인하 조치를 중단함
    - 노르웨이 정부는 2016년 이후 가상화폐 채굴장(데이터 센터)에 전기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였음
  - ▶ 비배출권거래시스템(Non Emission Trading System: Non-ETS)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
- ▾ (개인 소득세) 소득세 누진세율 인하, 연금소득 소득공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음
- ▶ 소득구간 3,4,5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0.1%p 인상함
    - 개인납세자의 기본 소득세율은 22%이고 소득구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됨

〈표 2-11-9〉 노르웨이 2023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단위: 노르웨이크로네, %, %p)

소득구간	구분	2022년	2023년	변화
1	소득기준	190,350	198,350	4
	세율	1.7	1.7	-
2	소득기준	267,900	279,150	4
	세율	4	4	-
3	소득기준	643,800	644,700	0.1
	세율	13.4	13.5	0.1
4	소득기준	969,200	969,200	-
	세율	16.4	16.5	0.1
5	소득기준	2,000,000	2,000,000	-
	세율	17.4	17.5	0.1

자료: Norway - Individual Taxation sec. 1.10. Rates,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October 18, 2022)

321)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원임

322) PWC, "Increased taxation of income from natural resources - Onshore wind power and hydro power production," 2022. 9. 29., <https://blogg.pwc.no/skattebloggen-en/increased-taxation-of-income-from-natural-resources-onshore-wind-power-and-hydro-power-production>, 검색일자: 2022. 10. 18.

- ▶ 노동조합 수당에 대한 공제액을 기존 5,800노르웨이크로네<sup>323)</sup>에서 7,700노르웨이크로네<sup>324)</sup>로 1,900노르웨이크로네 인상함
- ▶ 연금소득에 대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만 3,400노르웨이크로네<sup>325)</sup>에서 3만 3,250노르웨이크로네<sup>326)</sup>로 150노르웨이크로네 축소하고, 최소 표준공제 하한선을 폐지함
- ▾ (부가가치세)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운 재화를 추가함<sup>327)</sup>
  - ▶ 판매가 50만노르웨이크로네<sup>328)</sup> 이상의 전기자동차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임
    - 초과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가가치세율인 25%의 세율이 적용됨
  - ▶ 해외 원격배달서비스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임
- ▾ (재산세) 각종 재산가치 인정비율을 조정하고, 2천만노르웨이크로네 이하 자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상함
  - ▶ 재산세는 자산의 시장가치가 아닌 자산의 유형별로 특정 비율을 곱한 법정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각각의 유형별로 인정비율을 조정함<sup>329)</sup>
    - 주식 및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기존 75%에서 80%로 5%p 인상함
    - 자가 소유 운용자산의 계산비율을 70%로 축소함
  - ▶ 순자산 2천만노르웨이크로네<sup>330)</sup> 이하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기존 0.95%에서 1%로 0.05%p 인상함

323)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만원임

324)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4만원임

325)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3만원임

326)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만원임

327) News IBFD, "2023 Budget: Government Proposes to Impose VAT on Sales of Some Electric Vehicles - Indirect Taxes," 2022.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3\\_no\\_4%23tns\\_2022-10-13\\_no\\_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13_no_4%23tns_2022-10-13_no_4), 검색일자: 2022. 10. 18.

328)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88만원임

329)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person/skatt/hjelp-til-riktig-skatt/bolig-og-eiendeler/bolig-eiendom-tomt/eiendomsskatt/hva-er-eiendomsskatt/>, 검색일자: 2022. 10. 18.

330) 2022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억 1,320만원임

### III

## 아시아/오세아니아

### 1 일본

#### 가. 2023년 도입 예정 탄소세 도입 연기

[조세동향 22-11호]

- ▣ 일본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에 도입 예정이었던 탄소세 개정안의 도입을 연기함<sup>331)</sup>
  - ▶ 해당 조치는 최근 엔화 약세와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도입 예정 관련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
  - 일본은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화석연료 배출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환산량 톤당 289엔<sup>332)</sup>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당초 일본은 도입 예정이었던 탄소세 개정안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수준에서 46%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순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음

331) Bloombertax, "Japan Delays Carbon Tax Reform to Curb Living Cost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71PHNC000000?>, 검색일자: 2022. 11. 22.

332)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64원임

## 2 중국

### 가. 새로운 인지세법 시행 규칙 발표

[조세동향 22-07호]

- ▾ 중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2년 7월 1일, 새로운 인지세법 시행 규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시 [2022] No. 22를 발표함<sup>333)</sup>

  - ▶ 새로운 인지세법 시행 규칙은 1988년 제정된 임시 규칙(Provisional Regulations)을 대신하는 것으로<sup>334)</sup>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나<sup>335)</sup>, 납세의무자, 인지세 과세범위, 세무행정 등에 일부분이 추가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 신탁대출 약정(entrusted loan agreement)에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자금을 빌려주는 시중은행 등이 아니라, 고객 등 자금을 빌리는 위탁자와 수탁자임<sup>336)</sup>

  - ▶ 이러한 신탁대출 약정이 경매로 발생한 경우에도 경매인(auctioneer)은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지 않음
- ▾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 또는 증서가 역외에서 체결되거나 작성되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함<sup>337)</sup>

  - ▶ 소재지가 중국인 부동산 관련 계약 또는 증서
  - ▶ 중국 거주 기업이 소유한 지분 관련 계약 또는 증서
  -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관련 계약 또는 증서
    - 단,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중국 거주자이며, 외국 법

333) IBFD, "China Issues Rules Implementing New Stamp Duty Law," 2022.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5\\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5_cn_1.html), 검색일자: 2022. 7. 25.

334) S. (Shiqi) Ma, China (People's Rep.) - Corporate Taxation sec. 14.3. Stamp duty, Country Tax Guides IBFD, 검색일자: 2022. 7. 25.

335) EY, "China's new Stamp Duty Law is now in effect," 2022. 7. 18., [https://www.ey.com/en\\_gl/tax-alerts/china-s-new-stamp-duty-law-is-now-in-effect](https://www.ey.com/en_gl/tax-alerts/china-s-new-stamp-duty-law-is-now-in-effect), 검색일자: 2022. 7. 25.

336) IBFD, "China Issues Rules Implementing New Stamp Duty Law," 2022.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5\\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05_cn_1.html), 검색일자: 2022. 7. 25.

337) 상동

인 또는 개인이 중국 거주자에게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판매했지만, 거주자가 역외에서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함

- ▶ 중국 거주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계약 또는 증서
  - 단,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함

▣ 실현되지 않은 계약 또는 증서에 대해 납부한 인지세와 납세의무자의 과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인지세에 대해서 환급 불가함<sup>338)</sup>

- ▶ 또한,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 또는 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계약 또는 증서에 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또는 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나.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차량구치세 면제 연장

[조세동향 22-08호]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7월 29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신에너지 차량(New Energy Vehicles)에 대한 차량구치세(车辆购置税)<sup>339)</sup>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승인함<sup>340)</sup>

- ▶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4년 7월 9일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차량구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고<sup>341)</sup> 2022년 7월 29일 해당 면제정책을 세 번째로 연장함
  - 2017년에 3년간,<sup>342)</sup> 2020년에 2년간,<sup>343)</sup> 그리고 2022년에 1년간 면제기간을 연장함

338) 상동

339) 차량구치세란 중국 국내에서 규정된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목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2009, p. 278)

340) Tax Notes International, "China Extends Tax Exemption For Purchases of New Energy Vehicles," 2022. 8. 8.

341) IBFD, "Exemption of electric cars from car purchase tax," 2014. 7.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4-07-11\\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4-07-11_cn_1.html), 검색일자: 2022. 8. 22.

342) IBFD, "Exemption from vehicle purchase tax for new energy vehicles continued," 2017. 12.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29\\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29_cn_1.html), 검색일자: 2022. 8. 23.

343) IBFD, "China Extends Vehicle Purchase Tax Exemption for New Energy Cars," 2020. 4.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4-23\\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4-23_cn_1.html), 검색일자: 2022. 8. 23.

- 차량구치세는 10%의 비례세율을 적용함<sup>344)</sup>
- ▶ 신에너지 차량이란, 순수전기차량(BEV)뿐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V) 및 수소연료전지차량을 포함함
- ▾ 신에너지 차량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음
- ▶ 중국은 신에너지 차량 판매 증대를 위해 차량구치세 면제와 더불어 구매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sup>345)</sup>
- 2020년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위축된 신에너지 차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장함

#### 다.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유예 정책 연장

[조세동향 22-09호]

-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9월 14일, 2022년 8월 31일 만료된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유예 정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sup>346)347)</sup>
- ▶ 대상이 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국내증치세 및 국내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등을 포함함
- 중기업(medium-sized enterprises)은 대상 세금의 50%를, 소기업(small and low-profit enterprises)은 대상 세금의 100%를 납부유예할 수 있음
- ▶ 해당 정책은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시행한 납부유예 정책을 재연장하는 것임<sup>348)</sup>
- ▶ 해당 정책의 연장으로 유예될 세액 규모는 약 4,400억위안<sup>349)</sup>임

3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2009, p. 280.

345)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신에너지차(NEV) 시장 현황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의한 영향」, 2022. 3. 14., p. 3.

346) IBFD, China Extends Tax and Fee Deferral for Manufacturing Enterpris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15\\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15_cn_1.html), 검색일자: 2022. 9. 19.

347)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국무원 상무회의, 제조업 납세 유예 기간 연장 결정 등」, 2022. 9. 15.,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816](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816), 검색일자: 2022. 9. 30.

34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국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중간예납액 납부유예 발표」,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serialNo=5616>, 검색일자: 2022. 9. 19.

349) 2022년 9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조 6,820억원임

**라.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매수 시 소득세 환급**

[조세동향 22-10호]

- ▾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은 2022년 9월 30일, 주택 교환 구매 관련 개인소득세 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인 [2022] No. 30을 발표함<sup>350)351)</sup>

  -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유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를 환급함
  - 중국은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통상 양도가액의 1%를 부과함<sup>352)</sup>
-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반드시 동일 도시(同一城市) 내에 위치해야 하고 기존주택의 소유주는 신규주택의 소유주이거나 공동소유주 중 한 명이어야 함

  - ▶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당국에 매도·매수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당국은 승인 후 환급함
  - 신규주택 매수가격이 기존주택 매도가격과 같거나 큰 경우 전액 환급함
  - 신규주택 매수가격이 기존주택 매도가격보다 적은 경우 신규주택 매수가격이 기존주택 매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환급함

**마. 개인양로금 소득세 정책 발표**

[조세동향 22-12호]

- ▾ 중국 재정부와 세무국은 2022년 11월 3일, 개인양로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인 재정부 및 세무국의 공고(国办发, 국판발) 2022년 7호를 발표함<sup>353)354)</sup>

350) IBFD, "China Allows Relief for Purchase of New Residential Property,"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03\\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03_cn_1.html), 검색일자: 2022. 10. 12.

351) 중국정부, 「关于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거주자의 주택 교환을 지원하는 개인소득세 정책)」,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10/01/content\\_5715508.htm](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10/01/content_5715508.htm), 검색일자: 2022. 10. 12.

352)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353) 중국 세무국, 「财政部 税务总局关于个人养老金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개인양로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3/c5182621/content.html>, 검색일자: 2022. 12. 7.

-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4월, 기본양로보험<sup>355)</sup>과 기업연금<sup>356)</sup>으로 구성된 중국의 양로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개인양로금보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함<sup>357)</sup>
  - 2022년 11월 25일부터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등 36개 선행도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선행도시(지역)에서 직원기본양로보험이나 주민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sup>358)</sup>
  - 이를 통해 중국은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개인양로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된 양로보험시스템을 갖추게 됨
- ▣ 개인양로금의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며 납입금액과 투자수익 등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함
  - ▶ 개인양로금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1만 2천위안<sup>359)</sup>을 한도로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월별 공제액을 청구하거나 연간 세금정산 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 개인양로금 개인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함
  - ▶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으며 3%의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됨
    - 시범사업에서는 개인연금의 75%는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25%는 면제함

354) IBFD, "China to Implement New Tax Regime for Private Pension Payments," Cut Tax Rat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08\\_cn\\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08_cn_1.html), 검색일자: 2022. 12. 19.

355) 중국의 공공양로금으로 도시직원 기본양로보험과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으로 구성됨

356) 기업과 직원이 공동 납부하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

357) IBFD, "China Rolls Out Private Old Age Pension Insuranc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4-22\\_cn\\_1%23tns\\_2022-04-22\\_cn\\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4-22_cn_1%23tns_2022-04-22_cn_1), 검색일자: 2022. 12. 19.

358)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민은행, 기준을 인하 결정 등」, 2022. 11. 28.,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866&page=1](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866&page=1), 검색일자: 2022. 12. 19.

359) 2022년 12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3만 7,640원임

### 3 인도

#### 가.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특별 추가 소비세 과세

[조세동향 22-07호]

- ▣ 인도 재무부는 2022년 상반기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도 국내 원유 생산자들이 초과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로서 특별 추가 소비세를 과세하고자 함<sup>360)</sup>

  - ▶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 톤당 1만 7천루피<sup>361)</sup>의 특별 추가 소비세를 부과하며, 경유의 경우 리터당 11루피<sup>362)</sup>, 항공유의 경우 리터당 4루피<sup>363)</sup>를 부과함<sup>364)</sup>
  - 특별 추가 소비세는 직전 회계연도 연간 생산량이 200만톤 미만인 소규모 생산자는 부과가 면제되며 추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작년을 초과하여 생산된 신규 물량에 대해 특별 추가 소비세를 면제함
- ▣ 해당 특별 추가 소비세의 부과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 최초 부과 시에는 국내 판매 원유와 수출분 휘발유 및 경유, 항공유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sup>365)</sup>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7월 20일 기존의 국내 판매 원유 및 경유 및 항공유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율을 인하하고 수출용 휘발유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를 폐지함

360) 인도 재무부,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38455>, 검색일자: 2022. 7. 25.

361) 2022년 0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만 7,726원임

362) 2022년 0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0원임

363) 2022년 0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원임

364) CNBC, "India cuts windfall tax on diesel, aviation fuel exports," <https://www.cnbc.com/2022/07/20/india-cuts-windfall-tax-on-diesel-aviation-fuel-exports.html#:~:text=Windfall%20tax%20on%20diesel%20and,took%20effect%20on%20July%202020>, 검색일자: 2022. 7. 25.

365) 인도 재무부,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38455>, 검색일자: 2022. 7. 25.

**나. 디젤, 제트 연료 수출에 대한 횡재세 인상**

[조세동향 22-09호]

- ▾ 인도 재무부는 9월 1일부터 디젤 수출에 대한 횡재세를 두 배로 인상함과 항공연료에 대한 부과금을 4배 이상 인상함을 공식 통보함<sup>366)</sup>

  - ▶ 기존 리터당 7루피<sup>367)</sup>이던 경유 수출에 대한 횡재세를 리터당 13.5루피<sup>368)</sup>로 인상함
  - ▶ 항공연료 운송에 대한 부과금을 기존 리터당 2루피<sup>369)</sup>에서 리터당 9루피<sup>370)</sup>로 인상함
  - ▶ 또한 국내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한 세금을 톤당 300루피<sup>371)</sup>에서 1만 3,300루피<sup>372)</sup>로 인상함
- ▾ 인도는 2022년 6월 부과금을 도입한 이후 국제 유가에 따라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며 약 2주마다 횡재세를 조정하고 있음

**다. 석유 관련 횡재세 및 디젤 등 연료 부담금 조정**

[조세동향 22-11호]

- ▾ 인도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한 횡재세를 인하했지만 디젤 및 항공 연료 수출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인상함<sup>373)</sup>

  - ▶ 국내 산지에서 생산된 석유에 대한 세금은 11월 2일부터 톤당 9,500루피<sup>374)</sup>로 약

366) Bloomberg tax, "India Steeply Increases Windfall Tax on Diesel, Jet Fuel Export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7L9PNH4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ite](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7L9PNH4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ite), 검색일자: 2022. 10. 04.

367)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3.06원임

368)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7.33원임

369)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16원임

370)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8.22원임

371)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274원임

372) 2022년 10월 0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3,814원임

373) Bloombertax, "India Cuts Windfall Tax on Local Oil, Raises on Diesel, Jet Fuel,"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1VJ4L6K000000?>, 검색일자: 2022. 11. 22.

374)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4,280원임

14% 인하됨

- ▶ 항공연료 수출은 현재 3.5루피에서 리터당 5루피<sup>375)</sup>의 세금을 부과함
- ▶ 디젤 수출에 대한 관세는 현재 12루피에서 1.5루피의 도로인프라 비용을 포함하여 리터당 13루피<sup>376)</sup>로 인상됨

▾ 인도는 7월에 횡재세를 도입한 이후 약 2주마다 횡재세를 개정해 오고 있음

## 4 인도네시아

### 가. 탄소세 시행 연기

[조세동향 22-07호]

- ▾ 인도네시아 재정부는 당초 7월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탄소세 시행 계획을 연기함<sup>377)</sup>
  - ▶ 인도네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이유로 세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국가 경제를 글로벌 리스크 확산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함
  - ▶ 인도네시아의 탄소세는 2021년 10월 통과된 기존 법률에 따르면 2022년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입법 미비 등으로 7월로 연기되었고, 뒤이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재차 시행을 연기하는 것임
    - 7월 이후로 연기된 탄소세의 시행은 2022년 내 시행임은 변함이 없으나 구체적인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음
- ▾ 2022년 시행될 예정인 인도네시아의 탄소세는 화력발전소를 대상의 배출 제한을 기반으로 한 과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375)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2원임

376)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1.12원임

377) Bloomberg Tax, "Indonesia Delays Carbon Tax Implementation: Ministry,"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DBVJJ4000000?>, 검색일자: 2022. 7. 26.

**나. 코로나19 관련 세금 인센티브 기한 연장**

[조세동향 22-08호]

- ▾ 인도네시아 재무부(MoF)는 기존에 연장하였던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의료 관련 세금 인센티브의 적용을 재연장함<sup>378)</sup>

  - ▶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기존 2022년 6월 30일까지였던 세금 인센티브의 기한을 연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 해당 정책에 의해 연장된 세금 인센티브는 적격 납세자에 대한 수입세 징수 면제, 적격 납세자의 월별 법인세 분할 납부액의 50% 감액, 관개(灌溉)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 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의 정부 부담 등을 포함함

**5 홍콩**

**가. 국외원천소득면제제도(FSIE) 발표**

[조세동향 22-11호]

- ▾ 홍콩 정부는 2022년 10월 28일, 국외원천소득의 비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인 국외원천 소득면제제도(FSIE,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를 발표함<sup>379)380)</sup>

  - ▶ 홍콩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해 왔으나 특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동소

378) IBFD, "COVID-19 Pandemic: Indonesia Extends Tax Incentives Related to Healthcare, Taxpayers Impacted by COVID-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08\\_id\\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08_id_1.html), 검색일자: 2022. 8. 22.

379) Tax Notes International, "Hong Kong Proposes New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Regime," 2022. 10. 31.

380) 홍콩 세무국(稅務局, Inland Revenue Department),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https://www.ird.gov.hk/eng/tax/bus\\_fsie.html](https://www.ird.gov.hk/eng/tax/bus_fsie.html), 검색일자: 2022. 11. 16.

득(passive income)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함

- EU는 2021년 10월 5일,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외원천소득면제를 지적하며 조세 비협조 관련 명단인 ‘제도개선국가’에 홍콩을 포함시켰고 홍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세법개정을 예고하였음<sup>381)382)</sup>

- ▶ 다국적기업그룹(MNE, Multinational Enterprise)에 속한 홍콩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이 적용대상이며 과세대상 수동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및 지분 처분소득, 지적재산권(IP) 관련 소득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동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됨

-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은 대상 기업이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을 갖추어야 함

- 경제적 실질이란 기업이 직접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수동소득 원천 자산의 주요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적절한 인원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 주식 및 지분 처분소득의 비과세 요건은 대상 기업이 경제적 실질을 갖추어야 하고 경제적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함

- 투자기업은 홍콩 거주자이거나 홍콩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일 것
-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것
- 피투자기업의 수동소득이 전체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지적재산권(IP) 관련 소득은 적격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해 전체 R&D 비용 중 적격 R&D 비용 비율만큼 비과세됨

- 적격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및 특허권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을 뜻함
- 적격 R&D 비용이란 특정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R&D 비용으로 기업이 홍콩 내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의미함

381) IBFD, “Hong Kong Government Responds to Inclusion in EU’s Watchlist on Tax Co-Oper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rs\\_2021-10-06\\_hk\\_1%23trs\\_2021-10-06\\_hk\\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rs_2021-10-06_hk_1%23trs_2021-10-06_hk_1), 검색일자: 2022. 11. 16.

382)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금융재정정책 EU집행위, 조세 비협조 관련 명단 발표」, [https://nma.mofa.go.kr/be-ko/brd/m\\_7562/view.do?seq=1345241&page=1](https://nma.mofa.go.kr/be-ko/brd/m_7562/view.do?seq=1345241&page=1), 검색일자: 2022. 11. 23.

6 호주

가. 2022/2023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11호]

- ▾ 호주 재무부는 2022년 10월 25일, 2022/2023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함<sup>383)</sup><sup>384)</sup><sup>385)</sup>

  - ▶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금번 예산안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고 밝힘
- ▾ 금번 예산안의 주요 조세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음<sup>386)</sup>

  - ▶ 우선 법인세 측면에서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와 관련하여, 부채비율(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에 기반한 현행 과소자본 한도 기준을 신규 소득기반 한도로 변경할 예정임<sup>387)</sup>
    - 이에 따라 차입금 이자 공제는 EBITDA의 30%까지로 제한될 예정임
    - 공제가 부인된 차입금 이자의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이 가능함
    - 상기 변경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 일정 금액 미만의 전기차에 대한 Fringe Benefits Tax(FBT)를 면제함
    - 2022년 7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차량이고, 첫 번째 소매 판매가가 일정 금액 미만인 배터리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hydrogen fuel cell)와 Plug-in Hybrid 전기차에 대한 FBT와 수입관세를 면제함

383) IBFD, “Australia - Federal Budget 2022-2023: Australia Announces Changes to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Measures to Limit Tax Deduction and Increase Transparency of Multinationals,” 2022.10.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26\\_au\\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26_au_1.html), 검색일자: 2022. 11. 16.

384) Tax Notes, “Australian Budget Focuses on Corporate Taxes, Compliance Efforts,” Volume 108, p.583

385) 호주 정부, “Budget October 2022-23,” 2022.10.25., <https://budget.gov.au/index.htm>, 검색일자: 2022. 11. 16.

386) 호주 재무부, “Budget October 2022-23,” 2022.10.25. p. 14., [https://budget.gov.au/2022-23-october/content/bp2/download/bp2\\_2022-23.pdf](https://budget.gov.au/2022-23-october/content/bp2/download/bp2_2022-23.pdf), 검색일자: 2022. 11. 16.

387) IBFD, “Australia - Federal Budget 2022-2023: Australia Announces Changes to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Measures to Limit Tax Deduction and Increase Transparency of Multinationals,” 2022. 10.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26\\_au\\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26_au_1.html), 검색일자: 2022. 11. 16.

- ▶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관련하여 연 2억호주달러를 추가로 투입하여 조세회피 특별전담반(Tax Avoidance Taskforce)을 구성해 다국적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 금번 예산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음
- ▶ 국회의 승인 이후 효력이 발생되며 승인될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임

## 7 뉴질랜드

### 가. 유류세 인하 내년 초까지 재연장

[조세동향 22-07호]

- ▾ 2022년 7월 17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8월 16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sup>388)</sup>
- ▶ 지난 2022년 3월 14일, 뉴질랜드 정부는 유류세를 리터당 25센트<sup>389)</sup>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2022년 6월 15일까지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 ▶ 이후 2022년 5월,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유류세 인하는 2022년 8월 16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 ▾ 이와 같은 뉴질랜드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류값 급등을 완화하기 위함임
- ▶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율은 32년만의 최고치인 7.3%를 기록하였으며, 가솔린 가격은 32%, 디젤 가격은 74% 상승하였음<sup>390)</sup>

388) IBFD, "Government Extends Transport Tax Relief Measures," 2022. 7.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1\\_nz\\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1_nz_1.html), 검색일자: 2022. 7. 21.

389)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7원임

- ▶ 뉴질랜드 정부는 금번 조치로 휘발유 40리터 주유시 약 11뉴질랜드달러<sup>391)</sup>, 60리터 주유시 약 17뉴질랜드달러<sup>392)</sup>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2분기 물가상승률이 0.5%p 하락할 것이라고 추산함<sup>393)</sup>
- ▾ 금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5억 8,900만뉴질랜드달러<sup>394)</sup>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 부동산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제공

[조세동향 22-08호]

- ▾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8월 12일, 장기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정 임대용개발사업(build-to-rent developments)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을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함<sup>395)</sup> 396)
- ▶ 이자제한법(interest limitation rules)은 납세자가 투자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납세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해당 대출이자의 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임
- ▾ ‘임대용개발(build-to-rent)’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임대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제공해야 함
    -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거주비용 급등에 직면한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이동 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390) 2022년 6월 30일 종료되는 연도 기준임

391)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114원임

392) 2022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085원임

393) CNBC, “New Zealand extends fuel excise duty cut until end-Jan to give inflation relief,” 2022. 6. 17., <https://www.cnb.com/2022/07/17/new-zealand-extends-fuel-excise-duty-cut-until-end-jan-to-give-inflation-relief.html>, 검색일자: 2022. 8. 2.

394) 2022년 7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809억원임

395) 뉴질랜드 정부, “Tax incentives to boost long-term rental supply,” 2022. 8. 12., <https://www.beehive.govt.nz/release/tax-incentives-boost-long-term-rental-supply>, 검색일자: 2022. 8. 19.

396) IBFD, “Government to Extend Interest Deduction for Build-to-Rent Developments,” 2022. 8.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17\\_nz\\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17_nz_1.html), 검색일자: 2022. 8. 19.

- 다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기간은 10년 미만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56일 이전에 임대인에 통보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한 채 이상의 건물에 최소 20가구 이상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함

▾ 또한, 활발한 신축(new builds) 주택 공급을 위하여 신축 주택의 신규 투자자인 경우 20년간 이자제한법 적용을 면제함

▶ 기존 구축된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 및 임대해 대해서도 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소급 적용되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금번 조치는 8월말 발표 예정인 옴니버스 조세법안(omnibus tax bill)에 포함될 예정임

#### 다. 세계 최초로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에 과세하는 제안 발표

[조세동향 22-10호]

▾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10월 11일, 2025년까지 농가에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제안을 발표함<sup>397)398)399)</sup>

▶ 이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림과 오줌을 포함하여 농장 동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발표한 것임

▶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이처럼 농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과세하는 것인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함

397) 뉴질랜드 정부, *Pragmatic proposal to reduce agricultural emissions and enhance exports and economy*, 2022. 10. 11., <https://www.beehive.govt.nz/release/pragmatic-proposal-reduce-agricultural-emissions-and-enhance-exports-and-economy>, 검색일자: 2022. 10. 14.

398) 뉴질랜드 정부, *Pricing agricultural emissions - Consultation document*, 2022. 10., <https://environment.govt.nz/assets/publications/Pricing-agricultural-emissions-consultation-document.pdf>, 검색일자: 2022. 10. 14.

399) IBFD, "New Zealand Proposes World-First Agriculture Emissions Pricing Levy," 2022. 10.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3\\_nz\\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3_nz_1.html), 검색일자: 2022. 10. 14.

- ▾ 뉴질랜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sup>400)</sup>

  - ▶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낙농 수출국으로, 농축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 수준이나 됨<sup>401)</sup>
  - ▶ 뉴질랜드는 농장 동물의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10%, 2050년까지 최대 47% 줄일 방침임
  
- ▾ 동 조치는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되면 농부들은 메탄,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함

  - ▶ 아던 총리는 금번 조치를 통해 남태평양 국가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7년 수준보다 10% 낮추는 입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
  - ▶ 또한 부과금의 수익은 메탄 억제제와 같은 승인된 완화 기술의 활용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임
  
- ▾ 현재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의견수렴은 2022년 11월 18일에 종료될 예정임

400) Bloomberg Tax, "NZ to Tax Agriculture Emissions at the Farm in World First," 2022.10.1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ITO20K000000?bc=W1siU2VhcmNoI 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ZmVz dWx0cy80ZmMyMDM0YzlhMGE3YmEwOGUyMGYyMjhiODc3ZDIxNyJdXQ-7e4bf066c6ce3efdad29c10a26 a69d68f9a4ae1c&criteria\\_id=4fc2034c9a0a7ba08e20f228b877d217&search32=EUPtECoua7aQgla8c8356g%3 D%3DChfOq\\_VucvkH7gUQn5jYua8-01Mbvug2Bcws5wB5\\_mUPmskzw5W0xvAP0ekFUr5SOYlpN82KU5axsY Md5OKKY-qxUVhyoLs31H24zSFM49s7j-\\_FzNCuqIq5JEI0ANrG6oAbu6LvF5SgAqysUJzXadOBv1Cm0jih33wJ6 MrAwYuOTygPOPBUDV2fKBVdtyDXP2l2\\_ICeQWYzZoW7K0h85-nSSKltRmH8bU8E35ykR2-4eLo\\_z269d06KS 70\\_BgdRVnaYoW3KVN0OUoBvQWo3fMjyvXHH1f-pjshdL1liILabVelGsbHIWnlnUtt2UA\\_qEauGZm4ACNQp4 sgSbcYOAog%3D%3D](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ITO20K000000?bc=W1siU2VhcmNoI 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ZmVz dWx0cy80ZmMyMDM0YzlhMGE3YmEwOGUyMGYyMjhiODc3ZDIxNyJdXQ-7e4bf066c6ce3efdad29c10a26 a69d68f9a4ae1c&criteria_id=4fc2034c9a0a7ba08e20f228b877d217&search32=EUPtECoua7aQgla8c8356g%3 D%3DChfOq_VucvkH7gUQn5jYua8-01Mbvug2Bcws5wB5_mUPmskzw5W0xvAP0ekFUr5SOYlpN82KU5axsY Md5OKKY-qxUVhyoLs31H24zSFM49s7j-_FzNCuqIq5JEI0ANrG6oAbu6LvF5SgAqysUJzXadOBv1Cm0jih33wJ6 MrAwYuOTygPOPBUDV2fKBVdtyDXP2l2_ICeQWYzZoW7K0h85-nSSKltRmH8bU8E35ykR2-4eLo_z269d06KS 70_BgdRVnaYoW3KVN0OUoBvQWo3fMjyvXHH1f-pjshdL1liILabVelGsbHIWnlnUtt2UA_qEauGZm4ACNQp4 sgSbcYOAog%3D%3D), 검색일자: 2022. 10. 14.

401) 뉴질랜드의 인구가 500만명인 반면 소는 1천만마리, 양은 2,600만마리에 달함

## IV 국제기구

### 1 OECD

#### 가. BEPS 프로젝트 필라1 Amount A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조세동향 22-07호]

-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2년 7월 11일, 필라1 Amount A에 관한 모델규정 초안이 포함된 진행상황 보고서를 공개함<sup>402)</sup>

  -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2018년 12월 필라1·2 개념을 확정하여 2020년 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를 발표하였고, 2021년 10월 필라1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 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sup>403)</sup>
  - ▶ 필라1 Amount A에 관한 모델규정 초안에는 범위, 과세연계점, 매출귀속기준, 과세권 배분, 이중과세 제거의 내용이 담김
- ▣ 필라1 Amount A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것으로, 주요 규정들은 디지털경제 태스크포스(TFD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에 의하여 개발되었음

  - ▶ 연결매출액 및 이익률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고, 과세연계점 및 매출귀속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이 배분됨
    -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sup>404)</sup>이상이고 세전이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임(scope rules)

402) OECD,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OECD invites public input on the Progress Report on Amount A of Pillar One," <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the-progress-report-on-amount-a-of-pillar-one.htm>, 검색일자: 2022. 7. 13.

4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1-10호」, 2021, p. 27.

404) 2022년 7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조 5,712억원임

- 과세연계점을 충족하는 경우(nexus rule) 즉, 매출귀속기준(revenue sourcing rules)에 따라 100만유로<sup>405)</sup>상의 매출이 귀속되는 국가에 필라1 과세권이 배분되며, 원칙적으로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귀속됨
- 연결재무제표 등 Amount A 산정 목적으로 사용될 이익 계산 방법을 제공함(tax base rules)
- ▶ 과세권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내국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 국가들은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함
  - 통상이익(매출의 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 매출액에 비례하여 시장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고 이미 과세하고 있는 국가는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하는 방식으로 조정됨(profit allocation rules)
  -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에 이중과세제거 부담의무를 할당하고, 할당받은 국가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하여야 함(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rules)
- ▣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 ▶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서면 공청회를 통해 필라1 Amount A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2022년 10월 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것임
  - ▶ 2023년 상반기에 다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3년으로 예정되었던 시행시기를 2024년으로 연기함

## 나. BEPS Action 5 유해조세환경 검토 경과 공개

[조세동향 22-08호]

-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2년 7월 27일, BEPS 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Harmful Tax Practices) 상호검토 경과를 공개함<sup>406)</sup>

405) 2022년 7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2,940만원임

406) OECD, "New results show progress continues in combatting harmful tax practices," <https://www.oecd.org/tax/beps/new-results-show-progress-continues-in-combatting-harmful-tax-practices.htm>, 검색일자: 2022. 8. 18.; OECD, "Harmful Tax Practices - Peer Review Results," <https://www.oecd.org/tax/beps/harmful-tax-practices-peer-review-results-on-preferential-regimes.pdf>, 검색일자: 2022. 8. 18.

- ▶ 유해조세환경 포럼은 BEPS Action 5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이행과 관련하여 특정 조세제도가 유해조세환경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도인지 여부를 검토함
  - 2022년 4월, 12개의 조세제도가 최소기준 이행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도출하였고, 결론에 따라 각국은 제도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함
- ▶ Action 5의 실질적 활동(substantial activities) 요건 기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연례 평가(상호검토)를 2021년부터 시행하였고,<sup>407)</sup> 그 중간 결과를 공개한 것임
  - 총 319개의 조세제도를 검토하였고, 112개 제도는 폐지되었고 65개 제도는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음
  - 최소기준의 경우 각국의 시의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Action 5의 상호검토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다.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2-10호]

- ▣ OECD는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함<sup>408)</sup>
  - ▶ 보고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를 구성됨
  - ▶ 조세와 관련된 주된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 사회보험과 조세의 관계, 고용 관련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내용이 있음
    - 재정 안정성 위험 관리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외에도 조세 부담이 지속가능해야 하며 관련 조세정책의 급격한 변동은 지양하도록 권고함
    - 재정정책 지원은 보다 구체적 대상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유류세 인하와 같은 일시적 정책대안으로 정책적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함
    - 출산·육아휴직의 재원을 사회보험 또는 일반 조세로 완전히 대체하는 정책 및 사회보험과 조세의 통합 징수의 도입 등을 제안함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이 고용 및 근로시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근로유인

4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1-10호」, 2021, pp. 39-41.

408)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urveys-korea-2022\\_20bf3d6e-en](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urveys-korea-2022_20bf3d6e-en), 검색일자: 2022. 10. 20.

향상, 불평등 및 빈곤 감소 목적 및 재정적 비용까지 고려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함

**라. 글로벌 최저한세와 조세특례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2-10호]

- ▾ OECD는 2022년 10월 6일, ‘글로벌 최저한세와 조세특례 보고서’를 발표함<sup>409)</sup>

  - ▶ 보고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 필라2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다국적기업에 조세특례제도가 적용되어 관할국 내 실효세율(ETR)이 15% 이하가 되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GloBE 규칙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할 위험이 있음<sup>410)</sup>
  - ▶ 보고서는 조세특례제도의 사용 및 체계, GloBE 규칙의 주요 내용, GloBE 규칙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적용 및 그 설계, 정책 제안으로 구성됨
    - 적격내국최저한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의 도입은 관할국이 저과세 소득에 대하여 즉시 과세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그 소득은 GloBE 규칙에 따라 다른 관할국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영향력은 제한되어야 함
    -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신규 조세특례제도의 도입 및 신규 투자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하며, GloBE 규칙은 특례제도 및 납세자별로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

**마. BEPS Action 13 상호검토 발표 및 CbCR 지침 개정**

[조세동향 22-12호]

- ▾ OECD는 2022년 10월 4일, BEPS Action 13의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sup>411)</sup>

409) OECD, “Tax Incentives and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https://www.oecd.org/tax/tax-incentives-and-the-global-minimum-corporate-tax-25d30b96-en.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repor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06-10-2022&utm\\_term=ctp](https://www.oecd.org/tax/tax-incentives-and-the-global-minimum-corporate-tax-25d30b96-en.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repor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06-10-2022&utm_term=ctp), 검색일자: 2022. 10. 14.

410) OECD/G20가 2021년 10월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두 필라 체계에 합의함에 따라, 필라2는 다국적대기업에 대하여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함

411) 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 - Compilation of 2022 Peer Review Reports,” <https://www.oecd-il>

- ▶ BEPS 프로젝트 Action 13의 CbCR(Country-by-Country Reporting) 관련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충족을 위한 5번째 연례 상호검토를 발표함
  - 상호검토는 134개 관할국의 CbCR 이행과 과세당국 간 조세 및 금융 데이터 교환 확대 여부를 평가함
  - Action 13은 조세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국적기업 그룹에게 소득의 글로벌 배분, 조세 및 경제 활동의 여타 지표 제공 의무를 부과함
- ▶ 상호검토 보고서는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각 관할국의 일반적 이행 여부를 판단함
  - 28개 관할국은 내국법상 또는 행정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실시하거나 확정 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27개 관할국은 프레임워크의 특정 영역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음
  - 82개 관할국은 다자간 또는 양자 간 권한있는 당국 간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3천 개 이상의 정보 교환 관계에 영향을 미침
  - 대한민국에 대하여 특별한 권고사항은 없음

▾ OECD는 2022년 10월 13일, CbCR 지침을 개정함<sup>412)</sup>

- ▶ 기존 CbCR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양식에 보고되어야 하는 항목의 정의, 보고되어야 하는 기업, 보고 의무, 정보 공유 메커니즘, 합병·취득·분할을 다루고 있음
- ▶ 개정 지침은 국가별 보고서의 양식에 기입되는 항목의 정의, 보고되어야 하는 기업,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용을 추가함
  - 보고 항목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정 금액이 CbCR양식의 '표 1'에 증가분 또는 감소분으로 기입되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각 상황을 나타내는 도표를 제시함
  - 보고되어야 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은 소재 관할국의 '표 2'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사례를 추가함
  -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다국적기업의 회계기간이 구성기업의 회계기간과 다른 경우 양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례를 제시함

library.org/taxation/country-by-country-reporting-compilation-of-2022-peer-review-reports\_5ea2ba65-en;jsessionid=33jymmedGShEAX5YiU7YjFb5EpBsPnIP--hwZVA.ip-10-240-5-20, 검색일자: 2022. 12. 14.; EY, "OECD releases outcomes of fifth peer review on BEPS Action 13 and updates CbCR guidance," 2022. 11. 4.,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releases-outcomes-of-fifth-peer-review-on-beps-action-13-an](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releases-outcomes-of-fifth-peer-review-on-beps-action-13-an), 검색일자: 2022. 12. 8.

412) OECD,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https://www.oecd.org/ctp/guidance-on-the-implementation-of-country-by-country-reporting-beps-action-13.pdf>, 검색일자: 2022. 12. 14.

2 EU

가. 디지털시대에서의 부가가치세 연구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2-08호]

- ▾ 2022년 7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부가가치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sup>413)</sup>

  - ▶ 보고서는 ① 디지털 보고제도(DRR), ② 플랫폼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③ EU 시장 내에서 단일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및 Import One-Stop Shop (IOSS)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EU집행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 (① 디지털 보고제도) 2021년 9월 기준 EU 회원국 중 12개 회원국이 디지털 보고제도를 운영 중이며,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 디지털 보고제도(Digital Reporting Requirement)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의 전자송장 발행의무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자료의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과세당국에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말함
    - 정기적 보고: VAT listing, SAF-T 보고 제도
    - 지속적 보고: 의무 전자송장제도 및 Real-time 보고 제도
  - ▶ 2021년 9월 기준 12개의 회원국이 디지털 보고제도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와 그리스는 시행예정임

〈표 2-IV-1〉 2021년 9월 기준 EU 회원국 디지털 보고제도 운영현황

제도	국가
Clearance E-invoicing	이탈리아
Real-time reporting	스페인, 헝가리
SAF-T reporting	포르투갈, 폴란드, 리투아니아
VAT listing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시행 예정	프랑스, 그리스

자료: European Commission, VAT in the digital age: executive summary, 2022, p. 8 참고하여 저자작성

413)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Luchetta, G., Giannotti, E., Dale, S., et al., VAT in the digital age: executive summary,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2.

- ▶ EU 회원국의 디지털보고제도 시행 효과는 약 80억유로로 추산됨<sup>414)</sup>
  - 납세자 부담은 50억유로 감소, 추가 부가가치세 수입은 120억유로 증가, 부가가치세 간소화로 납세자 편익은 1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 동 보고서에서는 EU DRR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 (② 플랫폼 부가가치세 처리) EU 회원국 간 플랫폼 경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명확하고 획일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플랫폼 사업자 및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정의 등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
  - ▶ 플랫폼 경제 분야는 전자상거래, 운송, 숙박, 부동산, 금융, 가사서비스, 광고 부문을 기반으로, 2019년 EU 27개국의 플랫폼 경제와 관련하여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수익은 약 257억유로임<sup>415)</sup>
  - ▶ 플랫폼 제공자, 플랫폼 시설 및 공급장소, 보고 및 기록 유지의무 등 회원국 간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법상 처리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획일화되지 않음
  - ▶ 보고서에서는 EU 차원에서 개입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시하였고, 플랫폼 제공자의 과세 대상 상태 등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정책방향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음<sup>416)</sup>
- ▣ (③ EU 시장 내 단일 부가가치세 등록 및 IOSS제도) EU 내 미설립법인이 EU 회원국 내에서의 부가가치세 등록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며, 관련하여 OSS제도와 IOSS제도의 개선안이 제시됨<sup>417)</sup>
  - ▶ EU 내 미설립법인이 EU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수입 상품의 장거리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점이 존재함
  - ▶ OSS제도에서는 B2B 거래를 포함하는 방안이, IOSS제도에서는 현재 150유로의 임계값을 제거하는 방안과 IOSS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효익이 있을 것으로 제시됨

414) 2022년 8월말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조 7,746억원임

415) 2022년 8월말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조 8,603억원임

416) TAX NOTES, *New VAT Treatment of Digital Platforms Could Raise Billions*, Volume 107, Number 5, August 1, 2022.

417) NEWS IBFD,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Reports on VAT As Part of Digital Age Initiativ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7\\_e2\\_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27_e2_3.html), 검색일자: 2022. 8. 31.

**나. EU - 에너지 사업 관련 초과이익 분담금 제안**

[조세동향 22-09호]

- ▾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EU 내 석유, 가스, 석탄 및 정유 부문의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에 발생한 잉여의 이익에 대해, 초과이익세의 성격을 지니는 한시적인 연대 분담금을 제안함<sup>418)</sup>

  - ▶ 분담금은 직전 3년간의 평균 이익보다 2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최소 33%의 효율이 적용됨
  - ▶ 본 조치는 발효 후 1년간 적용되며, 2023년까지 10월 15일까지 EU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함
  -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약 250억유로<sup>419)</sup>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수익금은 EU 내 국가들의 에너지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에너지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예정임
  
- ▾ 초과이익에 대한 연대 분담금 조치는 EU 이사회 규제 제안서 COM(2022) 473에 근거한 EU 집행위원회의 긴급 시장 개입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EU 이사회 투표 후 승인이 결정됨

**다. EU 의회 디지털 부과금 도입 제안**

[조세동향 22-09호]

- ▾ 2022년 8월 26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는 필라1 시행에 대한 진전이 없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이 2025년 말까지 대다수의 국가에서 비준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EU 내 디지털부과금 도입을 제안함 <sup>420)421)</sup>

418) IBFD,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Solidarity Contribution on Surplus Profits of Fossil Fuel Sector,"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15\\_e2\\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9-15_e2_1.html), 검색일자: 2022. 9. 20.

419) 2022년 9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조 4,130억원임

420) 유럽의회,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ECON-PA-734455\\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ECON-PA-734455_EN.pdf), 검색일자: 2022. 9. 20.; IBFD,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Proposes to Adopt Digital Levy if Pillar One Fails,"

- ▶ 국제적 차원에서 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필라1 합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확실히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EU 위원회와 EU 회원국은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 디지털 부과금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 덧붙임

## 라.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지침 합의

[조세동향 22-12호]

- ▣ 2022년 12월 12일, 27개 EU 회원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지침(Minimum Taxation Directive)에 최종 합의하였음<sup>422)423)424)</sup>
  - ▶ 지난 2022년 6월, 헝가리의 반대로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에 대한 EU의 최종합의가 무산된 바 있으나,<sup>425)</sup> 금번 결정을 통해 만장일치 합의에 성공하였음
  - ▶ 동 합의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지침은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임
  - ▶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 지침을 이행해야 함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30\\_e2\\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8-30_e2_1.html), 검색일자: 2022. 9. 20.

421) Tax Notes International, *EU Lawmakers Push for Digital Levy Proposal for End of 2025*, Volume 107, 2022, p. 1157.

422) IBFD, "European Union - Council Reaches Agreement on Minimum Taxation Directive," 2022. 12. 13., 검색일자: 2022. 12. 15.

423) European Commission, "Fair Taxation: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minimum taxation of multinationals," 2022. 12. 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67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674), 검색일자: 2022. 12. 15.

424) European Council, "International taxation: Council reaches agreement on a minimum level of taxation for largest corporations," 2022. 12. 1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2/12/international-taxation-council-reaches-agreement-on-a-minimum-level-of-taxation-for-largest-corporations/>, 검색일자: 2022. 12. 15.

4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2-06호」, 2022, p. 22.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년 제2호

---

2022년 12월 27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주)범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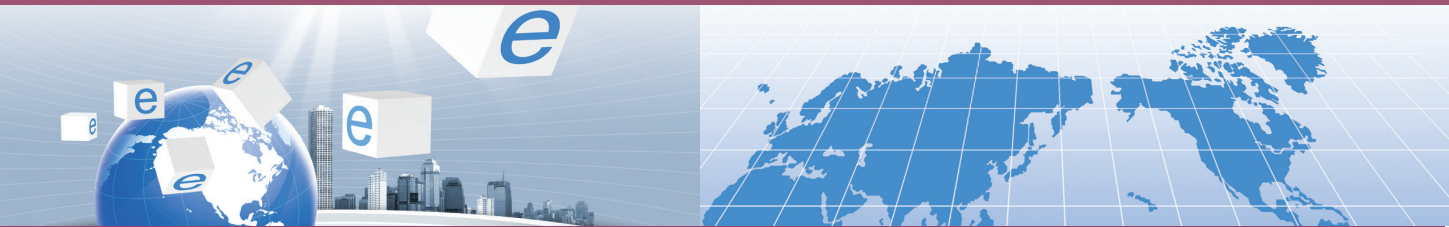
ISBN 979-11-6655-203-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http://www.kipf.re.kr)

